

선박구명설비기준

[시행 2020. 5. 14.]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60호, 2020. 5. 1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2. "제2종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3. "제3종선"이란 여객선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4. "제4종선"이란 여객선이외의 선박으로서 제3종선이외의 선박을 말한다.
5. <삭제 2010. 5. 3.>
6. "단국제항해"란 선박이 여객·선원 및 임시승선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 또는 항으로부터 200마일 이내에 있고 항해를 개시한 국가의 최후의 기항지로부터 최종의 도착항(계획된 항해에 있어서 편도항해를 끝내고 처음 항해를 개시한 나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항해가 개시된 최후의 기항지를 말한다)까지의 거리가 600마일을 넘지 아니하는 국제항해를 말한다.<개정 2007. 11. 22.>
7. "탱커"란 인화성액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8. "유탱커등"이란 유탱커·액화가스산적운송선 및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을 말한다.
9. 구조정의 "회수시간"이란 페인터를 고박하는 시간, 진수설비에 구조정을 연결하는 시간 및 구조정을 끌어 올리는데 소요 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선박의 갑판 위에 탑승자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위치까지 구조정을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신설 2009. 4. 10>

제3조(구명설비의 종류) 구명설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구명기구
 - 가. 구명정
 - (1) 부분폐형구명정
 - (2) 전폐형구명정(자유강하식구명정을 포함한다)
 - (3) 공기자급식구명정(자유강하식구명정을 포함한다)
 - (4) 내화구명정(자유강하식구명정을 포함한다)
 - 나. 구명뗏목

(1) 팽창식구명뗏목

(가) 제1종팽창식구명뗏목(자동복원팽창식구명뗏목, 양면팽창식구명뗏목 및 진수장치용팽창식구명뗏목을 포함한다)

(나) 제2종팽창식구명뗏목

(2) 고체식구명뗏목(자동복원고체식구명뗏목, 양면고체식구명뗏목 및 진수장치용고체식구명뗏목을 포함한다)

다. 구명부기

라. 구조정

(1) 일반구조정

(가) 팽창식일반구조정

(나) 고체식일반구조정

(다) 복합식일반구조정

(2) 고속구조정

(가) 팽창식고속구조정

(나) 고체식고속구조정

(다) 복합식고속구조정

마. 구명부환

바. 구명조끼<개정 2014. 12. 24.>

사. 방수복

아. 노출보호복

자. 보온구

차. 작업용구명의

카. 구명줄발사기

타. 구명뗏목지원정

2. 신호장치

가. 자기점화등

나. 자기발연신호

다. 구명조끼등<개정 2014. 12. 24.>

라. 로켓낙하산신호

마. 신호홍염

바. 발연부신호

사. 수밀전기등

아. 일광신호용거울

자. 탐조등

차. 역반사재

카. 선상통신장치

다. 경보장치

파. 선내방송장치

3. 진수장치 등

가. 진수장치

(1) 구명정진수장치

(2) 구명뗏목진수장치

(3) 구명부기진수장치

(4) 구조정진수장치

(5)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

나. 탑승장치

(1) 탑승용사다리(Embarkation ladder)<개정 2002. 1. 18>

(2) 강하식탑승장치(Marine evacuation system)<개정 2002. 1. 18>

(3) 그물사다리

제4조(특수한 선박·설비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특수한 선박 및 설비 중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7. 18.> <개정 2011. 6. 14.>

1. 잠수선

2. 공기부양선

3. 신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새로운 형식의 선박

4. 구조상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5. 그 밖에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

② 제3종선으로서 관측선, 해난구조선, 어업지도선, 어업조사선, 연습선, 공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선박(이하 "연습선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해 개발된 특수목적선코드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삭 제 2011. 6. 14.>

제5조(적용제외 등) ①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는 항로의 특성에 따라 제6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2011. 12. 15.>

② 회항, 조난선원의 인수 등 긴급한 상황 시에는 단일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2011. 12. 15.>

③ <삭제 2010. 5. 3.>

④ 이 기준에서 정한 설비의 요건이외의 요건에 대하여는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2. 1. 18><개정 2008. 7. 18.>

제2장 구명설비의 요건

제1절 일 반

제6조(재료) 구명설비는 적절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제7조(공작) 구명설비는 적절한 공작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제8조(보호조치) 전기를 이용하는 구명설비는 회로가 단락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손상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9조(점검 등) 구명설비는 점검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절 구명기구

제1관 구명정

제10조(부분폐형구명정) 부분폐형구명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섭씨 영하 30도 내지 섭씨 65도의 온도에서 견딜 수 있을 것
2. 섭씨 영하 1도 내지 섭씨 30도의 해수온도에서 작동될 수 있을 것
3. 파랑중에서도 확실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
4. 국제오렌지색이나 선명한 주황색, 또는 해상에서 탐지되는데 도움을 주는 모든 부분이 비교적 잘 보일 수 있는 색깔의 것일 것<2013. 9. 5. 개정>
5. 정체는 고품이며, 난연성(금속 또는 한국산업표준 "열경화성플라스틱일반시험방법"(KSM3015)중 내열성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을 하여 연소시간이 180초미만이고 연소거리가 25밀리미터 이하인 재료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것일 것<개정 2016. 3. 9>
6. 정원 및 의장품을 만제한 상태에서 충분한 복원력과 견현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 종경사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진수될 수 있을 것. <개정 2009. 4. 10>
7.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제한 후 수면 하의 1개소에 파공이 났을 때에도 양(+)의 복원력을 가질 것
8. 정원의 반수가 중심선으로부터 한쪽의 명시된 위치에 착석한 경우에 있어서도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양(+)의 복원성을 가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현을 가질 것
 - 가. 거널부근에 현측개구가 있는 구명정에 있어서는 흘수선에서 최저위치에 있는 개구(흘수선에서 상방에 있는 것에 한한다)까지의 견현이 구명정 길이의 1.5퍼센트(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센티미터로 한다)이상일 것
 - 나. 거널부근에 현측개구가 없는 구명정에 있어서는 경사각이 20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흘수선에서 최저위치에 있는 개구(흘수선에서 상방에 있는 것에 한한다)까지의 견현이 구명정길이의 1.5퍼센트(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센티미터로 한다)이상일 것
9. 해수에 젖고 인원 및 의장품을 만제한 상태에서 충분한 부양성을 가지거나 이와 동등한 부력을 갖는 부력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1인당 필요한 부력은 280뉴턴으로 한다.
10.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력체는 부양성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구명정의 내부에 부착되어 있을 것
11. 인원 및 의장품을 만제한 상태로 수상에 안전하게 내리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하중을 받은 경우에도 휨이 생기지 아니할 것

- 가. 금속제 정체의 구명정에 대하여는 인원 및 의장품을 만제한 구명정 전중량의 1.25배
- 나. 가목이외의 구명정에 대하여는 인원 및 의장품을 만제한 구명정 전중량의 2배
12. 인원 및 의장품을 만제한 경우 매초 3.5미터의 충격속도의 횡충격력에 견딜 수 있고, 3미터 높이에서 수상에 투하한 때에도 손상되지 아니할 것
13. 평온한 수면에서 선박이 5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고 있는 경우에도 진수 및 예항에 견딜 수 있을 것
1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추진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 가. 디젤기관일 것. 이 경우 그 냉각수펌프는 충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나. 인화점(밀폐용기시험에 의한 인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섭씨 43도이하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 다.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 (1) 섭씨 영하 15도의 온도에서 수동 또는 재충전할 수 있는 2개의 독립된 동력원에 의하여 2분 이내에 시동시킬 수 있을 것. 이 경우 시동용보조기구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 (2) 기관의 케이싱, 스위트, 그 밖의 장애물에 의하여 시동작업이 방해되지 아니할 것
- (3) 시동용전지는 수밀의 케이싱으로 보호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케이싱의 정부에는 마개가 달린 가스통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4) 시동용전원은 무선장치용전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것
- 라. 구명정이 진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냉온에서 시동 후 5분 이상 연속하여 작동될 수 있을 것
- 마. 크랭크축의 중심까지 침수된 경우에도 확실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
- 바. 프로펠러의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 사. 후진을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 아. 배기관은 기관으로 해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 자. 프로펠러에 의하여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부유물에 의하여 프로펠러가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프로펠러의 주위에 적절한 보호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 차. 기관 및 그 부속품은 고온부분 및 회전부분에 사람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고 황천상태에서도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난연성의 케이스에 들어 있을 것
- 카. 기관 및 그 부속품은 무선신호장치의 작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 타. 가능한 한 소음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파. 시동용·무선장치용 및 탐조등용 전지의 재충전을 위한 발전기가 비치되어 있을 것
- 하. 50볼트이하의 공급전압으로 선박으로부터 구명정의 전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장치(구명정의 승정장소에서 선박으로부터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된 것에 한한다) 또는 구명정의 전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태양전지가 부착되어 있을 것
15.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제한하고 보기가 작동하고 있는 경우 전진속력이 6노트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선박에 비치된 가장 큰 구명뗏목을 인원 및 의장품이 만제한 상태로 예항하는 경우에도 전진속력이 2노트이상일 것<개정 2009. 4. 10>
16.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6노트이상의 전진속력에서 24시간 연속운전에 충분한 연료를 저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연료는 선박이 항행하는 수역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의 온도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 방수조치된 기관작동안내서가 기관의 시동을 제어하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을 것
18. 모든 승정원이 승정 지시가 있는 때부터 10분 이내에 승정 할 수 있고 또한 환자를 들것에 실은 그대로 승정 시킬 수 있을 것. 이 경우 제3종선에 비치되는 것에 있어서는 승정지시가 있는 때부터 3분 이내에 승정원 모두가 승정 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개정 2009. 4. 10>
19. 조난자를 수중에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
20. 체중 100킬로그램의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의 스위트·사이드시트 또는 의자가 부착되어 있을 것
21. 승정원의 착석위치가 명시되어 있을 것
22. 승정원이 걷는 표면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설비가 되어 있을 것
2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커버가 구명정의 전단 및 후단에 씌워져 있을 것
- 가. 구명정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길이의 20퍼센트 이상을 씌울 수 있을 것
- 나. 난연성을 가질 것
- 다. 풍우밀폐쇄장치를 부착한 출입구가 있을 것
24.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커버가 씌어져 있지 아니한 개소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풍우밀의 천막이 씌워져 있을 것
- 가. 노출로부터 승정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개정 2016. 3. 9>
- 나. 접을 수가 있고 승정원 2인에 의하여 쉽게 펼칠 수 있을 것
- 다. 2이상의 막으로 단열효과가 있는 공기층이 구성되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단열효과를 가질 것
- 라.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기층을 가지는 천막은 당해 공기층에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제조된 것일 것
- 마. 내외에서 용이하게 개폐할 수 있는 풍우밀폐쇄장치를 부착한 승정구가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장치는 열린 상태 및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바. 빗물을 모으는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25. 제23호 및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커버 및 천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 가. 천막을 씌워 출입구 및 승정구를 닫은 경우에도 승정원에게 충분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
- 나. 전복된 경우에도 승정원이 탈출할 수 있을 것
- 다.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캐노피 등 및 실내등이 각각 덮개의 정부 및 구명정의 내부에 부착되어 있을 것
- (1) 캐노피등은 4.3칸델라이상의 밝기를, 실내등은 지침서 등을 읽을 수 있도록 상반구 전체에서 측정된 평균조도가 0.5칸델라 이상일 것. 다만, 캐노피등이 섬광식인 경우 분당 50회 이상 70회 이하의 비율로 동일하고 효과적인 조도로 섬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0>
- (2) 12시간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
- (3)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 (4) 캐노피등은 흰색의 빛을 상방의 모든 방향으로 발할 수 있는 것일 것
- 라. 내부의 승정원에게 불안감을 주지 아니하는 밝은 색일 것<개정 2009. 4. 10>
- 마. 바닥면의 50퍼센트 이상이 다음의 높이상일 것
- (1) 정원 10인 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1.3미터

- (2) 정원 10인 이상 24인 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1.3미터와 1.7미터 사이에서 직선보간법으로 정한 값
- (3) 정원 24인 이상의 것에 대하여는 1.7미터
26. 천막을 펼치기 위한 고형부분 또는 골조가 설비되어 있을 것
27. 진수를 위한 작업위치 및 조타위치에서 충분한 가시범위를 가질 것
28. 어느 승정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승정용사다리(최하위의 발판이 구명정의 경하흘수선하 0.4미터보다 깊은 위치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비치되어 있을 것
29. 정체의 최하점 부근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드레인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 가. 구명정이 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배수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열리고 수상에 있는 경우에는 물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 나. 밸브를 닫기 위한 플러그가 비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플러그는 줄, 쇠사슬 등에 의하여 구명정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다. 구명정의 내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되어 있고 그 장소가 명시되어 있을 것
30.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타 및 킬러가 설치되어 있을 것
- 가. 타는 항구적으로 구명정에 부착되어 있을 것
- 나. 킬러는 항구적으로 타두재에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구명정이 원격조타장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가 고장난 경우 타를 제어할 수 있는 킬러를 타두재의 가까이에 비치할 수 있다.
- 다. 타 및 킬러는 이탈장치 또는 프로펠러의 작동에 의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 있을 것
31. 타 및 프로펠러의 주변을 제외하고 구명정의 흘수선 상방의 외부주위에 수중의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장치 또는 부양성의 구명줄이 비치되어 있을 것
32. 소형의 의약품·식수 및 식량을 격납하기 위한 수밀의 격납상자 또는 구획실이 있을 것
33.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
34. 폴(Fall)에 의하여 진수되는 모든 구명정의 이탈장치는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163. 구명정 이탈장치)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9. 4. 10><개정 2014. 05. 28>
35. 2개의 폴을 사용하여 진수하는 구명정에는 폴의 이탈장치의 조작지침서가 비치되어 있을 것
36. 선수부근에 페인터를 매어두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부착장치는 구명정이 평온한 수면에서 5노트의 속력으로 선박에 의하여 예항되는 경우 안정성을 가져야 하며, 구명정내부에서 페인터를 이탈시킬 수 있는 이탈장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7. 스케이트 및 방현재가 부착되어 있을 것
38. 휴대용무선장치의 공중선을 펼치기 위한 장치 및 접지단자가 부착되어 있을 것
39. 전복되는 경우 사람이 구명정을 붙잡을 수 있는 빌지킬, 킬레일을 형성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장치에는 심한 충격으로부터 신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40. 유효한 배수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4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퍼스는 비너클에 보관되어야 하며 구명정에 부착된 컴퍼스거치대에 설치될 수 있을 것
42. 정원은 150인 이하일 것

제11조(전폐형구명정) ① 폴을 사용하여 진수하는 전폐형구명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 또는 그 일부를 적재하고 승정원이 안전벨트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는 경우 모든 횡경사의 상태에서 양(+)의 복원력을 가질 것
2. 수면 하의 1개소에 파공이 생긴 경우 만재된 인원 및 의장품을 지지할 수 있고, 전복된 경우에도 승정원이 물위로 탈출할 수 있는 위치로 자동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 이 경우 침수 후 안정된 상태에서 좌석등받이에 따라 측정된 구명정내의 수면위치는 어느 승정원의 좌석위치에 있어서도 좌석받침 상방으로 5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3.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경우 매초 3.5미터의 충격속도의 횡충격력으로부터 승정원이 보호될 수 있을 것
4.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추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가. 조타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을 것
 - 나. 전복한 경우에도 작동이 계속될 것. 다만, 구명정이 전복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되고 복원한 후 쉽게 재시동 시킬 수 있는 추진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전복시 복원될 때까지 기관의 연료유장치에서 연료가 새지 아니할 것
 - 라. 전복시 복원될 때까지 기관의 윤활유장치에서 0.25리터를 넘는 윤활유가 새지 아니할 것
 - 마. 공냉식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냉각용공기를 구명정 밖에서 흡기하여 구명정 밖으로 배기하거나 또는 구명정 안에서 흡기하여 구명정 안으로 배기할 수 있을 것
 - 바. 제10조제14호의 요건
5. 구명정의 전길이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수밀의 고정커버가 씌워져 있을 것
 - 가. 난연성의 것일 것
 - 나. 전복되는 경우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을 지탱할 수 있는 강도의 것일 것
 - 다. 내외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수밀의 폐쇄장치를 부착한 승정구가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장치는 열린상태 및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라. 승정구를 닫은 경우에도 승정원에게 충분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
 - 마. 채광을 위한 수밀의 창 또는 패널이 부착되어 있을 것
 - 바. 전폐된 상태에서 기관이 작동하는 동안 구명정의 내부기압이 외기압보다 20헥타파스칼을 초과하여 높거나 낮지 아니할 것
 - 사. 내부에서 진수 및 회수를 위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 아. 내부에서 노를 사용할 수 있을 것
 - 자. 커버외부에 구명정 외측을 걷는 사람을 위한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을 것
 - 차. 제10조제24호가목 및 바목과 제25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
6. 구명정이 전복하는 경우 체중 100킬로그램의 사람을 유지할 수 있고 옆좌석과 용이하게 식별되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을 것
7. 승정원이 쓰윳트 그 밖의 장애물에 방해됨이 없이 좌석으로 갈 수 있을 것
8. 기관의 배기관, 흡기관 그 밖의 개구는 구명정이 전복되어 다시 복원되는 경우에도 침수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
9.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퍼스가 조타위치에 고정 설치되어 있을 것

10. 제10조제1호부터 제13호·제15호부터 제22호·제27호부터 제38호·제40호 및 제42호의 요건

② 선미에서 폴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진수하는 전폐형구명정(이하 "자유강하식구명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진수높이(평온한 수면으로부터 진수위치에 놓여 있는 구명정에 있어서 가장 낮은 점까지의 높이로서 해당 구명정이 안전하게 진수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최대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3배의 높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하고 진수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할 것. <개정 2008. 7. 18.>
2. 선박이 어느 쪽으로든지 20도(유탱커 등에 비치되는 것에 있어서는 손상시의 복원성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비대칭침수시의 최종경사각 또는 20도중 큰 각도)의 횡경사(이하 "선박의 20도횡경사"라 한다) 및 10도의 종경사의 상태에 있어서 최대진수높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하고 진수하는 경우 승정원, 정체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강도 및 구조의 것일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수직후 전진할 수 있고, 본선과 접촉되지 아니할 것
4. 해당 선박에서 요구되는 진수높이(평온한 수면에서 해당 선박의 최소항해흘수로부터 진수위치에 놓여 있는 구명정의 가장 낮은 점까지의 최대높이)는 최대진수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이탈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가. 무부하상태로부터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중량의 2배까지의 하중에서 작동될 것
 - 나. 구명정의 내부에서 조작할 수 있을 것
 - 다. 서로 독립된 2이상의 조작부분을 가질 것
 - 라. 잘못된 조작에 의한 갑작스런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 마. 구명정을 진수하지 아니하고 이탈장치를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일 것
 - 바. 조작부분은 그 주변과 대조적인 색채로 명시되어 있을 것<개정 2014. 12. 24.>
 - 사. 구명정의 질량이 폴 사이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경우 이탈장치에서 하중을 견디는 구성부분 및 구명정에 고정된 구조연결부는 승선정원, 연료유 및 장비를 만재한 상태에서 사용된 재료의파단강도(Ultimate strength)에 대하여 6의 안전계수를 가질 것. 다만, 정비를 위하여 구명정을 매다는장치(Hanging-off pendants)의 안전계수는 연료유 및 장비를 만재한 구명정의 질량에 1,000kg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4. 12. 24.>
6. 구명정의 전단부근에 페인터를 매어두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부착장치는 구명정이 평온한 수면에서 5노트의 속력으로 선박에 의하여 예항되는 경우 안정성을 가지는 것일 것
7. 제10조제1호부터 제10호·제15호부터 제22호·제27호·제28호·제30호부터 제33호·제38호·제40호 및 제42호와 동조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사목 및 아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요건

제11조의2(자유강하식구명정) ① 자유강하식구명정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폐형구명정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자유강하식구명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좌석 표면은 부드럽고 사람의 체형에 맞게 굴곡이 있어야 하며 등과 골반을 지지하고 머리 보호를 위한 유연한 측면 지지체 등 모든 접촉면에 적어도 10밀리미터의 완충제를 붙일 것
2. 좌석은 접혀지지 않는 형식으로 구명정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어야 하며 진수 중에 선체 또는 천정덮개의 변형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배치될 것
3. 좌석의 위치 및 구조는 만약 좌석 폭이 탑승자의 어깨 넓이보다 좁다면 진수 중에 부상의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배치될 것

4. 좌석 사이의 통로는 바닥으로부터 좌석의 최상부까지 적어도 480밀리미터의 폭을 가져야 하며, 방해물이 없어야 하고 진수 준비 위치에서 안전한 승선을 위해 적절한 미끄럼 방지 표면을 가져야 하며, 미끄럼 방지 표면은 발을 디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를 갖출 것
5. 각 좌석은 진수 중에 탑승자의 몸을 잡아주기 위해 팽팽한 상태에서 순간 이탈을 할 수 있는 안전벨트를 가질 것
6. 좌석 등받이의 각도는 90도 이상이어야 하며 좌석의 폭은 480밀리미터 이상일 것
7. 등받이의 간격은 엉덩이부의 등받이에서 90도 각도로 측정하여 650밀리미터 이상일 것
8. 등받이 높이는 1075밀리미터 이상 이어야 하며 좌석은 등받이를 따라 측정하여 어깨 높이가 760밀리미터 이상일 것
9. 발판은 좌석판 각도의 절반 이상 각도로 하며 적어도 330밀리미터의 길이를 가질 것(그림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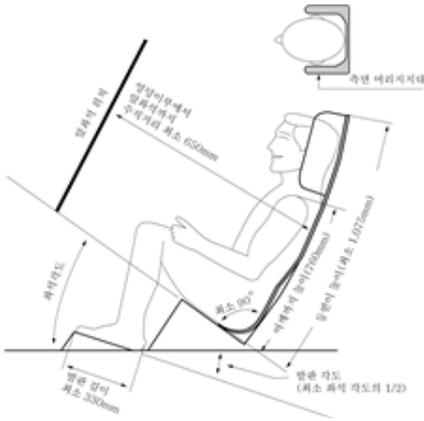


그림1-1

[전문신설 2010. 5. 3.]

제12조(공기자급식구명정) 공기자급식구명정은 제11조제1항 각 호(자유강하식구명정에 있어서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내부의 공기는 모든 승정구 및 개구를 닫고 항행하는 경우 승정원이 안전하게 호흡할 수 있고, 기관이 10분간 연속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될 것
2. 내부의 기압은 외부의 기압보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외부의 기압보다 20밀리바를 초과하여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유지될 것
3. 공기자급장치에는 급기압을 표시하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제13조(내화구명정) 내화구명정은 제11조제1항 각 호(자유강하식구명정에 있어서는 제11조제2항 각 호) 및 제12조 각 호의 요건이외에 수상에서 8분간의 계속적인 기름화재 속에서 승정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화구명정의 살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물은 자기주입식의 동력펌프에 의하여 공급될 것. 이 경우 구명정밖에서 물의 흐름을 통하게 하거나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2. 물의 흡입구는 수면에서 인화성액체의 흡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3. 청수로 세정할 수 있고 안전하게 배수될 수 있을 것

제14조(구명정의 정원) ① 구명정(자유강하식구명정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수 중 작은 수로 한다.

1. 추진장치 및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착석할 수 있는 성인(구명조끼를 착용한 체중 75킬로그램(여객선) 또는 82.5킬로그램(화물선)의 성인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호 및 제42조제1항에서 같다)의 수<개정 2010. 5. 3.><개정 2014. 12. 24.>
2. 그림 1과 같이 좌석배치를 하여 얻어진 좌석의 수. 이 경우 발판이 부착되어 있고 다리를 두는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상부 및 하부 사이의 수직거리가 35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겹쳐 배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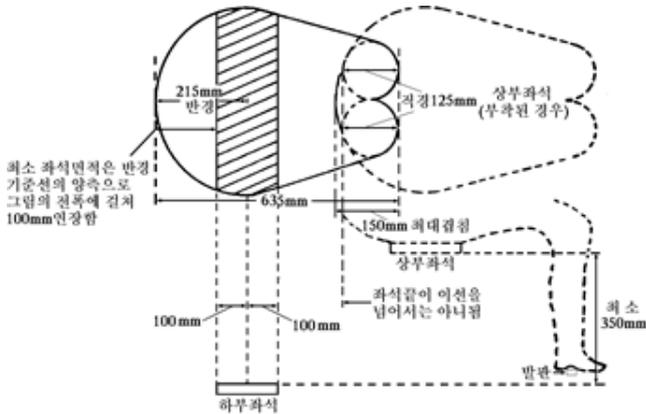


그림 1

- ② 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의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의 1.1배로 한다.<개정 2007. 11. 22.>
- ③ 자유강하식구명정의 정원은 82.5킬로그램의 평균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추진장치 및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개정 2010. 5. 3.>

제15조(구명정의 의장품) ① 구명정에는 별표 1에 의한 의장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종선 또는 제3종선으로서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에는 구난 식량 및 낚시도구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2.>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종선 또는 제4종선으로서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에는 음료수·국자·컵·응급의료구·배멀미방지약·배멀미용주머니·보온구·호각 또는 이와 동등한 음향신호·행동지침서·생존지침서·구명신호설명표 및 일광신호용거울을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2.>
-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유강하식구명정에는 단조식오르 및 쏘핀 또는 크러치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를 비치한 구명정에는 레이더반사기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4. 10><개정 2016. 3. 9>

제16조(구명정의 의장품의 고정) ① 모든 구명정의 의장품은 보트혹을 제외하고는 구명정안에 이를 고정시켜야 한다. 이 경우 래싱은 의장품이 고정되도록 하고 또한 이탈장치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신속한 승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구명정의 의장품은 될 수 있는 대로 작고 또한 가벼운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포장된 것이어야 한다.

제2관 구명뗏목

제17조(제1종팽창식구명뗏목) ① 제1종팽창식구명뗏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완전히 팽창되어 천막을 위로하여 떠 있는 경우 수상에서 안정성을 가질 것
2. 18미터의 높이(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의 높이가 18미터를 넘는 장소에 탑재되는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그 탑재장소)에서 물 위로 투하한 경우 구명뗏목 및 그 의장품이 손상되지 아니할 것
3. 천막을 펼친 상태와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면으로부터 4.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사람이 반복해서 뛰어내려도 견딜 수 있을 것(2005. 1. 13. 개정)<개정 2014. 12. 24.>
4.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제한 상태로 1개의 시앵커를 끌고 3노트의 예상속력을 견딜 수 있을 것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천막을 가질 것
 - 가. 구명뗏목이 팽창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펴질 것
 - 나.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승정구가 2개 이상일 것. 다만, 정원 8인 이하의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1개로 할 수 있다. <2005. 1. 13. 개정>
 - (1) 정반대방향에 위치하고 있을 것
 - (2) 방수복을 입은 사람이 내외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풍우밀의 폐쇄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 다. 견시용창이 부착되어 있을 것
 - 라. 0.9미터이상의 높이를 가질 것
 - 마. 제10조제25호다목의 요건에 적합한 캐노피등 및 실내등이 각각 천막의 정부와 구명뗏목의 내부에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각 등은 천막이 펴졌을 때 자동적으로 켜져야 하며, 배터리는 적재된 구명뗏목에 있어서 습기로 인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형식의 것이어야 한다.
 - 바. 수면상 1미터이상의 높이에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를 장치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 있을 것. <개정 2009. 4. 10><개정 2016. 3. 9>
 - 사. 제10조제24호가목·다목·라목 및 바목, 제25호라목, 제11조제1항제5호라목의 요건
6. 구명뗏목의 탑재장소와 최소항해흘수사이의 높이에 10미터를 더한 것 또는 15미터 중 큰 것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페인터가 부착되어 있고, 구명뗏목의 바깥둘레 및 안둘레에 구명줄이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제2종선 및 제4종선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뗏목은 탑재장소와 최소항해흘수사이의 높이에 10미터를 더한 것 또는 15미터 중 큰 것의 길이(페인터의 외부 끝단에서 가스충기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지점까지의 길이를 말한다)를 가지는 페인터(Painter)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5. 31>
7. 수상에서 상하 거꾸로 하여 팽창되는 경우 1인이 쉽게 뒤집을 수 있을 것
8. 하나 이상의 출입구에는 구명뗏목의 탑승램프 이외의 다른 부분을 잡지 아니하고 100킬로그램의 체중을 가진 사람이 앉거나 혹은 서있는 경우 이를 지탱할 수 있는 탑승램프가 설치되어 있을 것<개정 2009. 4. 10>
9. 탑승대의 손상에 의하여 구명뗏목이 수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10. 탑승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승정구에는 승정용사다리가 비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승정용사다리의 최하단 발판은 구명뗏목 경하수선에서 아래로 0.4미터이상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2005. 1. 13. 개정>

11. 승정용사다리로부터 구명뗏목의 내부까지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설비가 비치되어 있을 것
12. 해상에서의 심한 마손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컨테이너에 될 수 있는 한 천막을 위로하여 팽창될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는 것으로서 해당 컨테이너내에 있는 상태에서 팽창을 위한 작동이 되며, 수중에서 뜰 수 있을 것. 이 경우 용기에는 드레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3. 부력은 역지밸브를 통하여 팽창하는 2개 이상의 독립된 공기실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일 것
14. 공기실은 최대사용압력의 3배 이상의 과압시험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것이어야 하며 최대사용압력의 2배를 초과하는 과압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을 것
15. 1개의 공기실이 팽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원 1인당의 중량을 82.5킬로그램으로 하여 모든 정원이 소정의 위치에 착석하였을 때 전주위에 걸쳐서 양(+)의 견현을 가질 것<개정 2011. 12. 15.>
16. 무게는 컨테이너 및 의장품을 포함하여 185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구명뗏목진수장치에 의하여 진수되는 것으로서 구명뗏목진수장치의 도달거리내에 탑재되어 있는 구명뗏목
 - 나. 이 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구명뗏목에 추가하여 비치하는 구명뗏목으로서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탑재장소에서 직접 수상으로 투하시킬 수 있는 구명뗏목
17. 바닥은 방수성이고 냉기를 유효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 가. 1개 이상의 공기실로 형성되는 바닥으로서 각 기실을 승무원이 팽창시킬 수 있는 것 또는 자동적으로 팽창하고 승무원에 의하여 그 공기압의 조정이 가능한 것일 것
 - 나. 팽창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목에 의한 것과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일 것
18. 인체에 대하여 무해한 기체를 사용하여 줄을 당기거나 그 밖에 이와 같이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팽창시킬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 가.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고압가스충전용기 및 충전장치는 주공기실의 외측에 격납되고 항상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
 - 나. 페인터(위크링크를 제외한다) 및 구명뗏목의 페인터 부착장치는 다음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개정 2014. 12. 24.>
 - (1) 정원 9인 미만의 것 : 7.5킬로뉴튼
 - (2) 정원 9인 이상의 것 : 10킬로뉴튼
 - (3) 정원 25인을 초과하는 것 : 15킬로뉴튼
19. 압력유지를 위하여 충기펌프 또는 풀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20. 모든 해상상태에서 30일간 노출에 견딜 수 있을 것<개정 2016. 3. 9>
21. 휴대식무선장치의 공중선을 펼칠 수 있을 것
22. 1인에 의하여 팽창시킬 수 있고, 섭씨 18도 내지 섭씨 20도의 온도에서 1분 이내, 섭씨 영하30도의 온도에서 3분 이내에 팽창이 완료될 수 있으며, 팽창후 인원 및 의장품을 만제한 상태에서 원래의 모양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이 경우 도출밸브를 포함한 팽창장치는 국제표준화기구기준(ISO 15738 : 2002)에 따른 팽창식구명설비를 위한 가스팽창장치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4. 10>

23. 정원은 6인 이상일 것
2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물주머니가 부착되어 있을 것
- 가. 눈에 띄기 쉬운 색깔일 것
 - 나. 구명뗏목이 전개된 후 25초 이내에 물주머니용량의 60퍼센트를 채울 수 있는 구조일 것
 - 다. 물주머니 합계용량은 10인승이하의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220리터 이상, 10인승을 초과하는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20N리터 이상일 것. 이 경우 N은 구명뗏목의 정원을 말한다.
 - 라. 구명뗏목의 아래로부터 공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 있을 것
 - 마. 구명뗏목의 주위에 걸쳐 대칭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
25. 강하식탑승장치에 연결하기 위한 줄이 부착되어 있을 것(강하식탑승장치에 의하여 승정하는 것에 한한다)
26. 제10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
- ② 수상에서 상하를 거꾸로 하여 팽창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팽창식구명뗏목(이하 "자동복원팽창식구명뗏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제7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의장품을 만제한 상태에서 상하를 거꾸로 하여 팽창되는 경우와 팽창후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복원될 수 있을 것
 2. 해상에서의 심한 마손에 견딜 수 있는 컨테이너에 격납된 것으로서 해당 용기내에 있는 상태에서 팽창을 위한 작동이 되고, 수중에서 뜰 수 있을 것
 3. 제10조제40호의 요건
- ③ 어느 쪽을 위로하여 뜨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팽창식구명뗏목(이하 "양면팽창식구명뗏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제1호, 제7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어느 쪽을 위로하여 뜨는 경우에도 해상에서 안정성을 가질 것
 2. 의장품은 어느 쪽을 위로하여 뜨는 경우에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팽창식구명뗏목으로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제한 상태에서 구명뗏목진수장치에 의하여 진수되는 제1종팽창식구명뗏목(이하 "진수장치용제1종팽창식구명뗏목"이라 한다)은 각각 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인원 및 의장품을 만제한 상태로 진수장치에 의하여 안전하게 진수될 수 있어야 하며, 매달았을 때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 가. 모든 안전번이 작동불능이고 주위온도 및 안정된 구명뗏목의 온도가 섭씨 20도±섭씨 3도의 경우에 모든 정원 및 의장품의 중량의 4배에 상당하는 하중
 - 나. 모든 안전번이 작동하고 주위온도 및 안정된 구명뗏목의 온도가 섭씨 영하30도의 경우에 모든 정원 및 의장품중량의 1.1배에 상당하는 하중
 2. 구명뗏목진수장치와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3. 선상에서 인원이 안전하게 승정 할 수 있도록 구명뗏목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
 4.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탑승대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치가 부착되는 쪽의 반대편 승정구에 부착되어 있을 것(2개 이상의 승정구를 가지는 구명뗏목에 한한다)

5. 제10조제12호 및 제18호의 요건

제18조(제2종팽창식구명뗏목) 제2종팽창식구명뗏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10조제24호가목 및 바목과 제17조제1항제5호가목 및 마목의 요건에 적합한 천막을 가질 것
2. 수중의 사람이 기어오를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승정구가 2개 이상일 것
3. 부력은 짝수의 독립된 공기실(그 반수로 구명뗏목의 정원을 수면상에 지탱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의하거나 그 밖에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공기실은 구명뗏목이 손상되거나 그 일부가 팽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여유의 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4. 섭씨 영하 30도 내지 섭씨 66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5. 절단하중이 4.9킬로뉴턴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띠줄이 주공기실의 중앙을 따라 부착되어 있을 것
6.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7호·제12호·제16호부터 제20호·제23호 및 제26호의 요건

제19조(고체식구명뗏목) ① 고체식구명뗏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천막을 위로하여 떠 있는 경우 수상에서 안정성을 가질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천막이 있을 것
 - 가. 구명뗏목이 진수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펴질 것
 - 나. 제17조제1항제5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요건
3. 상하를 거꾸로 하여 진수되는 경우 1인이 쉽게 뒤집을 수 있을 것. 다만, 어느 쪽을 위로하여 사용될 수 있는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양성을 가지는 재료에 의하여 만들어진 부력체가 가능한 한 구명뗏목의 외측에 따라 배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부력체는 난연성을 가지는 것이거나 또는 난연성의 커버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5. 의장품은 어느 쪽을 위로하여 떠 있는 경우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어느 쪽을 위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에 한한다)
6. 무게는 의장품을 포함하여 185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 다만, 185킬로그램을 넘는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16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제1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6호·제8호·제10호·제11호·제17호·제20호·제21호·제23호, 제25호 및 제26호의 요건

② 상하를 거꾸로 하여 진수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고체식구명뗏목(이하 "자동복원고체식구명뗏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의장품을 만제한 상태에서 상하를 거꾸로 하여 진수되는 경우와 진수후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복원될 수 있을 것
2. 제17조제2항제3호의 요건
- ③ 어느 쪽을 위로하여 뜨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고체식구명뗏목(이하 "양면고체식구명뗏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이외에 제17조제2항제3호 및 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고체식구명뗏목으로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제한 상태에서 구명뗏목진수장치에 의하여 진수되는 고체식구명뗏목(이하 "진수장치용고체식구명뗏목"이라 한다)은 각각 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

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로 진수장치에 의하여 안전하게 진수될 수 있어야 하며, 매달았을 때에 정원 및 의장품의 중량의 4배에 상당하는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 제17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제20조(구명뗏목의 정원) ① 팽창식구명뗏목의 정원은 다음 각 호(제2종팽창식구명뗏목에 있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수중 작은 수로 한다.

1. 팽창된 상태에서 주공기실(지주 및 쓰윳트가 점유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용적(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을 0.096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2. 팽창된 상태에서 바닥(쓰윳트가 접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을 0.372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3.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착석할 수 있는 성인[방수복 및 구명조끼(진수장치용구명뗏목의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체중 82.5킬로그램의 성인을 말한다. 이하 제2항제3호에서 같다]의 수<개정 2011. 12. 15><개정 2014. 12. 24.>

② 고체식구명뗏목의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수중 작은 수로 한다.

1. 부력체의 용적(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에 1에서 부력체 재료의 비중을 뺀 수를 곱하여 이것을 0.096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2. 바닥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을 0.372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3.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착석할 수 있는 성인의 수

제21조(구명뗏목의 의장품) ① 구명뗏목에는 별표 2에 의한 의장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제1종선으로서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뗏목에는 구난식량·음료수·컵·깡통따개·가위 및 낚시도구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로켓낙산신호·신호홍염 및 발연부신호는 그 2분의 1을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2.>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종선 또는 제4종선으로서 연해구역이해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뗏목에는 구난식량·음료수·컵·응급의료구·배멀미방지약·배멀미용주머니·보온구·깡통따개·가위·호각 또는 이와 동등한 음향신호·낚시도구·행동지침서·생존지침서·구명신호설명표·수밀전기등·일광신호용거울 및 레이더반사기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로켓낙산신호·신호홍염 및 발연부신호는 그 2분의 1을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2.>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를 비치한 구명뗏목에는 레이더반사기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4. 10><개정 2016. 3. 9>

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로로여객선의 구명뗏목에는 4개의 구명뗏목마다 1개의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9>

제22조(구명뗏목의 의장품의 고정) ① 모든 구명뗏목의 의장품은 이를 구명뗏목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적절한 용기에 수납하거나 구명뗏목내에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 30분 이상 뜰 수 있는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모든 구명뗏목의 의장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관 구명부기

제23조(구명부기) ① 구명부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어느 쪽을 위로하여 떠 있는 경우라도 유효하고 또한 안정성을 가질 것. 이 경우 임의의 변의 길이 30.5센티미터에 대하여 중량 7.5킬로그램의 철편을 매다는 경우 구명부기의 상부표면의 어느 부분도 물에 가라앉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적재장소로부터 물 위에 투하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할 것
3. 무게는 180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구명부기진수장치를 비치한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부기를 제외한다)
4. 수밀공기상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부력체가 가능한 한 구명부기의 외측에 가까이 배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수밀공기상자가 금속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가. 두께는 동판 또는 황동판의 경우에는 0.6밀리미터 이상, 내식성알루미늄판의 경우에는 1.0밀리미터 이상일 것
 - 나. 길이는 120센티미터 이하일 것
 - 다. 판형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길이가 7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강을 위한 스티프너를 설치할 것
 - 라. 철강부에 접촉하여 장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 마. 0.98파스칼의 공기압에 대하여 공기가 누설되지 아니할 것
5. 투하시험의 높이에 2미터를 가산한 길이의 것으로서 절단하중이 4.9킬로뉴턴 이상인 페인터가 부착되어 있고, 구명부기의 바깥둘레에 구명줄이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구명줄은 절단하중 2킬로뉴턴이상의 것으로서 외경 4센티미터, 길이 10센티미터 정도의 부자가 부착된 정원과 동수의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의 것일 것<개정 2008. 7. 18.>
7. 정원은 8인 이상일 것
8. 제10조제4호의 요건

② 팽창에 의하여 부력을 얻을 수 있는 구명부기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해상에서의 심한 마손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주머니 그 밖의 컨테이너에 격납되어 있는 것으로서 해당 컨테이너내에 있는 상태에서 팽창을 위한 작동이 되며 수중에서 뜰 수 있을 것
2. 부력은 짝수의 독립된 공기실에 의하거나 그 밖에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공기실은 구명부기가 파손되거나 그 일부가 팽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여유의 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3. 섭씨 영하20도 내지 섭씨 40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4. 제17조제1항제18호(나목을 제외한다)의 요건.

제24조(구명부기의 정원) ① 구명부기의 정원은 담수 중에서 유지할 수 있는 철편의 무게(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한다)를

14.5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 또는 주변의 길이(단위는 미터로 한다)를 0.305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 중 작은 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 위에 사람을 떠 있게 할 수 있는 구조의 구명부기의 정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수의 합계로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 첩편(1개의 무게가 14.5킬로그램의 것)을 담수중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의 당해 구명부기의 부력(단위는 뉴턴으로 한다)을 835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 또는 바닥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을 0.372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 중 작은 수

제4관 구조정

제25조(팽창식일반구조정) 팽창식일반구조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해상에서 선박의 노출갑판상에 적재하는 경우 및 모든 해상상태에서 30일동안 떠 있는 경우 노출에 견딜 수 있을 것<개정 2016. 3. 9>
2.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하고 해수에 휩쓸려도 충분한 부양성을 가질 것
3. 길이는 3.8미터이상 8.5미터이하일 것
4. 부력은 5개 이상의 용적이 거의 같은 독립된 공기실로 구획된 1개의 튜브 또는 각각의 용적이 전용적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2개 이상의 튜브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일 것
5. 튜브는 팽창된 상태에서 1인당 0.17제곱미터의 용적을 가지는 것일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원 1인당의 중량을 82.5킬로그램으로 하여 모든 정원이 소정의 위치에 착석하여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전주위에 걸쳐서 양(+)의 견현을 가질 것<개정 2010. 5. 3.>
 - 가. 앞쪽의 어느 공기실이 수축되는 경우
 - 나. 한쪽현의 모든 공기실이 수축되는 경우
 - 다. 한쪽현의 모든 공기실 및 선수의 공기실이 수축되는 경우
7. 모든 공기실에는 안전밸브, 공기배출장치 및 수동에 의하여 팽창시키기 위한 체크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과압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기실에는 안전밸브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7. 18.><개정 2014. 12. 24.>
8.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로 수상에 안전하게 내리기에 충분한 강도이어야 하며, 진수장치에 의하여 진수되는 것에 있어서는 제17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명뗏목"을 "구조정"으로 본다.
9. 저부 및 취약부분에 적절한 보강재가 부착되어 있을 것
10. 선미횡판은 구조정의 후단에서 전장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전방에 배치되어있지 아니할 것(방형선미를 가지는 구조정에 한한다)
11. 해상에서 조난자의 구조 및 구명뗏목의 지원을 위하여 충분한 운동성 및 조종성을 가질 것
1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추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가. 인화점이 섭씨 43도이하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연료유장치를 가지는 선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7. 18.>
 - 나. 구조정이 물에 떨어진 상태에 있어서 냉온에서 시동 후 5분 이상 연속하여 작동될 수 있을 것
 - 다. 50볼트이하의 공급전압으로 선박으로부터 구조정의 전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장치(구조정의 승정장소에서 선박으로부터 끊어버릴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된 것에 한한다) 또는 구조정의 전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태양전지가 부착되어 있을 것

것.

라. 제10조제14호가목·다목 및 마목부터 파목까지의 요건

13.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하고 보기가 작동하고 있는 경우 전진속력이 6노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선박에 비치된 가장 큰 구명뗏목을 인원 및 의장품이 만재된 상태로 예방하는 경우에도 전진속력이 2노트 이상일 것<개정 2009. 4. 10>
14.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6노트의 전진속력에서 4시간 연속운전에 충분한 연료를 저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연료는 선박이 항행하는 수역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의 온도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5. 조난자를 수중에서 쉽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
16. 구조정의 전단에서 길이의 15퍼센트 이상 커버가 씌워져 있을 것. 다만, 적절한 현호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정체의 최하점 부근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드레인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 가. 구조정이 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배수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열리고 수상에 있는 경우에는 물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 나. 밸브를 닫기 위한 플러그가 비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플러그는 줄, 쇠사슬 등에 의하여 구조정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다. 구조정의 내부에서 쉽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에 부착되어 있고 그 장소가 명시되어 있을 것
18. 제10조제30호의 규정에 적합한 타 및 킬러가 설치되어 있을 것(선외기를 부착하는 구조정을 제외한다). 이 경우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
19. 타 및 프로펠러의 주변을 제외하고 구조정의 흡수선상방의 외부에 부양성의 구명줄이 설치되어 있을 것
20.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구명뗏목을 예방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예방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21. 페인터 및 구명줄은 공기실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당해 장소에 패치를 사용하여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소형의 의장품을 격납하기 위한 풍우밀의 격납상자 또는 구획실이 있을 것
23. 전복되는 경우 사람이 구조정을 붙잡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24. 방수복과 구명조끼를 입은 착석자 5인 및 들것에 가로 누운 사람 1인을 탑재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사람을 거닐, 선미 횡판 또는 구조정 양현의 부력실상에 탑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4. 10><개정 2014. 12. 24.>
25. 구조정에 부착하는 쓰윳트, 사이드시트 또는 의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26. 제10조제25호다목의 규정에 적합한 캐노피등이 부착되어 있을 것
27.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제6호부터 제8호·제12호·제13호·제17호·제18호·제21호·제22호·제27호·제28호·제34호부터 제37호 및 제40호의 요건. 이 경우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
28. 진수를 위한 작업위치, 조타위치 및 조난자 구조위치에서 앞뒤좌우를 관찰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된 것일 것.<신설 2009. 4. 10>

제26조(고체식일반구조정) ① 고체식일반구조정은 제10조제1호부터 제13호·제17호·제18호·제21호·제22호·제27호·제28호·제34호부터 제37호 및 제40호와 제25조제3호·제11호부터 제20호 및 제22호부터 제26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의 준용 규정중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체식일반구조정에 부착하는 제1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력체가 손상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고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구조정의 외부에 부착할 수 있다.

제27조(복합식일반구조정) 복합식일반구조정은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제6호부터 제8호·제12호·제13호·제17호·제18호·제21호·제22호·제27호·제28호·제34호 내지 제37호 및 제40호와 제25조제1호·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26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의 준용 규정 중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

1. 부력의 전부를 팽창부분에 의하여 가지게 되는 복합식일반구조정에 있어서는 제10조제5호 및 제11호와 제25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
2. 부력의 일부를 팽창부분에 의하여 가지게 되는 복합식일반구조정에 있어서는 제10조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와 제25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
3. 팽창부분이 방현재로서 장치되어 있는 복합식일반구조정에 있어서는 제10조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요건

제28조(팽창식고속구조정) 팽창식고속구조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길이는 6.0미터이상, 8.5미터 이하일 것
2.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3인 및 의장품을 탑재하고 또한 보기가 작동하고 있는 경우 전진속력이 20노트 이상일 것
3.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하고 또한 보기가 작동하고 있는 경우 전진속력이 8노트이상이고, 해당 선박에 비치된 가장 큰 구명뗏목을 인원 및 의장품이 만재된 상태로 예상하는 경우에도 전진속력이 2노트 이상일 것<개정 2009. 4. 10>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0노트의 전진속력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8노트의 전진속력에서 모두 4시간의 연속 운전에 충분한 연료를 저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연료는 선박이 항행하는 수역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의 온도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전복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복원하거나 2인으로 용이하게 뒤집을 수 있을 것
6. 원격조종장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해 장치가 고장난 경우에도 구조정의 조정을 행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7.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추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가. 전복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 또는 비상정지 스위치에 의하여 정지되어야 하며, 복원 후 용이하게 재시동 시킬 수 있을 것<개정 2009. 4. 10>
 - 나. 제25조제12호의 요건<개정 2009. 4. 10>
 - 다. 전복시 연료유 또는 윤활유의 유출량은 설계된 연료유 또는 윤활유계통에서 0.25리터 이하일 것.<신설 2009. 4. 10>
8. 구조정진수장치와 연결하는 장치는 가능한 한 구조정과 구조정진수장치를 1개소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일 것
9. 고속구조정에는 핸드프리(hands free) 및 수밀의 VHF 무전기를 비치할 것<신설 2009. 4. 10>
10. 바닥에 고인 물이 자동적으로 배수되거나 신속하게 제거될 수 있는 것일 것<신설 2009. 4. 10>
11. 악천후 및 황천에서도 안전하게 진수되고 회수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것일 것<신설 2009. 4. 10>
12.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제6호부터 제8호·제12호·제13호·제17호·제18호·제21호·제22호·제27호·제28호·제34호부터 제37호 및 제40호, 제19조제4항제1호, 제25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11호·제15호부터 제17호 및 제19호부터 제26호의 요건. 이 경우 제10조의 준용 규정중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개정 2009. 4. 10>

제29조(고체식고속구조정) ① 고체식고속구조정은 제10조제1호부터 제13호·제17호·제18호·제21호·제22호·제27호·제28호·제34호부터 제37호 및 제40호, 제19조제4항제1호, 제25조제11호·제15호부터 제17호·제19호·제20호 및 제22호부터 제26호와 제2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의 준용 규정 중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 <개정 2009. 4.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체식고속구조정에 부착하는 제1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력체가 손상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고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구조정의 외부에 부착할 수 있다.

제30조(복합식고속구조정) 복합식고속구조정은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제6호부터 제8호·제12호·제13호·제17호·제18호·제21호·제22호·제27호·제28호·제34호부터 제37호 및 제40호, 제19조제4항제1호, 제25조제1호·제10호·제11호·제15호부터 제17호 및 제19호부터 제26호와 제2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요건이외에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의 준용 규정 중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 <개정 2009. 4. 10>

제31조(구조정의 정원) 구조정의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수중 작은 수로 한다.

1. 성인 1인이 누워 있는 경우 추진장치 및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착석할 수 있는 성인의 수에 1을 더한 수. 이 경우 누워있는 사람의 크기는 1.8미터×0.47미터로 한다.
2.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좌석배치를 하여 얻어지는 좌석의 수

제32조(구조정의 의장품) 구조정에는 별표 3에 의한 의장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구조정의 의장품의 고정) 제16조의 규정은 구조정의 의장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관 기타 구명기구

제34조(구명부환) ① 구명부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담수 중에서 14.5킬로그램의 철편을 달고서 24시간이상 떠 있을 수 있을 것
2. 바깥 둘레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손잡이 줄이 부착되어 있을 것
 - 가. 직경은 9.5밀리미터 이상, 길이는 구명부환 외경의 4배 이상일 것
 - 나. 구명부환의 4개소에 같은 간격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
3. 18미터(제1종선 또는 제3종선에 비치하는 구명부환에 있어서는 30미터)의 높이(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의 높이가 18미터를 넘는 장소에 적재되는 구명부환에 대하여는 그 적재장소의 높이)에서 물위에 투하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할 것
4. 내경은 40센티미터 이상, 외경은 80센티미터 이하일 것
5. 무게는 2.5킬로그램 이상일 것. 다만, 긴급이탈장치에 사용되는 구명부환(자기발연신호 및 자기점화등이 연결된 것)의 무게는 4킬로그램 이상일 것 <개정 2010. 5. 3.><개정 2016. 3. 9>
6. 2초간 화염속을 통과한 후 연소 또는 용해가 계속되지 아니할 것
7. 제10조제1호 및 제4호의 요건

② 구명부환은 고흥콜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재료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등심초·콜크부스러기·입상콜크 또는 그 밖의 부스러기물질을 집어넣은 것이거나 팽창식공기실로서 부력을 얻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구명조끼) ① 구명조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1. 구명조끼는 2초간 화염에 완전히 휩싸인 후 불타거나 계속 녹지 않을 것<개정 2014. 12. 24.>
2. 구명조끼는 다음에 따라서 세 종류의 크기가 제공되어야 하며, 구명조끼가 두 종류의 인접한 크기 범위의 요건을 전적으로 만족하면 구명조끼에는 두 종류의 크기 범위를 표시할 수 있으며, 다음에 따라서 무게 또는 키로 표기되거나, 무게 및 키 모두로 표시될 것<개정 2014. 12. 24.>

표식	유아	어린이	성인
몸무게 (kg)	150이하	150이상 430이하	430이상
키 (cm)	1000이하	1000이상 1550이하	1550이상

3. 만일 비치된 성인용 구명조끼가 몸무게 140킬로그램 및 가슴둘레 1,750밀리미터까지의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설계되지 아니하면, 그러한 인원에게 착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속품을 갖출 것<개정 2014. 12. 24.>
4. 구명조끼의 수중 성능시험은 적합한 크기의 기준시험장비(RTD, Reference Test Device)와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평가될 것<개정 2014. 12. 24.><개정 2016. 3. 9>
5. 성인용 구명조끼는 다음과 같이 제작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 가. 구명조끼에 대하여 전혀 익숙하지 못한 사람의 75퍼센트 이상이 도움, 지침 또는 사전 시범 없이 1분 이내에 정확히 입을 수 있을 것<개정 2014. 12. 24.>
 - 나. 착용 시범 후에는 모든 사람이 도움 없이 1분 이내에 정확히 착용할 수 있을 것
 - 다. 한쪽 방향으로만 또는 안쪽에서 밖으로 명백히 착용할 수 있으며, 잘못 착용되어지더라도 착용자에게 상해를 주지 아니할 것
 - 라. 착용자에게 구명조끼를 고정하는 방법은 매듭을 묶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폐위 수단(means of close)을 가질 것
 - 마. 착용하기에 편안할 것<개정 2014. 12. 24.>
 - 바. 착용자가 구명조끼를 잡은 상태에서 4.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수면으로 뛰어 들거나, 손으로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1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수면으로 뛰어 들더라도 부상당하지 아니하고 구명조끼가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아니할 것<개정 2014. 12. 24.>
6. 구명조끼를 착용한 최소 12명 이상의 인원 에 대하여 기구의 권고에 따른 시험시 잔잔한 청수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기에 충분한 부력 및 복원성을 가질 것<개정 2016. 3. 9>
 - 가. 탈진되었거나 의식불명인 사람의 입에 대한 수면으로부터의 평균높이는 성인용 기준시험장비 시험결과에 따라 제공된 평균높이에서 10밀리미터를 뺀 값 이상일 것<개정 2016. 3. 9>
 - 나. 물속에 엎드린 자세의 의식불명인 사람의 입을 물 밖으로 향하도록 뒤집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은 기준시험장비 시험결과에 따라 제공된 평균시간에 1초를 더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뒤집히지 않은 사람의 숫자는 기준시험장비 시험결과 뒤집히지 않은 사람의 숫자를 초과하지 않을 것<개정 2014. 12. 24.><개정 2016. 3. 9>
 - 다. 수직위치로부터 뒤쪽으로 기울어지는 상체(torso)의 평균각도는 기준시험장비 시험결과에 따라 제공된 평균각도에서 10도를 뺀 값 이상일 것<개정 2016. 3. 9>

- 라. 수평면으로부터 머리를 들어 올리도록 하는 평균안면각도(face plane angle)는 기준시험장비 시험결과에 따라 제공된 평균안면각도에서 10도를 뺀 값 이상일 것<개정 2016. 3. 9>
- 마. 태아처럼 구부린 부유자세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서 얼굴이 위로 향하는 안정된 자세로 돌아오게 하는 시험의 결과는 최소한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 기준시험장비 시험결과와 같을 것<개정 2016. 3. 9>
7. 성인용 구명조끼는 이를 착용한 사람이 짧은 거리를 헤엄쳐서 생존정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4. 12. 24.>
8. 유아용 또는 어린이용 구명조끼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성인용 구명조끼와 동일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개정 2014. 12. 24.>
- 가. 유아 또는 체구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에는 착용을 도와주는 것이 허용된다.<개정 2016. 3. 9>
- 나. 성인용 기준시험장비 대신에 적절한 어린이용 또는 유아용 기준시험장비가 사용되어야 한다.<개정 2016. 3. 9>
- 다. 생존정에 승정하기 위하여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착용자의 움직임이 적절한 크기의 기준시험장비에 의한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아니 된다.
- 라. 유아용에 대한 점프 및 낙하(jump and drop) 시험은 생략되어야 한다.<신설 2016. 3. 9>
- 마. 어린이용의 경우 시험대상자 9명 중 5명은 점프 및 낙하시험을 실시한다.<신설 2016. 3. 9>
- 바. 마목의 시험 수행 시 시험대상을 마네킹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6. 3. 9>
9. 견현 및 자동복원성능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아용 구명조끼 요건은 필요시 다음을 수행하도록 완화될 수 있다.<개정 2014. 12. 24.>
- 가. 보호자에 의한 유아의 구조를 용이하게 할 것
- 나. 유아를 보호자에게 결박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유아를 보호자 가까이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
- 다. 유아가 물기 없이 호흡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 라. 탈출 동안에 유아를 충돌 및 동요로부터 보호할 것
- 마. 보호자가 유아의 열손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허용할 것
10. 유아용 또는 어린이용 구명조끼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할 것<개정 2014. 12. 24.>
- 가. 제1항제2호에 따른 크기 범위
- 나. "유아용 구명조끼" 또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표시<개정 2014. 12. 24.>
11. 구명조끼는 청수에 24시간 잠긴 후 부력이 5% 이상 감소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4.>
12. 구명조끼의 부양성은 입상 재료의 사용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2. 24.>
13. 각 구명조끼에는 제46조에 따른 구명조끼등을 고정시키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제1항제5호바목 및 제46조제1항제2호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2013. 9. 5. 개정><개정 2014. 12. 24.>
14. 각 구명조끼에는 끈으로 연결된 호각이 단단히 부착되어야 한다.<개정 2014. 12. 24.>
15. 각 구명조끼등 및 호각은 이들의 결합이 성능을 저하시키지 아니 하도록 선택되고 구명조끼에 고정되어야 한다.<개정 2014. 12. 24.>
16. 구명조끼는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이 착용한 구명조끼에 부착시킬 수 있도록 방출가능한 부양성 끈 또는 다른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 12. 24.>
17. 구명조끼는 구조자가 착용자를 물속에서 생존정 또는 구조정으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 12. 24.>

18. 제10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2013. 9. 5. 신설>

19. 섭씨 영하 15도부터 섭씨 40도까지의 대기온도에서 작동될 수 있을 것<2013. 9. 5. 신설>

② 팽창에 의하여 부력이 얻어지는 구명조끼는 2개 이상의 분리된 구획을 가져야 하고, 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4.>

1. 침수시 자동적으로 팽창하고, 한 번의 수동 동작에 의하여 팽창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입으로 불어 팽창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어떤 한 구획의 부력이 상실되었을 때, 제1항 제5호부터 제7항까지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동적인 기계조작으로 팽창된 후 제1항제11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3.]

제36조(방수복) ① 방수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방수복은 방수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연관된 옷의 착용을 고려하여, 2분 내에 외부의 도움 없이 방수복을 펴서 입을 수 있을 것. 이경우 방수복이 구명조끼와 함께 입는 것이라면 구명조끼 착용을 고려하고, 설비된 경우라면 입으로 팽창시킬 수 있는 공기실의 팽창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개정 2014. 12. 24.>

나. 2초간 화염에 완전히 휩싸였을 때 불에 타거나 계속 녹지 아니할 것

다. 얼굴을 제외한 몸 전체를 덮을 것. 다만, 방수복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는 별도의 장갑에 의하여 양손을 덮는 것은 인정될 수 있다.

라. 방수복의 다리 부분의 공기를 최소화 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

마. 4.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물속으로 뛰어 내린 후에도 물이 옷 속으로 지나치게 스며들지 아니할 것

2. 방수복 자체로, 또는 필요시 구명조끼와 함께 착용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잔잔한 청수에서 충분한 부력과 복원성을 가져야 한다.<개정 2014. 12. 24.>

가. 지치거나 의식을 잃은 사람의 입을 물로부터 120밀리미터 이상 들어 올릴 것

나. 착용자를 5초 이내에 옆드린 자세에서 얼굴을 위로 향한 누운 자세로 복원시킬 것

3. 방수복을 입었을 때, 그리고 구명조끼와 함께 입는 것이라면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4.>

가. 수직사다리를 최소한 5미터를 오르내릴 수 있을 것

나. 퇴선시에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다. 4.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물속으로 뛰어 들 때 방수복 또는 이의 부착품에 손상이 생기거나 벗겨지지 아니하여야 하고 착용자가 부상당하지 아니할 것

라. 착용한 사람이 짧은 거리를 헤엄쳐서 구명정에 오를 수 있을 것

4. 부력체를 가지고 있으며 구명조끼 없이 착용하도록 만들어진 방수복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4.>

가. 제46조의 요건에 적합한 표시등 및 제35조제1항제14호에 규정된 호각을 부착할 것

나.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이 착용한 방수복에 고정시키기 위해 방출 가능한 투하할 수 있는 부양성 줄 또는 다른 수단을 갖출 것

다. 구조자가 착용자를 물로부터 생존정 또는 구조정으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갖출 것

5. 방수복을 구명조끼와 함께 착용하는 경우에는, 방수복 위에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런 방수복을 착용한 사람은 도움 없이 구명조끼를 입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방수복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착용하여야 함을 명시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6. 방수복은 청수에 24시간 잠긴 후 부력이 5% 이상 감소되지 아니 하여야 하며 부력은 느슨한 입상 재료(粒狀 材料, loose granulated materials)의 사용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7. 제10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2013. 9. 5. 신설>
8. 섭씨 영하 15도부터 섭씨 40도까지의 대기온도에서 작동될 수 있을 것<2013. 9. 5. 신설>

② 방수복의 보온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고유의 방열성을 가지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진 방수복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따뜻한 옷과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는 지시문을 표시할 것

나. 따뜻한 옷과 함께 착용하거나 구명조끼와 함께 착용할 때(방수복이 구명조끼와 함께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착용자가 4.5미터의 높이로부터 물속으로 뛰어든 다음에 섭씨 5도의 온도에서 조용히 유동하는 물속에서 한 시간 동안 있었을 때, 착용자의 체온이 섭씨 2도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의 충분한 보온성을 보장하도록 제작될 것
<개정 2014. 12. 24.>

2. 고유의 방열성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진 방수복은 이것을 입었을 때 또는 구명조끼와 함께 입었을 때(구명조끼와 함께 입도록 제작된 것인 경우에 한한다) 착용자가 4.5미터의 높이로부터 물속으로 뛰어든 다음에 섭씨 0도에서 섭씨 2도의 온도에서 조용히 유동하는 물에서 6시간동안 있었을 때 체온이 섭씨 2도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의 충분한 보온성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14. 12. 24.>

[전문개정 2010. 5. 3.]

제37조(노출보호복) ① 노출보호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노출보호복은 방수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70뉴턴 이상의 고유부력을 가질 것<개정 2014. 12. 24.>

나. 구조 및 탈출 작업동안 열충격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질 것

다. 전신을 감쌀 수 있으며 손과 머리는 별도의 장갑 및 모자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장갑 및 모자는 보호복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있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을 제외하고 감쌀 수 있다.

라. 도움이 없이 2분 이내에 풀어서 입을 수 있을 것

마. 2초 동안 화염에 완전히 휩싸인 후 타거나 계속 녹지 아니할 것

바. 휴대용 VHF 무선전화기를 위한 호주머니를 갖추고 있을 것

사. 최소 120도의 측면시야를 가질 것

2. 노출보호복은 이를 착용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족하여야 한다.

가. 최소 5미터 길이의 수직 사다리를 오르내릴 수 있을 것

나. 발이 먼저 수면에 닿도록 하여 4.5 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물속에 뛰어 내렸을 때 노출보호복 또는 이의 부착물이 손상을 입거나 벗겨지지 않고 착용자가 부상당하지 않을 것

다. 물속에서 최소 25미터를 헤엄쳐서 생존정에 탑승할 수 있을 것

라. 도움 없이 구명조끼를 입을 수 있을 것<개정 2014. 12. 24.>

마. 퇴선과 관련된 모든 임무를 행하며 남을 도와고 구조정을 운전할 수 있을 것

3. 노출보호복에는 제46조의 요건에 적합한 표시등이 부착되어야 하며 제35조제1항제14호에서 규정한 호각이 부착되어야 한다.

4. 제10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2013. 9. 5. 신설>

5. 섭씨 영하 15도부터 섭씨 40도까지의 대기온도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2013. 9. 5. 신설>

② 노출보호복은 다음의 보온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노출보호복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고유의 방열성을 가지지 않은 재료로 제작되었다면, 반드시 따뜻한 의복과 함께 착용하여야 된다는 지시문을 표시할 것

나. 지시문에 따라 착용했을 때, 착용자가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한번 물에 뛰어들면 다음, 섭씨 5도의 조용히 유동하는 물에서 착용한 상태일 때에, 최초 30분 이후에 착용자의 체온이 시간당 섭씨 1.5도를 초과하는 비율로 떨어지지 않고 보온복이 충분한 보온을 계속 유지하도록 제조될 것

③ 노출보호복의 복원성 요건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청수에서 이 절의 요건에 적합한 노출보호복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5초 이내에 얼굴을 아래로 한 자세에서 얼굴을 위로 한 자세로 몸을 돌릴 수 있어야 하며 얼굴을 위로 한 자세로 안정되어야 한다.

2. 노출보호복은 적당한 해상상태에서 착용자의 얼굴을 수면으로 향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3.]

제38조(보온구) 보온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013. 9. 5.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보온성을 가질 것

가. 7800W/(㎡K)이하의 열전도율이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 있을 것

나. 착용자의 몸에서 대류 및 증발에 의한 열손실이 감소되는 구조일 것

2. 아무 도움 없이 풀어서 쉽게 착용할 수 있을 것

3. 안면을 제외한 몸 전체를 씻을 수 있을 것

4. 착용한 채로 헤엄칠 수 없는 것은 수중에서 2분 이내에 벗을 수 있을 것

5. 섭씨 영하30도 내지 섭씨 20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6. 제10조제1호 및 제4호의 요건

제39조(작업용구명) ① 작업용구명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적절한 공작방법 및 재료로 제작되어 있을 것

2. 가볍고 부피가 크지 아니하며, 유연하여 착용자의 몸에 잘 맞는 구조일 것

3. 착용한 상태에서 발밑의 시계를 현저하게 방해받지 아니하고 작업등을 할 수 있을 것

4. 착용방법이 혼돈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 있을 것

5. 담수 중에서 7.5킬로그램의 철편을 달고서 24시간이상 떠 있을 수 있을 것
 6. 수중에서 안면을 수면상에 유지할 수 있을 것
 7. 눈에 띄기 쉬운 색깔일 것
 8. 통상의 환경조건에서나 기름 또는 유제품에 의하여 급격한 강도열화 및 부력변화가 없을 것
 9. 내식성 재료로 만든 호각이 끈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
- ② 팽창에 의하여 부력이 얻어지는 작업용구명은 제1항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인체에 대하여 무해한 기체를 사용하여 물에 잠기면 신속하게 자동적으로 팽창하는 것으로서 비 또는 물벼락 등에 의하여 팽창되지 아니할 것
 2. 착용한 상태에서 입으로 기체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급기구가 부착되어 있을 것
 3. 충전장치는 적절히 보호되어 있을 것
- ③ 고품부체 및 팽창된 기체주머니에 의하여 부력이 얻어지는 작업용구명은 제1항의 요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기체주머니에 기체를 넣지 아니한 상태로 담수중에서 6킬로그램의 철편을 달고서 24시간이상 떠 있을 수 있을 것
 2. 기체주머니에 기체를 넣지 아니한 상태로 수중에서 입으로 급기구에 기체를 불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안면을 수면위로 유지할 수 있을 것
 3. 착용한 상태에서 신속·용이하게 입으로 기체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급기구가 부착되어 있을 것

제40조(구명출발사기) ① 구명출발사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구명줄을 정확하게 230미터이상 나가게 할 수 있을 것
 2. 4개 이상의 발사체 및 4개 이상의 구명줄이 비치되어 있을 것
 3. 취급 및 휴대하기가 쉬우며 또한 사용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것일 것
 4. 발사체는 수밀통 안에 수납되어 있을 것
 5. 구명줄·점화장치 및 제4호의 통은 풍우밀의 용기에 수납되어 있을 것
 6. 사용방법이 제5호의 용기에 간결하게 적혀 있거나 그림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표시에 대신하여 사용방법에 관한 안내서를 비치할 수 있다.
 7. 제10조제1호의 요건
- ② 구명출발사기에 사용하는 구명줄은 합성섬유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인장력이 2,000뉴턴 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구명뗏목지원정) ① 구명뗏목 운항선원이 승선하지 아니하는 구명뗏목을 지원하기 위한 정(이하 "구명뗏목지원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해상에 있어서 충분한 복원성과 강도를 가지고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경우에도 충분한 견현을 가질 것
2. 외부의 길이는 8.5미터이하일 것
3.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경우 평수에서의 전진속력이 4노트이상일 것
4. 모든 상태에서 쉽게 시동할 수 있는 원동기가 부착되어 있을 것

5. 타 및 조타장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비치되어 있을 것
6. 후진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7. 프로펠러에 의하여 조난자 또는 구명뗏목이 상해 또는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프로펠러의 주위에 적절한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8. 해당 지원정의 속력으로 12시간이상의 연속운전에 필요한 연료를 저장할 수 있을 것
9. 이동식의 연료유탱크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료유탱크를 정체에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10. 바깥둘레의 적절한 곳에 구명줄이 부착되어 있을 것
11. 구조 및 모양은 해상에서 조난자의 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기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접촉에 의한 손상을 구명뗏목에 주지 아니하는 것일 것
12.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하고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에 의하여 안전하게 진수될 수 있을 것
13. 구명뗏목을 예인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14. 정원은 4인 이상일 것

② 팽창에 의하여 부력이 얻어지는 구명뗏목지원정(이하 "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해상에서의 심한 마손에 견딜 수 있는 포대 그 밖의 컨테이너에 격납된 것으로서 신속하게 팽창되고, 조립할 수 있을 것
2. 독립된 공기실로 구획하거나 기타 이와 동등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명뗏목지원정이 손상 또는 그의 일부가 팽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승선자를 물 위에 떠있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력의 여유 및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3. 인체에 대하여 무해한 기체를 사용하고 줄을 잡아당기거나 그 밖에 이와 같이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팽창될 수 있고, 고압가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합한 것) 및 충전장치는 공기실의 바깥측에 격납되고, 항상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
4.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와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5. 선상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구명뗏목지원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
6.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재료의 것일 것<개정 2008. 7. 18.>

③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구명뗏목지원정을 비치하는 경우 그 구명뗏목지원정에 대하여는 제1항제12호와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구명뗏목지원정의 정원) ① 구명뗏목지원정의 정원은 좌석설비에 상당하는 인원(성인이 앉은 때에 지원활동 및 진수장치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수의 인원을 말한다) 이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구명뗏목지원정의 부력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으로 한다.<개정 2008. 7. 1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의 정원은 팽창한 상태에 있어서의 밑바닥(노 젓는 자리가 점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을 0.372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이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구명뗏목지원정의 부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로 한다.<개정 2008. 7. 18.>

제43조(구명뗏목지원정의 의장품) 구명뗏목지원정에는 별표 4에 의한 의장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절 신호장치

제44조(자기점화등) ① 발염식자기점화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물 위에 투하하는 경우 즉시 자동적으로 발광되고 풍랑 중에서도 똑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2. 상방의 모든 방향으로 2칸델라이상의 흰색의 빛을 2시간이상 연속하여 발할 수 있을 것
3. 18미터(제1종선 또는 제3종선에 비치하는 자기점화등에 있어서는 30미터)의 높이(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의 높이가 18미터를 넘는 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자기점화등에 대하여는 그 적재장소의 높이)에서 물위에 투하하는 경우 그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할 것
4. 점화시 위험이 없고, 폭발성이 없으며 불시에 발화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5. 구명부환에 연결할 수 있을 것
6.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② 전지식자기점화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섬광식의 자기점화등은 2칸델라이상의 흰색 섬광을 일정한 간격으로 매분 50회 이상 70회 이하 발할 수 있을 것
2. 완전히 수밀이 되고 인화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

제45조(자기발연신호) 자기발연신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점화하여 물 위에 투하하는 경우 물 위에 부유하면서 충분한 양의 매우 보기 쉬운 색깔(오렌지색을 표준으로 한다)의 연기를 15분 이상 연속하여 발할 수 있을 것
2. 수중에 10초간 완전히 잠긴 후에도 계속 연기를 발할 수 있을 것
3. 제4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
4. 유효기간이 유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신설 2009. 4. 10>

제46조(구명조끼등) ① 구명조끼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4. 12. 24.>

1. 상방의 모든 방향으로 0.75 칸델라이상의 흰색의 빛을 8시간이상 연속하여 발할 수 있을 것
2. 구명조끼에 연결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가능한 한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4. 12. 24.>
3.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② 섬광식의 구명조끼등은 제1항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4. 12. 24.>

1. 상방의 모든 방향으로 0.75 칸델라이상의 흰색 섬광을 일정한 간격으로 매분 50회 이상 70회 이하 발할 수 있을 것
2. 수동의 스위치를 부착하고 있을 것

제47조(로켓낙하산신호) 로켓낙하산신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로켓작용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승하여 높이 300미터이상의 장소에서 펴지고 또한 점화되며, 매초 5미터이하의 속도로 낙하하면서 3만칸델라 이상의 적색성화를 40초 이상 발할 수 있을 것
2. 연소중 낙하산 및 부속품이 손상되지 아니할 것

3. 점화를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4. 점화시 위험이 없고, 불시에 발화하지 아니하는 품질의 것일 것
5. 단총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사되는 것으로서 사용시 위험이 생기지 아니할 것
6. 방습성 포장재료로 밀봉되어 있을 것
7. 사용방법이 신호본체에 간결하게 적혀 있거나 그림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을 것
8. 제10조제1호 및 제45조제4호의 요건<개정 2007. 4. 10>

제48조(신호홍염) 신호홍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1만5천칸델라 이상의 홍색염을 1분 이상 연속하여 발할 수 있을 것
2. 수중 100밀리미터 하에 10초간 완전히 잠긴 후에도 계속 작동할 수 있을 것
3. 제47조제3호·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건

제49조(발연부신호) 발연부신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점화하여 물 위에 투하하는 경우 물 위에 부유하면서 충분한 양의 대단히 잘 보이는 색(오렌지색을 표준으로 한다)의 연기를 3분 이상 연속하여 발할 수 있을 것
2.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 제47조제4호·제6호 및 제7호, 제45조제4호와 제48조 제2호의 요건<개정 2009. 4. 10>

제50조(수밀전기등) 수밀전기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모르스부호의 신호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 가. 두꺼운 장갑을 끼고 1분간에 180회 이상의 모르스부호의 점멸을 쉽게 할 수 있는 적절한 형상 및 구조일 것
 - 나. 섭씨 70도 및 섭씨 영하10도에서 수밀전기등의 전구에 부하를 걸어 전지의 전압 및 주전류를 측정하여 섭씨 영하10도의 상태의 값이 섭씨 70도의 상태의 값의 80퍼센트 이상일 것
 - 다. 전구의 정격전압으로 점등하는 경우에 단선하기까지의 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것
 - 라. 스위치의 개폐를 매분 20회의 비율로 10,000회 연속하여 행한 경우 이상이 없을 것
 - 마. 각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이 10메그옴 이상일 것
2. 수중 1미터의 위치에 24시간 담겨 있는 경우 내부가 침수되지 아니하고 2미터의 높이에서 축심을 수평으로 하여 목판 위에 떨어뜨린 경우 그 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할 것
3. 사광은 3미터 떨어진 면을 지름 25센티미터의 원형으로 비치는 정도로 지향성이 있고 축광도가 100칸델라이상일 것
4. 매다는 끈이 부착되어 있을 것

제51조(일광신호용거울) 일광신호용거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평평한 양면경으로서 유효반사면적이 약 11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2. 거울의 중앙에 지름 5밀리미터의 구멍이 있을 것
3. 2미터의 높이에서 목판 위에 떨어뜨린 경우 손상되지 아니할 것
4. 제50조제4호의 요건

제52조(탐조등) 탐조등은 수평방향으로 6도의 범위 및 수평면의 상하로 각각 3도의 범위에 있어서 2500칸델라이상의 빛을 3시간이상 연속하여 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3조(역반사재) 역반사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빛을 광원방향으로 효과적으로 반사할 것
2. 구명설비에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고, 부착 후에는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구명설비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일 것
3. 제10조제4호의 요건

제54조(선상통신장치) ① 선상통신장치는 소집장소, 승정장소, 선교 및 기타 지휘장소(선교이외의 퇴선 등의 지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무선실(지휘장소에서 떨어져 있는 것에 한한다), 화재탐지장치·자동스프링클러장치의 표시반 또는 소방설비의 제어장치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장소 상호간을 교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상통신장치는 고정식, 휴대식 또는 이들을 혼합한 것 중의 어느 것이어야 하며, 모든 상호간에서 동시에 통신이 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55조(경보장치) 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 18.>

1. 선박의 기적 또는 사이렌에 추가하여 전기식 벨, 경적 기타 이와 동등한 경보장치에 의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을 것<개정 2002. 1. 18>
2. 선교 및 그 밖의 지휘장소(기적을 제외한다)에서 작동할 수 있을 것
3. <삭제 2009. 4. 10>
4. 수동에 의하여 정지시키거나 선내방송장치에 의한 통보로 일시적으로 중단될 때까지 연속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을 것
5. 선내의 모든 거주구역 및 승무원이 통상 작업하는 선내 장소의 내부 및 외부에서의 최소음압은 80데시벨(A)일 것. 다만, 통상의 항행상태에서 발생하는 주위소음보다 10데시벨(A) 높아야 한다. <개정 2009. 4. 10>
6. <삭제 2009. 4. 10>
7. 침실 및 승무원실의 욕실에서의 최소음압은 75데시벨(A)일 것. 다만, 주위소음보다 10데시벨(A) 높아야 한다.

제56조(선내방송장치) 선내방송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소집장소, 선교 및 지휘장소에서 선원 또는 여객 혹은 이들 모두가 있는 장소로 메시지를 방송할 수 있는 확성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청취자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도록 청각적인 한계상태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
3. 허가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4. 통상의 항행상태에서의 최소음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 가. 내부장소에 있어서는 75데시벨(A). 다만, 음파간섭기준보다 20데시벨(A) 높아야 한다.
 - 나. 외부장소에 있어서는 80데시벨(A). 다만, 음파간섭기준보다 20데시벨(A) 높아야 한다.

제4절 진수장치 등

제1관 진수장치

제57조(구명정진수장치) ① 자유강하식구명정이외의 구명정을 비치하는 구명정진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대빛·줄·활차 기타 장치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을 것
 2.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인원 및 의장품을 만제한 구명정의 진출 및 강하(진출위치에서만 승정할 수 있는 구명정을 비치하는 구명정진수장치에 있어서는 진수요원만을 배치한 구명정의 진출과 인원 및 의장품을 만제한 구명정의 강하를 말한다)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 가. 구명정에 인원이 탑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 나. 대빛 및 윈치의 구조부재의 강도는 최대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사용재료의 최대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4.5이상일 것
 - 다. 폴, 서스펜션체인, 링크 및 활차 등의 강도는 최대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사용재료의 최대강도(폴에 있어서는 그 절단하중)에 대한 안전계수가 6이상일 것
 - 라. 강도계산은 다음에 의할 것
 - (1) 인원에 의하여 부하되는 힘은 1인에 대하여 740뉴턴으로 한다.
 - (2) 구명정의 중심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명정의 중앙으로 한다.
 - (3) 마찰손실은 시브에 대하여는 각 5퍼센트, 롤러에 대하여는 7퍼센트로 한다.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사용하는 것은 각각 2퍼센트 또는 3퍼센트로 한다.
 - 마. 대빛 및 활차의 중요부분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강재 또는 화학성분 및 기계적성질이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 것일 것<개정 2016. 3. 9>
 - 바. 대빛의 회전부에는 비철금속제부시가 삽입되거나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삽입되어야 하며, 또한 윤활조치가 되어 있을 것
 - 사. 대빛 및 그 부속품(윈치를 제외한다)은 최대작동하중의 2.2배의 하중시험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개정 2019. 11. 20>
 - 아. 윈치브레이크는 다음 시험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 (1) 최대작동하중의 1.5배 이상의 정적하중시험
 - (2) 최대강하속도에서 최대작동하중의 1.1배 이상의 동적하중시험
 - 자. 인원 및 의장품을 만제한 구명정의 강하속도는 다음 조건식에 적합한 것일 것

$$S \geq 0.4 + 0.02H$$
 이 식에서
 S는 강하속도(m/s)
 H는 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 대빛헤드까지의 높이(미터)
 - 차. 의장품만을 적재한 구명정의 강하속도는 자목의 산식에 의한 값의 70퍼센트 이상일 것
3. 선박의 전진속력이 5노트인 경우에도 구명정을 진수시킬 수 있을 것(총톤수 2만톤 이상의 제3종선에 비치하는 것에 한한다)
 4. 선박의 동력원과는 독립된 기계력 또는 중력에 의하여 작동될 것
 5. 구명정의 내부에서 혼자서도 진수를 위한 조작을 할 수 있을 것(부분폐형구명정에 사용되는 구명정진수장치를 제외한다)
 6. 갑판상에서 혼자서도 진수 및 회수를 위한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조작위치는 구명정을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7. 착빙상태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 것
8. 구명정에 신속히 승정하는데 방해되지 아닐 것
9. 풀은 꼬이지 아니하는 내식성장제로프일 것
10. 구명정을 선측으로 끌어당겨 놓고 안전하게 승정할 수 있도록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진출위치에서 승정하는 구명정에 사용되는 구명정진수장치에 한한다)
11. 2이상의 구명줄을 가지는 대빗스팬이 설치되어 있을 것(부분폐형구명정에 사용되는 구명정진수장치에 한한다). 이 경우 구명줄은 적절한 간격으로 매듭이 설치되어 있고 대빗부에서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부착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 풀 및 구명줄은 선박의 최소항해흘수에서 어느 쪽으로든지 20도 횡경사 및 10도 종경사하는 경우에도 수면에 달하는 길이에 드림 3권이상의 길이를 더한 길이를 가지는 것일 것
13. 구명정을 회수하기 위한 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동력기계장치 및 효과적인 수동장치가 되어 있을 것
 - 가. 동력기계장치는 인원 2인 및 의장품을 적재한 구명정을 회수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일 것
 - 나. 수동장치는 의장품을 적재한 구명정을 회수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일 것
 - 다. 수동장치의 핸들은 구명정의 강하 또는 동력에 의하여 회수하는 경우 회전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라. 수동장치의 핸들에 걸리는 힘은 조작원 1인당 150뉴턴 이하일 것
14. 복식드럼의 윈치가 부착되는 경우 각각의 풀은 같은 속도로 풀려 나오고 감길 수 있는 것일 것
15. 대빗이 동력에 의한 로프의 작용에 의하여 제자리에 올려 놓여지는 경우에는 로프 또는 대빗이 정지위치에 달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동력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모터에 과부하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6. 인원 및 의장품을 만제한 구명정을 임의의 위치에서 완전히 정지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17. 최소한의 일상정비만 필요하도록 제작된 것으로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정비될 수 있는 것일 것
18. 정비를 위하여 하중이탈장치를 분리하는 경우 구명정을 매달 수 있는 장치가 비치된 것일 것. <신설 2009. 4. 10>

② 자유강하식구명정진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진수램프 및 보조진수장치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을 것
2. 진수램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 가.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종경사의 경우에도 최대진수높이로부터 인원 및 의장품을 만제한 구명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위에 내릴 수 있을 것
 - 나. 진수시 화재의 위험이 있는 불꽃을 발생하지 아닐 것
 - 다. 구명정이 불시에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 라.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요건
3. 보조진수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 가. 선박이 5도 횡경사 및 2도 종경사를 한 경우에도 인원 및 의장품을 만제한 구명정을 안전하게 물위에 내릴 수 있을 것
 - 나. 구명정을 내리기 위한 동력을 선박의 전원으로 부터 급전하는 경우 해당 동력은 선박의 상용전원이외에 예비의 독립전원으로 부터 도 급전할 수 있는 것일 것

- 다. 폴에 장력이 걸리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구명정을 이탈시킬 수 있는 이탈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 라. 구명정을 회수하기 위한 동력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마. 제1항제1호·제6호·제9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의 요건

4. 제1항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7호의 요건

제58조(구명뗏목진수장치) 구명뗏목진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뗏목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 위에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진수장치의 재료·강도등의 요건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 규정 중 "구명정"을 "구명뗏목"으로 본다.
2. 구명뗏목의 내부 및 갑판상에서 1인으로 진수를 위한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구명뗏목의 진출은 수동에 의할 수 있으며, 핸들에 걸리는 힘은 조작원 1인당 150뉴턴 이하이어야 한다.
3. 구명뗏목을 선측으로 끌어당겨 놓고 인원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
4. 구명뗏목에 승정하는데 방해되지 아니할 것
5.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뗏목을 내리는 상태에서 임의의 위치에 정지시켜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6. 구명뗏목을 진수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7. 폴은 선박이 최소항해흘수에서 어느 쪽이든지 20도 횡경사 및 10도 종경사하는 경우에도 수면에 닿는 데 충분한 길이를 가지는 것일 것
8. 폴의 하부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이탈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 가. 구명뗏목의 진수 후 당해 구명뗏목 내에서 이탈시킬 수 있을 것
 - 나. 하중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 것
 - 다. 하중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불시에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 라. 이탈장치의 힘이 걸리는 부분은 그 사용재료의 최대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6이상일 것. 이 경우 주철과 같은 취약성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제57조제1항제1호·제4호·제7호 및 제9호 및 제17호의 요건

제59조(구명부기진수장치) 구명부기진수장치는 구명부기를 인력으로 들어올리지 아니하고 적재장소로부터 쉽고 빠르게 진수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60조(구조정진수장치) ① 일반구조정진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조정의 진출 및 강하(진출위치에서만 승정할 수 있는 구조정진수장치에 있어서는 진수요원만을 배치한 구조정의 진출과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조정의 강하를 말한다)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하며, 진수장치의 재료·강도 등의 요건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 중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
2. 선박의 전진속력이 5노트인 경우에도 구조정을 진수시킬 수 있을 것
3. 구조정의 내부에서 1인으로 진수를 위한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4. 구조정으로의 인원의 신속한 승정 및 들것의 운반에 지장이 없을 것
 5. 구조정을 선측에 끌어당겨 안전하게 승정할 수 있도록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진출위치에서 승정하는 구조정진수장치에 한한다)
 6.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조정을 매초 0.3미터이상의 속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기계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
 7. 구조정을 회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8.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조정을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9. 제57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제14호·제15호 및 제17호와 제58조제7호의 요건. 이 경우 제57조의 준용 규정 중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본다.
 10. 구조정 진수 설비에는 무거운 폴 블록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 악천후용 회수 로프를 선박에 비치할 것. <신설 2009. 4. 10>
- ② 고속구조정진수장치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진수 및 회수시 충격 및 진동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
 2. 폴을 자동적으로 고속으로 감을 수 있을 것
 3.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제동장치의 급격한 제동에 의한 응력은 진수장치 작동부하의 0.5배 이하일 것. <개정 2009. 4. 10>
 4. 고속구조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신설 2009. 4. 10>
 - 가.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에서 강하 속도는 1 m/s 이하일 것
 - 나. 제60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승정원 6명과 의장품을 탑재한 고속구조정을 0.8m/s 이상의 속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기계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
 - 다. 제14조에 따라 최대 승정인원이 승선한 상태에서 고속 구조정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

- 제61조(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 ①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뗏목지원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 위에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진수장치의 재료·강도 등의 요건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명정"을 "구명뗏목지원정"으로 본다.
 2. 인력에 의하여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구명뗏목지원정을 선측으로 끌어당겨 안전하게 승정할 수 있도록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
 4. 2이상의 구명줄을 가지는 대빗스팬이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구명줄은 적절한 간격으로 매듭이 설치되어 있고 대빗정부에서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부착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폴의 하부에 동시에 작동하는 적절한 이탈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구명뗏목지원정에 제10조제34호의 요건에 적합한 이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의 요건
- ② 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8조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58조의 준용규정 중 "구명뗏목"을 "구명뗏목지원정"으로 본다.

제2관 탑승장치

제62조(탑승용사다리) 탑승용사다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물위에 떠 있는 구명정·구명뗏목 또는 구조정에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을 것
2. 선박이 최소항해흘수에서 어느 쪽으로든지 20도 횡경사 및 10도로 종경사하는 경우에도 수면에 닿는 데 충분한 길이를 가질 것
3. 발판 및 사이드로프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것일 것
4. 발판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 가. 길이 48센티미터 이상, 너비 11.5센티미터 이상 및 두께 2.5센티미터 이상(미끄러짐 방지부분을 제외한다)의 것일 것
 - 나. 30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의 같은 간격 및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
 - 다. 발판의 재료는 경질의 목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일 것. 이 경우 목재는 유해한 마디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사이드로프는 원주 65밀리미터 이상의 마닐라로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연결부분이 없는 것일 것

제63조(강하식탑승장치) 강하식탑승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 18>

1.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물위에 떠 있는 구명정·구명뗏목 또는 구조정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 가. 강도는 최대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사용재료의 인장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기실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3, 그 밖의 중요구조부재에 있어서는 6이상일 것
 - 나. 강하로는 인원이 안전하게 강하할 수 있는 것일 것
 - 다. 플랫폼 등을 비출 수 있는 조명장치가 되어 있을 것
 - 라. 탑승장치로 옮겨 타는 장소와 연락을 할 수 있을 것
 - 마. 투하조작 개시 후 3분 이내에 사용가능한 상태로 될 수 있을 것
 - 바. 여객선인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화물선인 경우에는 10분 이내에 최대승선인원을 탈출 시킬 수 있을 것

표 1 (구성인원)

(단위 : 명)

연 령	13세 미만	13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계
남	3	30	2	35
여	2	12	1	15
계	5	42	3	50

표 2 (강하시간)<개정 2008. 7. 18.>

탑승장치의 정원(명)	제1종선	제2종선(카페리선박에 한한다)	제3종선
50	25분	10분	5분
100	12분 30초	5분	2분 30초
150	8분 20초	3분 20초	1분 40초
200	6분 15초	2분 30초	1분 15초
250	5분	2분	-
300	4분 10초	1분 40초	-

- 사. 1인으로 전장하는데 필요한 힘은 300뉴턴 이하일 것
2. 선박이 최소항해흘수에서 어느 쪽으로든지 20도 횡경사한 경우에도 수면에 달하는데 충분한 길이일 것
3. 승정위치에서 1인으로 전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제2종선에 비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구명뗏목의 투하장소와 동일 갑판 상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4. 뷰포트 풍력등급 6에 해당하는 해상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 가. 강하로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
- 나. 플랫폼은 파랑중에 충분한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일 것
5.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6. 해상에서 심한 마손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컨테이너에 격납되어 있을 것
7. 플랫폼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플랫폼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개정 2011. 12. 15.>
- 가. 예정된 하중을 물 위에서 지지할 수 있는 부력을 가질 것. 이 경우 플랫폼상에는 해당 강하식탑승장치 정원의 10퍼센트의 인원 및 플랫폼상에서 승정원을 유도하는 선원(정원 1인당 중량은 82.5킬로그램으로 한다)이 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개정 2016. 3. 9>
- 나. 데드스페이스, 강하 시에 필요한 장소 및 선원이 사용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0.025 \times n$ (제곱미터) 또는 2.5제곱미터 중 큰 것 이상의 면적을 가질 것. 이 경우 n은 강하식탑승장치의 정원으로 한다.
- 다. 동시에 2개 이상의 구명뗏목을 연결할 수 있을 것
- 라. 구명뗏목의 내부 또는 플랫폼에서 1인으로 구명뗏목을 이탈시킬 수 있을 것
- 마. 해상에서 안정성을 가질 것
- 바. 1개의 공기실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에 적합한 튜브가 공기실로 구획되어 있을 것(팽창식 플랫폼에 한한다)
- 사. 플랫폼의 위치를 조정하고 고정할 수 있는 로프 그 밖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 아. 플랫폼에서 뗏목으로 용이하게 옮겨 탈 수 있는 구조일 것
- 자. 제10조제40호의 요건
8. 플랫폼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강하식탑승장치의 강하로와 구명뗏목을 연결할 수 있고 연결된 구명뗏목을 신속히 이탈시킬 수 있는 이탈장치가 강하로의 하부에 부착되어 있을 것<개정 2016. 3. 9>

9. 섭씨 영하30도 내지 섭씨 65도의 온도에서 견딜 수 있고, 충분한 내마모성·내유성 및 내후성이 있는 재료의 것일 것
10. 경사된 강하로가 설치되는 경우 수평선에 대한 강하로의 경사각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 가. 선박이 직립되어 있고 최대경하항행상태에서 떠있는 경우 30도 내지 35도 범위이내일 것
 - 나. 여객선에 있어서는 선박구획기준에 의한 손상시 침수 최종상태에서 55도이내일 것
11. 제57조제1항제7호 및 제17호의 요건
1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어객선에 설치하는 강하식탑승장치에는 생존자가 오르내리기 위한 손잡이 또는 사다리가 설치된 것일 것. 다만, 생존자를 이동시키는 설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9. 4. 10>

제3장 구명설비의 비치수량

제1절 구명기구

제1관 제1종선

제64조(구명정 및 구명뗏목) ① 제1종선에는 다음 각 호의 구명정 및 구명뗏목(제2종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동조부터 제67조까지에서 같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2.>

1. 각현에 최대승선인원의 37.5퍼센트를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2. 각현에 최대승선인원의 12.5퍼센트를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
3. 최대승선인원의 25퍼센트를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뗏목

② 제1항에 따라 카페리어객선에 비치하는 구명뗏목은 자동복원팽창식구명뗏목, 양면팽창식구명뗏목, 자동복원고체식구명뗏목 또는 양면고체식구명뗏목(이하 "자동복원구명뗏목등"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2.><개정 2008. 7. 18.><개정 2014. 12. 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명뗏목은 진수장치용제1종팽창식구명뗏목 또는 진수장치용고체식구명뗏목(이하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의 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 승정장소까지의 높이가 4.5미터미만인 갑판상으로부터 승정하는 구명뗏목
2. 당해 구명뗏목의 정원이 30분 이내에 탑승할 있도록 배치된 강하식탑승장치에 의하여 탑승하는 구명뗏목

제65조(예외 규정) ①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국제항해에 종사하고 선박구획기준 제13장의 규정에 적합한 제1종선에는 다음 각 호의 구명정 및 구명뗏목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1.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구명정
2. 최대승선인원의 70퍼센트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
3. 최대승선인원의 25퍼센트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구명뗏목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명정은 가능한 한 각현에 균등하게 비치되어야 한다.

③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되는 구명뗏목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6조(예외 규정) ①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톤수 500톤 미만의 제1종선으로서 최대승선인원이 200인 미만인 것에는 각현에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구명뗏목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명뗏목이 반대현으로 쉽게 이동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각현에서 사용되는 구명뗏목이 최대승선인원의 150퍼센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추가 구명뗏목(반대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명뗏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명뗏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 1. 18><개정 2007. 11. 22.>

1. 구명뗏목의 무게는 컨테이너 및 의장품을 포함하여 185킬로그램 이하일 것
2. 반대현으로 이동하는데 장애물이 없고, 상하의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노천의 갑판상에 적재되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명뗏목 중 1개의 구명뗏목이 사용될 수 없는 경우 각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이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이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도록 추가의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반대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명뗏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2.>

④ 제6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명뗏목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명뗏목은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대승선인원의 200퍼센트를 수용하기에 필요한 구명정 및 구명뗏목이외의 구명뗏목<개정 2007. 11. 22.>
2. 제64조제3항 각 호의 구명뗏목

제67조(구조정) ①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1종선에는 각현에 1척의 구조정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카페리어객선에 비치하는 구조정중 적어도 1척은 고속구조정이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

② 총톤수 500톤 미만의 제1종선에는 1척의 구조정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카페리어객선에 비치하는 구조정은 고속구조정이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조정이 구명정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구명정으로 볼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조정이 구명정의 요건에 적합하고 또한 어느 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 또는 해당 구조정이 최대승선인원의 150퍼센트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구명뗏목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제68조(구명정 및 구조정의 합계수) 제1종선에 비치하는 구명정 및 구조정의 합계수는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구명뗏목의 수를 6(단국제항해에 종사하고 또한 선박구획기준 제13장의 규정에 적합한 제1종선에 있어서는 9)으로 나누어서 얻어진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69조(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1종선에 대한 완화규정)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1종선에 있어서는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 대한 규정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팽창식구명뗏목에 대하여는 제2종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개정 2007. 11. 22.>

제70조(구명부환) 제1종선에는 별표 5에 의한 수의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1조(구명조끼) ① 제1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2.><개정 2014. 12.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명조끼가 어린이의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와 같은 수 또는 어린이의 수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객정원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중 큰 수의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4.>

③ 제1종선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명조끼이외에 선교 및 기관감시실에서 당직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과 같은 수의 당직원용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4.>

④ 제1종선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구명조끼이외에 최대승선인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⑤ 제1종선으로 24시간 미만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여객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유아용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하며, 24시간 이상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승선하는 유아 당 1개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3.> <개정 2014. 12. 24.>

⑥ 카페리어객선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명조끼 외에 최대승선인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구명조끼를 소집장소 부근(여객실 외부)에 추가로 분산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4.>

제72조(방수복, 보온구 및 노출보호복) ① 제1종선에는 구조정의 승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과 같은 수의 방수복 또는 노출보호복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강하식탑승장치를 비치하는 제1종선에는 탑승장치의 조작요원과 같은 수의 방수복 또는 노출보호복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18>

③ 각 구명정에는 3별이상의 방수복과 방수복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인원을 위한 보온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4. 10>

1. 부분폐형 또는 전폐형구명정
2. 따뜻한 기후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구명정

제73조(구명출발사기) 제1종선에는 1개 이상의 구명출발사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관 제2종선

제74조(근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의 구명정 등) ①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제2종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2.>

② 제1항에 따라 카페리어객선에 비치하는 구명뗏목은 자동복원구명뗏목등 이어야 한다. <신설 2014. 12. 24.>

제75조(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의 구명정 등) ①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2.>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그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비치할 수 있다. <2005. 1. 13. 개정>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가. 육지 또는 섬에 소재한 기항지를 출발하여 해안선으로부터 1마일 이내의 수역 안에서만 항해하고, 출발항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를 항해하는 여객선 : 최대승선인원의 20%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과 최대승선인원의 80%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2005. 1. 13. 개정>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나. 가목 외의 여객선 : 최대승선인원의 50퍼센트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과 최대승선인원의 50퍼센트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2005. 1. 13. 개정>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③ 제2항에 따라 의하여 구명부환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1개의 구명부환에 대하여 1인을 수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4.>

④ 제1항에 따라 카페리어객선에 비치하는 구명뗏목은 자동복원구명뗏목등 이어야 한다. <신설 2014. 12. 24.>

제76조(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의 구명정 등) ①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의 50퍼센트(호수·하천만을 항해하는 제2종선에 있어서는 25퍼센트)를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구명뗏목·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② 제7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명부환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7조(구조정) ① 근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최소한 1척의 구조정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조정이 구명정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7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구명정으로 볼 수 있다.

제78조(구명뗏목지원정) 제2종선의 구명뗏목지원정이 구명정·구명뗏목 또는 구조정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74조, 제75조제1항 및 제2항과 제76조제1항 또는 제77조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구명정·구명뗏목 또는 구조정으로 볼 수 있다.

제79조(구명부환) 제2종선에는 별표 6에 의한 수의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0조(구명조끼) ① 제2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② 어린이를 탑재하는 제2종선에는 실제로 탑재하는 인원이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③ 어린이를 탑재하는 제2종선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명조끼가 어린이의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와 같은 수 또는 어린이의 수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객정원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중 큰 수의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4.>

④ 제2종선에는 여객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유아용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05. 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명조끼 외에 최대승선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추가의 구명조끼를 여객실 외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4.> <개정 2019. 05. 31.>

제81조(구명줄발사기)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2종선으로서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명뗏목만을 비치하는 것에는 최소한 1개의 구명줄발사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2.>

제3관 제3종선

제82조(구명정 및 구명뗏목) ① 제3종선(산적화물선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명정(부분폐형구명정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 내지 제84조에서 같다) 및 구명뗏목(제2종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동조부터 제84조까지에서 같다)을 비치하거나 또는 제3항 각 호의 구명정 및 구명뗏목을 비치하여야 한다. <2005. 7. 21. 개정><개정 2007. 11. 22.>

1. 각현에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2.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뗏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명뗏목이 반대현으로 쉽게 이동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각현에서 사용되는 구명뗏목에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도록 추가의 구명뗏목(반대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명뗏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대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명뗏목의 요건에 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1. 22.>

③ 산적화물선에는 다음 각 호의 구명정 및 구명뗏목을 비치하여야 한다. <2005. 7. 21. 개정><개정 2007. 11. 22.>

1. 선미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자유강하식구명정 <개정 2014. 12. 24.>

2. 각현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구명뗏목

④ 선박의 구명정 및 구명뗏목이 선수 또는 선미에서(최상층 전통갑판의 선수재 또는 선미재의 교차점에서 측정한다) 100미터를 넘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제3종선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명뗏목이외에 각각 1개의 구명뗏목을 가능한 한 전방 또는 후방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화점이 섭씨 60도이하의 화물을 운송하는 유탱커등에 비치하는 구명정은 내화구명정이어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성을 가지는 화물의 산적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유탱커를 제외한다)에 비치하는 구명정은 공기자급식구명정 또는 내화구명정이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명뗏목은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구명뗏목의 정원이 10분 이내에 탑승할 수 있도록 배치된 강하식탑승장치에 의하여 탑승할 수 있는 구명뗏목

2. 제64조제3항제1호 및 제6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명뗏목

제83조(선박길이 85미터미만의 제3종선에 대한 완화규정) ①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길이 85미터미만의 제3종선(유탱커등을 제외한다)에는 각현에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구명뗏목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②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 중 "구명정"을 "구명정(부분폐형구명정을 제외한다)"으로 본다.

③ 제82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명뗏목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4조(구조정) ① 제3종선에는 최소한 1척의 구조정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조정이 구명정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 및 제8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66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구명정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조정이 구명정의 요건에 적합하고 선박의 어느 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 또는 해당 구조정이 최대승선인원의 150퍼센트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의 규정 및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66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구명뗏목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제85조(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3종선에 대한 완화규정) 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3종선에 있어서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에 대한 규정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제86조(구명부환) 제3종선에는 별표 7에 의한 수의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7조(구명조끼) ① 제3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어린이를 탑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명조끼가 어린이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와 같은 수의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14. 12. 24.>

② 제3종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명조끼이외에 선교 및 기관감시실에서 당직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 및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비치하는 구명뗏목의 정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4.>

제88조(방수복) ① 제3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방수복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방수복은 구조정의 승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방수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05. 1. 13. 개정) <개정 2007. 11. 22.>

② 방수복이 비치되어 있는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당직 또는 작업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수복에 추가하여 당해 장소에서 통상의 당직 또는 작업에 임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방수복을 당해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005. 1. 13. 개정>

③ 방수복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그 위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005. 1. 13. 개정>

④ <삭제>. (2006. 9. 28. 개정)

제89조(구명줄발사기) 제3종선에는 최소한 1개의 구명줄발사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관 제4종선

제90조(근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의 구명정등) ① 근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에는 각현에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제2종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18> <개정 2007. 11. 22.>

② 연습선등으로서 제4종선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비치하여야 할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은 적어도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08. 7. 18.>

- 제91조**(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의 구명정 등) ①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18><개정 2007. 11. 22.>
- ② 제4종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갈음하여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을 비치할 수 있다.
1.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개정 2005. 1. 13.><개정 2007. 11. 22.>
 2. 연습선등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8. 7. 18.>
- ③ 제75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명부환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2조(구명뗏목지원정)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제4종선에 비치하는 구명뗏목지원정이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90조와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각각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으로 볼 수 있다.

- 제93조**(구명부환) ① 선박길이 30미터이상의 제4종선에는 최소한 4개의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2.>
- ② 선박길이 30미터미만의 제4종선에는 최소한 2개의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2.>

제94조(구명조끼) 제4종선에는 최소한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2.><개정 2014. 12. 24.>

제5관 어 선<삭제 2010. 5. 3>

- 제95조**(어선의 구명정 등) <삭제 2010. 5. 3.>
- 제96조**(구명부환) <삭제 2010. 5. 3.>
- 제97조**(구명조끼) <삭제 2010. 5. 3.><개정 2014. 12. 24.>

제2절 신호장치

- 제98조**(제1종선 및 제2종선의 자기점화등 등)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별표 8에 의한 수의 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수·하천 및 항내만을 항행하는 것에는 자기발연신호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9조**(제3종선 및 제4종선의 자기점화등 등) ① 제3종선 및 제4종선에는 별표 9에 의한 수의 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수·하천 및 항내만을 항행하는 것에는 자기발연신호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커에 비치하는 자기점화등은 전지식의 것이어야 한다.
- 제100조**(어선의 자기점화등 등) <삭제 2010. 5. 3.>

제101조(구명조끼등)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조끼, 방수복(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노출보호복에는 구명조끼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 13. 개정><개정 2007. 11. 22.><개정2010. 5. 3.><개정 2014. 12. 24.><개정 2016. 3. 9>

제102조(로켓낙하산신호) ① 제1종선·제2종선·제3종선 및 제4종선(이하 "제1종선등"이라 한다)에는 별표 10에 의한 수의 로켓낙하산신호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수·하천 및 항내만을 항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0. 5. 3.>

제103조(역반사재) 구명정·구조정·구명뗏목·구명부기·구명부환·구명조끼·방수복 및 구명뗏목지원정에는 역반사재를 별표 1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4.>

제104조(선상통신장치) 제1종선·제2종선(근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3종선에는 선상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2.>

제105조(경보장치) ① 제1종선 및 제3종선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종선에 있어서는 경보를 모든 개방갑 판상에서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2. 1. 18>

② 제2종선 및 제4종선에는 기적 또는 사이렌에 의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18>

③ 제2항의 경보장치에 의한 경보를 선내의 모든 장소에서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 기식의 경보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18>

1. 기적 또는 사이렌과 연동시켜서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적 또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기적 또는 사이렌과 연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내의 모든 장소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 제2종선에는 비상시 승선자에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확성기에 의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갑판선으로서 육성으로도 선내의 모든 장소에서 청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에 있어서는 핸드마이크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8>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보장치(기적을 제외한다)는 선교 및 지휘장소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06조(선내방송장치) ① 제1종선, 제2종선 중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여객선 및 제3종선에는 선내 방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종선 중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여객선에 대해서는 여객에 대하여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동등한 수준의 장치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② 제1종선에 비치하는 선내방송장치는 비상전원에 의해서도 작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절 진수장치 등

제107조(구명정진수장치) 구명정을 비치하는 제1종선 등에는 1척의 구명정에 대하여 1개의 구명정진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선,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종선에 대하여는 구명정진수장치에 갈음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진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08. 7. 18.>

제108조(구명뗏목진수장치) ① 제1종선으로서 제64조제3항, 제65조제3항 또는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을 비치하는 것에는 해당 구명뗏목에 정원을 탑재하고 평온한 상태로 30분 이내에 물 위에 내리는데 충분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의 구명뗏목진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8.>

② 제3종선으로서 제82조제7항 또는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을 비치하는 것에는 당해 뗏목에 정원을 탑재하고 평온한 상태로 10분 이내에 물위에 내리기 위해 충분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의 구명뗏목진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구명뗏목진수장치는 각현에 1개 이상으로서 가능한 한 같은 수로 설치되어야 한다(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명뗏목을 물위에 내리기 위한 구명뗏목진수장치를 제외한다).

제109조(구명부기진수장치) 무게가 18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구명부기를 비치하는 제1종선 등에는 해당 구명부기를 진수시키는데 충분한 수의 구명부기진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0조(구조정진수장치) 구조정을 비치하는 제1종선 등에는 1척의 구조정에 대하여 1개의 구조정진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1조(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 ① 구명뗏목지원정을 비치하는 선박에는 1척의 구명뗏목지원정에 대하여 1개의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을 비치하는 선박에는 해당 구명뗏목지원정에 정원을 탑재한 상태로 해당 구명뗏목지원정을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물 위에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수의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건현, 구명뗏목지원정의 무게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에 갈음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진수장치를 설치하거나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제112조(탑승장치) ① 제1종선 등에는 물위에 떠 있는 구명정, 구명뗏목, 구명부기 또는 구조정에 쉽게 탑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탑승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 탑승장소까지의 높이가 2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명정·구명뗏목 및 구조정에 인접하는 2개의 진수장치(투하식구명뗏목의 진수용격납대를 포함한다)마다 탑승용사다리 1개. 다만, 제1종선 및 제2종선에 있어서는 각현에 1개의 탑승용사다리를 비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외의 탑승용사다리는 그물사다리, 강하식탑승장치 등 다른 탑승장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물사다리는 다음 조건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005. 1. 13. 개정>

$$\text{한쪽 현의 열수} \geq \frac{3n}{540 - h}$$

이 식에서

n은 탑승장소의 탈출 인원수(인)

h는 탑승장소의 수면상의 높이(센티미터)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카페리어객선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의 탑승장치<개정 2008. 7. 18.>

가. 탑승장소가 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것

(1) 각현에 탑승용사다리 1개 이상

(2) 최대승선인원을 30분 이내에 탈출시킬 수 있는 강하식탑승장치. 다만 탑승장소의 위치를 고려하여 양현에 적절히 비치되 각 현에 2개 이상을 비치하여야 함<2005. 1. 13. 개정><개정 2007. 11. 22.><개정 2014. 12. 24.>

나. 탑승장소가 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 2미터를 초과하고 5미터미만의 높이에 있는 것에는 한쪽 현에 그물사다리 2개 이상 또는 2개의 진수장치마다 탑승용사다리 1개 이상. 이 경우 그물사다리의 열수에 대하여는 제1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명뗏목에 탑승하기 위한 탑승장치는 제1항의 탑승장치에 대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탑승장치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08. 7. 18.>

제4장 구명설비의 탑재방법

제113조(구명정의 탑재방법) ① 구명정(자유강하식구명정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탑재되어야 한다.

1. 모든 구명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수시킬 수 있을 것. 다만, 제1종선에 있어서는 30분, 제3종선에 있어서는 10분 이내이어야 한다.
2. 다른 구명기구의 신속한 취급, 탑승자의 정리 및 승정에 방해되지 아니할 것
3. 격납위치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제3종선에 비치하는 것에 한한다)
4. 격납위치 또는 진출위치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제3종선에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은 그 승정위치가 어느 한쪽으로 통일되도록 탑재되어야 한다.
5. 하층갑판에 탑재되는 구명정이 상층의 갑판에 탑재되는 구명정에 의하여 방해되는 경우에는 2층이상의 갑판에 탑재되지 아니할 것
6.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으로부터 가능한 한 가까운 위치에 탑재될 것
7. 선박의 전방에 탑재되는 경우에는 선수격벽 후방의 보호된 위치에 탑재될 것
8. 가능한 한 선박의 수직현축을 따라 진수될 수 있는 위치에 탑재될 것
9. 선박의 돌출부 및 프로펠러 등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위치에 탑재될 것
 - 가. 현축사다리의 바로 위에 탑재되지 아니할 것. 다만, 구명정 진수시에 현축사다리 및 그 부속설비가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구명정 강하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는 보트스키드가 설치되어 있을 것(그림 2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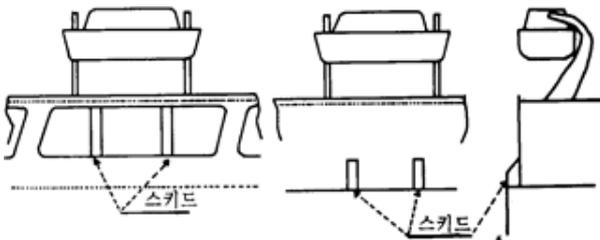


그림 2

다. 스테빌라이저윙이 있는 장소의 바로 위에 탑재되지 아니할 것. 다만, 비상전원에 의하여 스테빌라이저윙을 선내로 끌어들이 수 있고 또한 윙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가 선교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구명정의 강하위치 부근의 선측에 있는 배수관 및 특수형상의 현창등의 돌출물은 진수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되거나 또는 가능한 한 작게 되어 있을 것

마. 프로펠러보스 전면에서 최후부의 구명정후단까지의 거리는 다음에 의한 길이이상일 것. 다만, 이의 실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림 3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도 (α)의 측정에 있어서 대빛상단(A)은 블록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진출위치의 풀용 블록의 상단, 블록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진출위치의 시브의 중심으로 한다.

(1) 선박길이 80미터이상의 제1종선 및 선박길이 120미터이상의 제3종선 : 구명정 길이의 1.5배<개정 2007. 11. 22.>

(2) 선박길이 80미터이상 120미터미만의 제3종선 : 구명정 길이<개정 2007. 11. 22.>

(3) 전 (1) 및 (2)이외의 선박 : 구명정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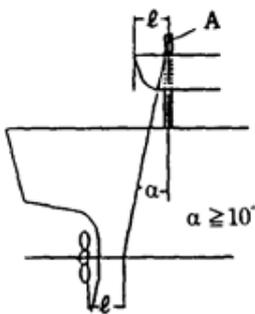


그림 3

10. 선박이 만재상태에서 20도 또는 현단이 수면에 달하는 각도중 작은 각도의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를 한 경우에도 승정위치에 있는 구명정이 수면상 2미터이상의 위치가 되도록 탑재될 것

11. 가능한 한 구명정진수장치의 정부가 선박의 최소항해흘수에서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도록 탑재될 것(제1종선 또는 제2종선에 비치하는 것에 한한다)

12. 가능한 한 화재 및 폭발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탑재될 것. 이 경우 인화성 액체를 적재하는 탱크 상부에 위치하지 아니하면 폭발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로 본다.

13.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물(펌프에 의하여 가압하여 배수되는 것을 말한다)이 구명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배수구가 구명정 강하위치 부근(그림 4의 사선의 범위로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배수의 유출방향을 변경하여 외판을 따라 유출시키는 장치

나. 배수구를 폐쇄하는 장치로서 기관실 및 케이싱의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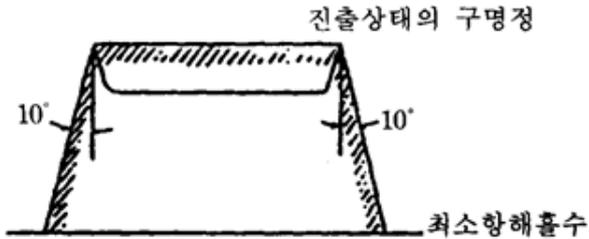


그림 4

14. 진수준비로부터 진수가 완료될 때까지 구명정·구명정진수장치 및 진수하는 수면의 어떠한 부분도 2력스 이상의 조도로 조명할 수 있는 장치(제1종선에 있어서는 주전원·비상전원 및 임시비상전원으로부터, 제3종선에 있어서는 주전원 및 비상전원으로부터 급전되는 것이어야 한다)가 비치되어 있을 것

② 자유강하식구명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탑재되어야 한다.

1. 격납위치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
2. 선박의 최소항해흘수에서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최대진수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탑재될 것
3.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10호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요건

③ 해당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의 이탈장치는 동일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④ 구명정의 부근에는 구명정의 진수방법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4조(구명뗏목의 탑재방법) ① 구명뗏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탑재되어야 한다.

1. 모든 구명뗏목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수시킬 수 있을 것. 다만, 제1종선에 있어서는 30분, 제3종선에 있어서는 10분 이내이어야 한다.
2.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은 격납위치로부터 가까운 장소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
3. 선박의 침몰시 자동적으로 떠서 선박으로부터 이탈될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 경우 이탈장치로서 "워크링크" 또는 "수압이탈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워크링크

- (1) 구명뗏목의 컨테이너에서 페인터를 끌어내는 힘에 의하여 파단되지 아니할 것
- (2) 구명뗏목을 팽창시키기 위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 (3) 2.2 ± 0.4 킬로뉴턴의 장력에서 파단될 것

나. 수압이탈장치

- (1) 장치의 작동불량을 방지하도록 도금 또는 금속피복이 되어있지 아니한 적절한 재료로 제작된 것일 것
- (2) 4미터이하의 깊이에서 구명뗏목이 자동적으로 이탈될 것
- (3) 수압실에 물의 고임을 방지하기 위한 드레인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 (4) 해수가 장치를 휩쓰는 경우 이탈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
- (5) 그 외부에 형식과 제조번호가 항구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
- (6) 제조연월일·형식·제조번호 및 25인승이상 구명뗏목에 사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기입한 문서 또는 증명판이 비치되어 있을 것

- (7) 페인터장치에 연결된 각 부분의 강도는 페인터의 강도이상일 것
- (8) 이탈장치가 1회용인 경우에는 상기 (6)의 규정 대신에 유효기간결정에 관한 방법이 표시되어 있을 것
4. 페인터에 의하여 본선과 연결되어 있을 것(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명뗏목을 제외한다)
5. 바닥면의 경사가 수평면에 대하여 25도 이상인 격납상자 또는 격납대에서 용이하게 이탈될 수 있도록 탑재하여야 하며, 한 동작(수동)으로 진수할 수 있을 것<개정 2016. 3. 9>
6. 굴뚝으로부터의 매연·불꽃 및 빗물 등에 의한 외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을 것
7.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물(펌프에 의하여 가압하여 배수되는 것을 말한다)이 구명뗏목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배수구에 대하여는 제113조제1항제13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8. 구명뗏목의 적재장소를 20럭스 이상의 조도로 조명할 수 있는 장치(제1종선에 있어서는 주전원·비상전원 및 임시비상전원, 제3종선에 있어서는 주전원 및 비상전원으로부터 급전되는 것이어야 한다)가 비치되어 있을 것(제1종선 또는 제3종선에 비치하는 구명뗏목에 한한다)
9. 진수준비로부터 진수가 완료될 때까지의 사이에 탑재장소, 구명뗏목진수장치 및 진수하는 수면의 어떠한 부분도 2럭스 이상의 조도로 조명할 수 있는 장치(제1종선에 있어서는 주전원·비상전원 및 임시비상전원으로부터 급전되는 것이어야 한다)가 비치되어 있을 것(제1종선 또는 제3종선에 비치하는 진수장치용구명뗏목에 한한다)
10. 진수장치용구명뗏목(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명뗏목을 제외한다)은 구명뗏목진수장치의 도달거리 내에 탑재되어 있을 것. 다만, 해당 구명뗏목진수장치가 20도의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선박의 동력원으로부터 독립된 동력원에 의하여 이동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진수장치용제1종팽창식구명뗏목의 컨테이너 및 그 부품에는 구명뗏목이 팽창된 후 해상으로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12. 진수장치용구명뗏목은 가능한 한 구명뗏목진수장치의 정부가 선박의 최소항해흘수에서 수면상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탑재될 것(제1종선 및 제2종선에 비치하는 것에 한한다)
13. 강하식탑승장치에 의하여 탑승하는 구명뗏목은 강하식탑승장치의 부근으로서 진수시 전개된 강하식탑승장치와 충돌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탑재될 것
14. 강하식탑승장치에 의하여 탑승하는 구명뗏목은 격납위치로부터 직접 진수시킬 수 있도록 탑재될 것
15. 강하식탑승장치에 의하여 탑승하는 구명뗏목은 로프에 의하여 사전에 강하식탑승장치와 연결되어 있거나 강하식탑승장치와 용이하게 연결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16. 제113조제1항제2호·제6호·제7호 및 제12호(진수장치용구명뗏목에 있어서는 동항 제2호·제6호부터 제10호 및 제12호의 요건,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제113조제1항제2호·제7호 및 제12호의 요건에 한한다)의 요건. 이 경우 "구명정"을 "구명뗏목"으로 본다.
- ② 구명뗏목의 부근에는 구명뗏목의 진수방법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5조(구명부기의 탑재방법) 구명부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탑재되어야 한다.<개정 2008. 7. 18.>

1. 쉽고 빠르게 진수시킬 수 있을 것
2. 다른 구명기구의 신속한 취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물 위에 내릴 수 있을 것
4. 5개를 넘는 구명부기를 겹쳐서 탑재하지 아니할 것
5. 선박의 침몰시 자동적으로 부양하여 선박에서 이탈되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
6. 조타실, 갑판실 등의 상부에 탑재되는 경우에는 탑재장소까지 2개 이상의 접근수단을 설치하고, 해당 장소에는 구명부기까지의 접근수단임을 명확히 표시할 것<신설 2014. 12. 24.>

제116조(구조정의 탑재방법) 구조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탑재되어야 한다.

1. 모든 구조정을 5분 이내에 진수시킬 수 있을 것
2. 팽창된 상태로 탑재될 것(고체식일반구조정 및 고체식고속구조정을 제외한다)
3. 격납위치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제1종선에 비치하는 것에 한한다)
4. 격납위치 또는 진출위치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제1종선에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제11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요건. 이 경우 제113조제1항제9호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구명정"을 "구조정"으로 보며, 마목에 대하여는 (3)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7조(구명부환의 비치방법) ① 구명부환은 쉽고 빠르게 취급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 ② 구명부환은 양현에 비치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선측까지 이르는 갑판상에 비치되어야 한다.
- ③ 구명부환 중 2개 이상은 항해선교에 비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종선 및 제3종선의 항해선교에 비치하는 구명부환은 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와 함께 긴급이탈장치에 의하여 신속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 ④ 구명부환 중 1개 이상은 가능한 한 선미에 가까운 곳으로서 다른 설비 등의 조작 및 운용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비치되어야 한다. 다만, 선박길이 30미터 미만의 제2종선(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30미터 미만의 제4종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11. 22.><개정 2010. 5. 3.>
- ⑤ 구명부환 중 2개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명줄을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각 현에 나누어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구명부환은 자기점화등 또는 자기발연신호 가까이 비치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선박길이 30미터 미만의 제2종선(평수구역을 항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30미터 미만의 제4종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2.><개정 2010. 5. 3.>

1. 부양성이 있을 것
2. 꼬임이 없을 것
3. 직경 8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의 높이가 15미터를 넘는 장소에 비치되는 구명부환에 있어서는 그 높이의 2배에 상당하는 길이)이상일 것
4. 5킬로뉴턴의 힘으로 파단되지 아니할 것

제118조(구명조끼의 비치방법) ① 구명조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절한 장소에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1. 제71조제3항 및 제87조제2항에 추가로 비치하는 당직원용의 구명조끼는 선교 또는 기관감시실에 비치되어 있을 것<개정 2014. 12. 24.>
2. 제71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비치하는 구명조끼는 승선자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 및 소집장소에 분산하여 비치되어 있을 것<개정 2014. 12. 24.>

3. 제71조제6항에 따라 추가로 비치하는 구명조끼는 소집장소 부근(여객실 외부)에 추가로 분산 비치되어 있을 것<신설 2014. 12. 24.>
4. 제80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비치하는 구명조끼는 여객실 외부에 승선자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 또는 소집장소 근처에 분산 비치되어 있을 것<신설 2014. 12. 24.>
5. 제87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비치하는 구명뗏목용의 구명조끼는 해당 구명뗏목 부근의 로커실 등에 비치되어 있을 것<개정 2014. 12. 24.>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명조끼 외의 구명조끼는 여객실, 선원실 및 임시승선자실에 비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07. 11. 22.><개정 2014. 12. 24.>
- ② 구명조끼를 바닥에서 2미터이상의 높이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개방뚜껑에 줄을 달고 줄을 당기면 뚜껑이 열려 구명조끼가 떨어지도록 조치되어 있을 것<개정 2014. 12. 24.>
- ③ 구명조끼를 문이 달린 선반등에 비치하는 경우 선반등은 출입구 근처에 설치되어야 하며, 1개소에 많은 수량이 비치되어서는 아니되며 꺼내는 문은 가능한 한 크게 할 것. 이 경우 문에는 "구명조끼 ○○개"라고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4.>
- ④ 여객실에는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4.>
- ⑤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조끼는 햇빛, 습기, 기름 및 고온 등의 요인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비치하여야 하며, 노출이 불가피한 장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이 달린 선반 또는 뚜껑 있는 보관함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9>

제119조(구명뗏목지원정의 탑재방법) 구명뗏목지원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탑재되어야 한다.<개정 2008. 7. 18.>

1. 구명뗏목지원정을 가능한 한 신속히 진수시킬 수 있을 것
2.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물이 구명뗏목지원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3. 선박의 20도 횡경사에 대하여 구명뗏목지원정의 진수를 쉽게 하기 위하여 스케이트 그 밖의 적절한 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을 제외한다)
4. 구명뗏목지원정의 현단상부가 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의 2개의 줄에 각각 매달린 상태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을 제외한다)
5. 제113조 제1항제2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14조제1항제6호(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에 한한다)의 요건. 이 경우 제113조제1항제9호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구명정"을 "구명뗏목지원정"으로 보며, 마목에 대하여는 (3)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0조(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의 비치방법) ① 자기점화등은 구명부환 가까이에 비치되어야 한다.

- ② 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자기점화등 중 2개 이상(비치하는 자기점화등이 1개인 경우에는 1개)은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해선교에 비치되는 구명부환 가까이에 비치되어야 한다.
- ③ 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자기발연신호는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해선교에 비치되는 구명부환 가까이에 비치되어야 한다.

제121조(로켓낙하산신호의 비치방법) 로켓낙하산신호는 항해선교에 비치되어야 한다.

제122조(양방향초단파대무선전화장치의 비치방법) 양방향초단파대무선전화장치는 비상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의 어느 1척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항해선교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개정 2002. 1. 18>

제123조(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 비치방법)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비치되어야 한다.

1. 선박을 통상적으로 조종하는 장소 가까이에 비치되어 있을 것
2. 수동으로 쉽게 이탈되고, 한사람에 의하여 생존정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
3. 선박의 침몰시 자동적으로 부양하여 선박으로부터 이탈될 수 있을 것

제124조(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의 비치방법)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자유강하식구명정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는 비상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어느 1척으로 신속히 운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각각 1개의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를 비치하고 또한 1개의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0> <개정 2016. 3. 9>

제125조(강하식탑승장치의 탑재방법) ① 강하식탑승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탑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

1. 선측의 내부개구(선박방화구조기준에 적합한 창을 제외한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의 상방의 위치에 탑재될 것
2. 전개시 장애물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탑재될 것
3. 가능한 한 파랑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적재될 것
4. 제11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요건

② 강하식탑승장치의 부근에는 강하식탑승장치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5장 구명설비의 표시

제126조(구명설비의 표시등) ① 구명설비에는 해당 구명설비의 취급에 관한 유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명기구 및 신호장치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의사항이외에 각각 별표 12에 의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을 격납하는 포대 또는 컨테이너에는 당해 팽창식구명뗏목지원정의 표시사항과 동일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장소(구명정·구조정 또는 구명뗏목지원정에 표시하는 당해 선박의 선명 및 선적항은 선수의 양측)에 명료하고 내구적인 문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종선 및 제3종선에 비치하는 구명정 및 구조정에 표시하는 해당 선박의 선명 및 선적항에 대하여는 로마자의 활자체대문자로 명기하여야 한다.

⑤ 구명정 또는 구조정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이외에 해당 선박의 호출부호 및 구명정 또는 구조정의 번호를 위쪽에 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⑥ 구명뗏목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이외에 정원을 각 출입구의 위쪽에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자의 크기는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색은 구명뗏목의 것과 대조적인 것이어야 한다.
- ⑦ 팽창식구명뗏목에 해당 선박의 선명 및 선적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명뗏목이 컨테이너 내에 있는 상태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⑧ 제1종선 또는 제3종선에 비치되는 제1종팽창식구명뗏목 또는 고체식구명뗏목으로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품을 비치하고 있는 것의 컨테이너에는 "SOLAS A PACK"으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품을 비치하고 있는 것의 컨테이너에는 "SOLAS B PACK"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⑨ 어린이용 구명조끼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이외에 "어린이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4.>
- ⑩ 구명정 및 구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된 증서를 정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및 주소
 2. 모델 및 제조번호
 3. 제조연월
 4. 정원
 5. 증서번호
 6. 선체재질(수리시 유의사항 포함)
 7. 의장품 및 정원을 만제한 총중량
 8. 종류
 9. 자유강하 인증높이(자유강하식구명정에 한한다.)
 10. 요구되는 진수램프의 길이 및 각도(자유강하식구명정에 한한다.)
 11. 구명정 및 구조정의 예항력<신설 2009. 4. 10>

제127조(구명설비의 비치장소의 표시) ① 구명조끼를 비치한 장소에는 그 취지 및 해당 설비의 수를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선 또는 제2종선에 구명조끼를 비치한 취지 및 그 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야광도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비상조명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7. 18.><개정 2014. 12. 24.>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제2종선에 있어서는 구명설비의 보관장소의 위치를 별표 13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설비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비의 수량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9>

제6장 구명설비의 이용 및 정비

제128조(구명설비의 신속한 이용) 구명설비는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제129조(팽창식구명뗏목등의 정비) ① 팽창식구명뗏목, 팽창식구명부기 및 강하식탑승장치(이하 "팽창식구명뗏목등"이라 한다)의 정비간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2. 1. 18> <개정 2016. 3. 9>

1. 전회의 정비를 하고 합격한 날부터 12월의 간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3. > <개정 2016. 3. 9 >

가. 제2종선과 제4종선(국제항해에 종사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에 비치된 팽창식구명뗏목으로서 제조연월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조연월일로부터 3년(36개월)이 되는 시기와 5년(60개월)이 되는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이탈기는 팽창식구명뗏목 제조연월일로부터 12월의 간격으로 매년 정비를 하여야 한다. (2006. 9. 28 개정)

나. 정기 또는 중간검사시기(「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당해 선박의 검사시기. 이하 같다)에 정비를 하는 경우 <개정 2007. 11. 22. > <개정 2016. 3. 9 >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로서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천재지변 등 운항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비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5월의 범위 내에서 정비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2006. 9. 28. 개정) <개정 2007. 11. 22. >

2. <삭제 2010. 5. 3. >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설치된 새로운 형식의 팽창식구명뗏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팽창식구명뗏목의 정비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 >

가. 연장된 기간 동안 구명뗏목의 상태가 점검절차에 따라 점검되고 사용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나. 구명뗏목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정비사업장으로서 제조자의 정비능력을 인정받은 사업장에 의하여 점검된 경우 <개정 2009. 4. 10 > <개정 2016. 3. 9 >

다. 구명뗏목의 정비는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외에 훈련 그 밖의 사용 등으로 팽창식구명뗏목등이 펼쳐졌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정비를 행하여야 한다.

③ 팽창식구명뗏목등의 정비기준은 별표 14에 의한다.

제130조(구명정, 구조정, 진수설비 및 이탈장치의 정비 등) ① 구명정, 자유강하식구명정, 구조정, 고속구조정, 진수설비 및 이탈장치는 매 12월마다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시(단, 진수장치 및 이탈장치의 분해 및 하중 작동시험은 매 5년마다 최소 1회 시행)마다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결의서 MSC. 402(96)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시험 및 점검을 하여야 하며, 시험 및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방법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정비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가 검사관(대행 검사기관의 경우 검사원을 말한다) 입회하에 시험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점검항목과 점검방법 등은 별표 15와 같으며,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별표 15의2의 관련요건을 준수하는 자를 말한다.

③ 팽창식구조정의 정비방법은 제조자의 정비지침에 의하며, 팽창식구조정의 정비자(수리 또는 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팽창식구조정정비기록 3부, 별지 제2호서식의 팽창식구조정의장품검사기록 3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기밀시험성적서 2부를 작성하여 팽창식구조정정비기록 1부 및 의장품검사기록 1부는 선박소유자에게 교부하고, 팽창식구조정정비기록, 의장품 검사기록 및 기밀시험성적서 각 1부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각 1부는 정비자가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1조(폴의 정비) 진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폴은 활차를 통해 지나는 부위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폴의 마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3.]

제131조의2(방수복 및 노출보호복의 정비 등) ① 방수복 및 노출보호복은 제조후 9년까지는 매 3년마다, 제조후 9년부터는 매 2년마다 비눗물에 의한 누설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설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기를 주입하기에 적합한 헤드피스(Head piece)를 방수복 또는 노출보호복의 얼굴부분에 삽입하고, 얼굴주위의 누설이 최소화 되도록 고정한다.
2. 장갑, 장화, 손목 또는 발목 등이 분리형인 경우에는 적절한 직경의 플라스틱 봉을 내부에 삽입하고 밀봉한다.
3. 저압측정장치를 삽입한다.
4. 지퍼 및 안면가리개를 완전히 잠금후 내부압력이 0.7 kPa 내지 1.4kPa이 되도록 공기를 주입한다. 이 경우 부력유지를 위한 보조 팽창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입으로 불어서 0.7kPa 또는 손으로 만져서 단단해 질 때까지 공기를 주입한다.

이 경우 풋밸브(Foot valve)에서 누설이 있을 때에는 풋밸브를 잠근 후 시험한다.

5. 공기주입이 완료된 후 방수복 및 노출보호복의 모든 이음부 및 폐쇄부(보조 팽창수단의 관 및 밸브 등을 포함한다)에 비눗물을 뿌려 누설되는 부분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설시험결과 누설이 발견된 경우에는 누설부분을 세척 및 건조 후 제조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2006. 9. 28. 조 신설>

제132조(구명설비의 보수 등) ① 제1종선 등에는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한 구명정·구조정·구명뗏목지원정 및 그 진수장치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보수에 관한 지침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월례점검을 위한 점검표
2. 보수 및 수리를 위한 지침
3. 정기적인 보수계획
4. 주유개소의 표시(주유하여야 될 운할유도 기재되어 있을 것)
5. 교환할 수 있는 부품의 목록
6. 예비부품의 재고표
7. 점검 및 보수기록일지

② 제1종선등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명설비의 보수 및 선박내에서 행하는 경미한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 및 공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3조(훈련지침서의 비치) 제1종선등에는 구명설비의 사용방법 및 해상에서의 생존방법에 관한 훈련지침서를 식당·휴게실 또는 기타 적절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34조(유효기간) 각 구명설비 및 구명설비 의장품 중 유효기간이 있는 신호장치, 구난식량, 구난식수, 응급의료구의 의약품 및 건전지 등의 유효기간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7장 보칙

제13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8.><개정 2014. 12. 24.> <개정 2016. 3. 9><개정 2019. 11. 20>

부칙 <제2009-174호, 2009. 4. 10.>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한 제2조, 제10조, 제17조, 제25조, 제28조부터 30조까지,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55조, 제57조, 제60조, 제63조, 제72조, 제126조, 제131조의3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의 적용일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의 발효일을 준용한다.

③(수색구조위치확인장치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124조, 별표1,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9-579호, 2009. 8. 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212호, 2009. 12. 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279호, 2010. 5. 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2, 제14조제1항제1호, 제14조제3항, 제25조제6호, 제34조제1항제5호,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7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탑재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2010년 7월 1일전에 건조된 선박(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제외)의 경우에도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또는 교체로 탑재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현존선의 경과조치) 2010년 7월 1일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탑재 또는 비치되어 있는 종전기준에 적합한 구명설비는 이를 계속하여 해당 선박에 탑재 또는 비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기준에 적합한 구명설비로 본다.

부칙 <제2011-295호, 2011. 6. 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791호, 2011. 12. 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 제20조, 제63조 및 별표1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탑재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전에 건조된 선박(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제외)의 경우에도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또는 교체로 탑재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현존선의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탑재 또는 비치되어 있는 종전기준에 적합한 구명설비는 이를 계속하여 해당 선박에 탑재 또는 비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기준에 적합한 구명설비로 본다.

부칙 <제2012-430호, 2012. 7. 1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65호, 2013. 5. 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15호, 2013. 9. 5.>

이 고시는 2013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56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풀에 의해 진수되는 구명정 이탈장치에 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에 설치된 구명정 이탈장치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2014년 7월 1일 이후 첫 번째 입거검사 시 또는 2019년 7월 1일 중 빠른 날까지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이탈장치로 교체되어야 한다. 다만, 현존선에 설치된 전폐형 구명정 및 부분폐형 구명정의 이탈장치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당사국 정부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설치 할 수 있다.

가. 혹 안정성을 위하여 이탈장치를 잠긴 상태로 완전히 리셋하는 경우에 구명정의 무게가 작동장치에 어떠한 힘도 전달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지 않은 경우

나. 잠금장치가 혹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힘에 의해 회전하여 열리지 않도록 설계되지 아니한 경우

다. 구명정을 물에서 들어 올릴 경우, 수압인터록 장치가 자동적으로 리셋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2014-154호, 2014. 12. 24.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이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후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은 개정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현존선의 적용에 있어서 제71조제6항, 제76조제1항, 제80조제4항, 제115조제6호, 제118조제1항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복원구명뗏목등에 관한 적용례) 현존선의 적용에 있어서 제64조제2항,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복원구명뗏목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1종선: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2. 제2종선: 2024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고속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4.7.3, 4.7.8, 4.7.13, 4.8.2.3, 4.8.4.1, 4.8.4.2, 8.3.5, 8.3.5.1, 8.3.5.2, 8.3.5.3, 8.3.5.4, 8.3.6, 8.4.3.3, 8.9.7, 8.9.7.1, 18.2.3.1, 18.5.1, 18.5.7, 18.5.9.2.4, 부속서 1 고속선 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 제 2호 8·9.2·10.2 및 부속서 11 2.10.3 중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한다.

②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한다.

③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목, 같은 조 본문, 별표 3 10.10 제목·10.10.1·10.10.2, 10.18.8, 14.9.1.1, 14.9.2.4, 14.9.2.5, 14.11.2.4 중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한다.

④ 「선박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제18조제1항제5호, 제143조 중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한다.

⑤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가목 (4)·(4-1), 나목(5)·(6), 제11호가목 (5)·라목 (3)·(4)·(7), 제12호라목 (3)·(4)·(6), 제18호 제목·가목(4)·다목 (1)·(2)·(3)·(5)·(6)·라목 (1)·(3)·(4)·(5)·(6)·(7), <별표 1-4>, <별표 1-5>, <별표 1-5> 그림 1 제목·그림 2 제목·그림 3 제목, 제19호 제목, 같은 호 가목 (4)·다목 (1)·(2)·(4)·(5)·라목 (1), <별표 1-6>, <별표 1-7> 그림 1·그림 2, 제25호가목 (7), 제66호 제목, 같은 호 다목 (1), 제68호가목 (3)·나목 (1)(가)·(1)(나)·(2), 제82호가목 (4)·나목 (6)·(10)·(17), 제108호 제목, 같은 호 가목(5)·나목(1)·다목 (1)·(2)·(4)·(6)·(13)·라목(2) 비고, 제117호가목(4)·나목(4)·(10)·(13), 제158호 제목, 같은 호 가목(4)·다목 (1)·(2)·(3)·(5)·(6)·라목 (1)·(3)·(4)·(5)·(6)·(7)·<별표 1-25>·<별표 1-26>·<별표 1-26> 그림 1·그림 2·그림 3 및 별표 2 중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한다.

⑥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목, 같은 조 본문 및 별표 1 중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한다.

⑦ 「수면비행선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2.1, 7.2.2, 7.2.2.1, 7.2.2.2, 7.3.2, 10.12.2, 10.12.9, 10.20.2.3 및 10.20.4.1 중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한다.

⑧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과목·버목 중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한다.

⑨ 「잠수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구명동의”를 “구명조끼”로 한다.

부칙 <제2016-33호, 2016. 3.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이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은 개정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존선에 대하여는 제101조의 개정규정을 2017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69호, 2019. 5.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종팽창식구명뗏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적합한 제1종팽창식구명뗏목을 비치한 선박은 이 규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고시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팽창식구명뗏목의 정비 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19-170호, 2019. 11.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60호, 2020. 5.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 제131조의3의 개정규정은 해당 국제협약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명정에 비치하는 의장품(제15조제1항 관련)

의장품의 명칭	의장품의 수		적요
	제1종선 또는 제3종선에 비치하는 구명정	제2종선, 제4종선에 비치하는 구명정	
단조식 오르	1조	1조	부양성의 것으로서 비고 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출편 또는 크러치	1조	1조	재료는 아연도금단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의 것이고, 출 또는 쇠사슬로서 구명정에 부착되어 있을 것
보트 훅	2개	2개	부양성의 것으로서 양질의 질긴 재료로 제작되고 길이 2.4미터이상, 중앙부지름 5센티미터 이상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
베일러	1개	1개	부양성의 것일 것
양동이	2개	1개	-
손도끼	2개	1개	1. 전장 35센티미터 정도 크기의 것을 표준으로 하고 날은 한쪽 날이 잘 자를 수 있는 것일 것 2. 손잡이에는 길이 약1.8미터의 줄이 부착되어 이것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3. 2개인 경우에는 구명정의 양단에 1개씩 배치되어 있을 것
컴퍼스	1개	1개	야광의 것 또는 적절한 조명장치를 붙인 것으로서 효과적인 것일 것
시앵커	1개	1개	적절한 크기의 것일 것
페인터	2줄	2줄	1. 충분한 강도 및 길이를 가지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1줄은 구명정의 전단에 이탈장치로서 풀 수 있도록 묶고 다른 1줄은 전단부근에 고착되어 있는 것일 것(자유강하식구명정에 있어서는 2줄 모두 구명정의 전단부근에 고착되어 있을 것) 2. 지름 22밀리미터 이상의 마닐라로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표준으로 하고 그 길이는 구명정의 탑재장소와 최소항해홀수 사이의 높이의 2배 이상 또는 15미터 중 큰 값일 것

의장품의 명칭	의장품의 수		적요
	제1종선 또는 제3종선에 비치는 구명정	제2종선, 제4종선에 비치는 구명정	
구난식량	정원 1인당 1만킬로줄	-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기밀 포장되어 수밀용기에 격납된 것일 것<개정 2008.7.18>
음료수	정원 1인당 3리터	정원 1인당 1리터	1. 수밀용기에 넣은 청수일 것. 2. 정원 1인당 최대 2리터의 음료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해수탈염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7.18>
국자및 컵	각 1개	각 1개	1. 국자는 녹슬지 아니하는 끈이 달린 것일 것 2. 컵은 녹슬지 아니하며 눈금 있는 것일 것
음식의료구	1식	1식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수밀용기에 넣은 것일 것<개정 2008.7.18>
배멀미방지약	정원 1인당 48시간 배멀미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양	정원 1인당 48시간 배멀미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양	-
배멀미용주머니	정원 1인당 1개	정원 1인당 1개	-
보온구	2개 또는 정원의 10퍼센트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수종 큰 것	2개 또는 정원의 10퍼센트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수종 큰 것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재크나이프	1개	-	줄로서 구명정에 부착되어 있는 것일 것
강통따개	3개	-	-
부룬	2개	-	물에 담겨 있는 경우 24시간이상 가라앉지 아니하는 길이 30미터이상의 부양성 있는 줄로 매여져 있는 것일 것
호각 또는 이와 동등한 음향신호	1개	1개	-

의장품의 명칭	의장품의 수		적요
	제1종선 또는 제3종선에 비치하는 구명정	제2종선, 제4종선에 비치하는 구명정	
낙시도구	1식	-	비고 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행동지침서	1권	1권	구명정에 승정후 즉시 행동할 요령을 적은 것으로서 비고 3의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생존지침서	1권	1권	구명정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적은 것일 것
구명신호 설명표	1부	1부	구명시설과 조난선박과의 통신에 필요한 신호의 방법 및 그 의미를 설명한 것일 것
로켓낙하산신호	4개	2개	제47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신호홍염	6개	6개	제48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발연부신호	2개	2개	제49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수밀전기등	1개	-	1. 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2. 예비전지 1조 및 예비전구 1개를 수밀용기에 넣어둔 것일 것
일광신호용 거울	1개	1개	제51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레이다 반사기	1개	1개	효과적인 것일 것. 다만,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가 비치된 경우에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4. 10><개정 2016. 3. 9>
기관용공구	1식	1식	구명정의 기관 및 부속품을 간단히 조정하기에 충분한 것일 것
휴대식 소화기	1개	1개	포말 기타 기름화재를 소화하기에 적절한 물질을 방출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형식의 것일 것<개정 2008.7.18>
수동펌프	1개	1개	-
탐조등	1개	1개	제52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비고 :

1. 오르의 기준

가. 오르의 수는 다음 표에 의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구명정 길이 (미터)	오르의 수	
	상용	예비
8.5이하	2	1
8.5초과	3	1

나. 오르는 나뭇결이 고른 느티나무·물푸레나무 기타 질긴 성질이 풍부한 재료로 제작된 것일 것

다. 블레이드의 길이는 오르의 길이의 3분의 1이상, 단말부의 너비는 오르의 직경의 2배이상일 것

2. 낚시도구의 기준

- | | |
|-------------------------|------|
| 가. 실감는 것(부양성의 것) | 1개 |
| 나. 낚시줄(절단하중 98뉴튼 정도의 것) | 1개 |
| 다. 편대(내식성의 것) | 2개 |
| 라. 추(중량 100그램 정도의 것) | 2개 |
| 마. 낚시바늘(야잠사가 달린 것)대·소 | 각 5개 |
| 바. 가짜먹이 | 2개 |

3. 행동지침서의 기준

행동지침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되어 있어야 한다.

- 가. 침몰하는 배에서 신속하게 떨어질 것
- 나. 다른 조난자가 없는가 확인할 것
- 다. 다른 구명정 및 구명뗏목과 행동을 같이할 것
- 라. 구명정의 기능을 확인할 것
- 마. 의장품 격납고를 열고 생존지침서를 읽을 것

[별표 2] 구명뗏목에 비치하는 의장품(제21조제1항 관련) <개정 2016. 3. 9>

의장품의 명칭	의 장 품 의 수			요 건
	제 1 종 평창식구명뗏목	제 2 종 평창식구명뗏목	고 체 식구명뗏목	
부 료	1개	1개	1개	물에 담겨 있는 경우 24시간이상 가라앉지 아니하는 길이 30미터이상의 부양성 있는 줄로 매여져 있는 것일 것
나 이 프	2개	1개	2개	1. 1개는 부양성 있는 손잡이 및 끈이 달리고 접을 수 없는 것일 것 2. 정원 12인 이하의 구명뗏목에는 1개만을 비치할 수 있다. 3. 평창식구명뗏목에 있어서는 안전나이프일 것 4. 페인터부착지점 부근의 천막의 외부에 설치된 주머니에 넣은 것일 것
베 일 러	2개	1개	2개	정원 12인이하의 구명뗏목에는 1개만을 비치할 수 있다.
스 폰 지	2개	1개	2개	-
시 앵 커	2개	1개	2개	효과적인 것으로서 1개는 항구적으로 구명뗏목에 부착되어 있을 것
노	2개	2개	2개	부양성의 것일 것
수리용구	1식	1식	-	공기실의 파손을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구를 주머니 또는 기타 용기에 넣은 것일 것
구난식량	정원 1인당 1만킬로줄	정원 1인당 1만킬로줄	정원 1인당 1만킬로줄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기밀 포장되어 수밀용기에 격납된 것일 것<개정 2008.7.18>
음 료 수	정원 1인당 1.5리터	정원 1인당 1리터	정원 1인당 1.5리터	1. 수밀용기에 넣은 청수일 것. 2. 정원 1인당 최대 1.0리터의 음료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해수탈염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8.7.18>
컵	1개	1개	1개	녹슬지 아니하며 눈금 있는 것일 것
응 급 의 료 구	1식	1식	1식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수밀용기에 넣은 것일 것<개정 2008.7.18>

의장품의 명칭	의 장 품 의 수			요 건
	제 1 종 평 창 식 구 명 뗏 목	제 2 종 평 창 식 구 명 뗏 목	고 체 식 구 명 뗏 목	
배멀미방지약	정원 1인당 48시간 배 멀미를 방 지하기에 충분한 양	정원 1인당 48시간 배 멀미를 방 지하기에 충분한 양	정원 1인당 48시간 배 멀미를 방 지하기에 충분한 양	-
배멀미용 주머니	정원 1인 당1개	정원 1인 당1개	정원 1인 당1개	-
보 온 구	2개 또는 정원의 10 퍼센트를 수용하기 에 충분 한 수 중 큰 것	2개 또는 정원의 10 퍼센트를 수용하기 에 충분 한 수 중 큰 것	2개 또는 정원의 10 퍼센트를 수용하기 에 충분 한 수 중 큰 것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깡통따개	3개	-	3개	평창식구명뗏목에 있어서는 뗏목 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것일 것
가 위	1개	-	1개	평창식구명뗏목에 있어서는 뗏목 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것일 것
호각 또는 이 와 동등한 음향신호	1개	1개	1개	-
낙시도구	1식	1식	1식	별표 1의 비고 2의 기준에 적합 한 것일 것
행동지침서	1권	1권	1권	구명뗏목에 승정후 즉시 행동할 요령 을 적은 것으로서 별표 1의 비고 3의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생존지침서	1권	1권	1권	구명뗏목 내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적은 것일 것
구명신호 설명표	1부	1부	1부	구명시설과 조난선박과의 통신에 필요한 신호의 방법과 그 의미를 설명한 것일 것
로켓낙하산 신호	4개	4개	4개	제47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의장품의 명칭	의 장 품 의 수			요 건
	제 1 종 평 창 식구명뗏목	제 2 종 평 창 식구명뗏목	고 체 식 구명뗏목	
신호홍염	6개	6개	6개	제48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발연부신호	2개	2개	2개	제49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수밀전기등	1개	1개	1개	1. 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2. 예비전지 1조 및 예비전구 1개 를 수밀용기에 넣어둔 것일 것
일광신호용 거울	1개	1개	1개	제51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레이더반사기	1개	1개	1개	효과적인 것일 것. 다만, 수색구조 용 위치정보송신장치가 비치된 경 우에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충기펌프 또는 풀무	1개	1개	-	-

[별표 3] 구조정에 비치하는 의장품(제32조 관련)

의장품의 명칭	의 장 품 의 수			요건
	팽창식일반구조정 및 팽창식고속구조정	고체식일반구조정 및 고체식고속구조정	복합식일반구조정 및 복합식고속구조정	
오르 또는 페들	1조	1조	1조	오르는 부양성의 것으로서 별표 1의 비고 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쏟핀 또는 크러치	1조	1조	1조	아연도금단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의 것이고, 줄 및 쇠사슬로서 구조정에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페들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트훅	1개	1개	1개	1. 부양성의 것으로서 양질의 길긴 재료로 제작되고 길이 2.4미터이상, 중앙부지름 5센티미터 이상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팽창식일반구조정, 복합식일반구조정, 팽창식고속구조정 및 복합식고속구조정에 있어서는 안전보트훅일 것
베일러	1개	1개	1개	부양성의 것일 것
양동이	-	1개	-	-
스폰지	2개	-	2개	-
나이프 또는 손도끼	1개	1개	1개	팽창식일반구조정, 복합식일반구조정, 팽창식고속구조정 및 복합식고속구조정에 있어서는 부양성의 안전ナイ프일 것
컴퍼스	1개	1개	1개	야광의 것 또는 적절한 조명장치를 부착한 것으로서 비너클에 넣은 효과적인 것일 것
시앵커	1개	1개	1개	효과적인 것일 것
페인터	1줄	1줄	1줄	충분한 길이를 가지고 또한 구조정의 전단에 이탈장치로 풀 수 있도록 부착된 것일 것
투우라인	1줄	1줄	1줄	부양성의 것으로서 충분한 강도를 가진 길이 50미터이상의 것일 것

의장품의 명칭	의 장 품 의 수			요 건
	팽창식일반 구조정 및 팽창식고속 구조정	고체식일반 구조정 및 고체식고속 구조정	복합식일반 구조정 및 복합식고속 구조정	
수리용구	1식	-	1식	공기실의 파손을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구를 주머니 또는 기타 용기에 넣은 것일 것
충기펌프 또는 플루	1개	-	1개	-
응급의료구	1식	1식	1식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수밀용기에 넣은 것일 것<개정 2008.7.18>
보온구	2개 또는 정원의 10퍼센트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수중 큰수	2개 또는 정원의 10퍼센트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수중 큰수	2개 또는 정원의 10퍼센트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수중 큰수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부 료	2개	2개	2개	길이 30미터이상의 부양성의 줄이 부착된 것일 것
호각 또는 이와 동등한 음향신호	1개	1개	1개	-
수밀전기등	1개	1개	1개	1. 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2. 예비전지 1조 및 예비전구 1개를 수밀용기에 넣어 둔 것일 것
레이더반사기	1개	1개	1개	효과적인 것일 것. 다만, 레이더트랜스폰더가 비치된 경우에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탐 조 등	1개	1개	1개	제52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일 것
휴대식소화기	1개	1개	1개	포말 기타 기름화재를 소화하기에 적절한 물질을 방출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형식의 것일 것<개정 2008.7.18>

[별표 4] 구명뗏목지원정에 비치하는 의장품(제43조 관련)

의장품의 명칭	의장품의 수	비 고
부 룬	1개	충분한 길이의 부양성 있는 줄에 매여져 있는 것일 것
베 일 러	1개	-
양 동 이	1개	-
스 폰 지	1개	-
노	2개	혹이 있는 노 2개로 대신할 수 있다.
보 트 혹	1개	
충기펌프 또는 풀무	1개	평창식구명뗏목지원정에 한한다.
핸 드 마 이 크	1개	-
토 우 라 인	1개	충분한 길이의 것일 것
휴 대 용 전 등	1개	방사형의 것일 것

[별표 5] 제1종선에 비치하는 구명부환(제70조 관련)<개정 2007.11.22>

선박길이 (미터)	구 명 부 환 의 수(개)
60미만	8
60이상 120미만	12
120이상 180미만	18
180이상 240미만	24
240이상	30

[별표 6] 제2종선에 비치하는 구명부환(제79조 관련)<개정 2007.11.22>

선박길이(미터)	구 명 부 환 의 수(개)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 는 것	연해구역을 항해 구역으로 하는 것	평수구역을 항해 구역으로 하는 것
30미만	4	4	2
30이상 60미만	4	4	4
60이상 120미만	6	6	4
120이상 180미만	8	6	4
180이상	12	6	4

[별표 7] 제3종선에 비치하는 구명부환(제86조 관련)<개정 2007.11.22>

선박길이 (미터)	구명부환의 수(개)
100미만	8
100이상 150미만	10
150이상 200미만	12
200이상	14

[별표 8] 제1종선 및 제2종선에 비치하는 자기점화등 등(제98조 관련) <개정 2007.11.22>

선박길이 (미터)	제 1 종 선		제 2 종 선					
			근해구역이상을 항 해구역으로 하는 것		연해구역을 항해 구역으로 하는 것		평수구역을 항해 구역으로 하는 것	
	자 기 점화등	자기발 연신호	자 기 점화등	자기발 연신호	자 기 점화등	자기발 연신호	자 기 점화등	자기발 연신호
30미만	6	2	2	1	2	1	1	-
30이상 60미만	6	2	2	1	2	1	2	1
60이상 120미만	6	2	3	1	3	1	2	1
120이상 180미만	9	2	4	2	3	1	2	1
180이상 240미만	12	2	6	2	3	1	2	1
240이상	15	2	6	2	3	1	2	1

[별표 9] 제3종선 및 제4종선에 비치하는 자기점화등 등(제99조 관련) <개정
2007.11.22>

선박길이 (미터)	제 3 종 선		제 4 종 선	
	자기점화등	자기발연 신 호	자기점화등	자기발연 신 호
30미만	4	2	1	-
30이상 100미만	4	2	2	1
100이상 150미 만	5	2	2	1
150이상 200미 만	6	2	2	1
200이상	7	2	2	1

[별표 10] 제1종선 등에 비치하는 로켓낙하산신호(제102조제1항 관련) <개정
2007.11.22>

구 분	원양구역을 향해 구역으로 하는 것	근해구역을 향 해 구역으로 하 는 것	연해구역을 향해 구역으로 하는 것	평수구역을 향 해구역으로 하 는 것
제1종선	12	12	12	-
제2종선	12	8	4	2
제3종선	12	12	12	-
제4종선	12	8	4	-

[별표 11] 역반사재의 부착방법(제103조 관련)

1. 구명정

가. 부분폐형구명정(그림 1 참조)

- (1) 역반사재(너비 5센티미터 이상, 면적 1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고정덮개 또는 천막 정부의 수평부분(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분)의 주위에 80센티미터의 중심간격으로 부착할 것
- (2) 역반사재를 현단과 고정덮개 또는 천막의 정부와의 중간높이에 80센티미터의 중심간격으로 부착할 것
- (3) 역반사재를 가능한 한 현단에 가까운 선측 및 현단의 거널상면에 80센티미터의 중심간격으로 부착할 것
- (4) 자동으로 복원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역반사재를 선저에 80센티미터의 중심간격으로 부착할 것(그림 1의 선저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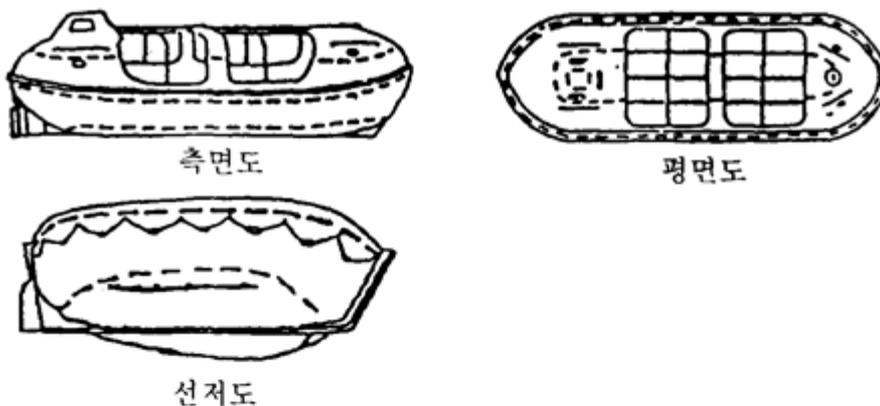


그림 1

나. 전폐형구명정(그림 2 참조)

- (1) 역반사재를 고정덮개 정부의 수평부분(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분)의 주위에 80센티미터의 중심간격으로 부착할 것
- (2) 역반사재를 현단과 고정덮개 정부와의 중간높이에 80센티미터의 중심간격으로 부착할 것
- (3) 자동으로 복원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역반사재를 선저에 80센티미터의 중심간격으로 부착할 것(그림 1의 선저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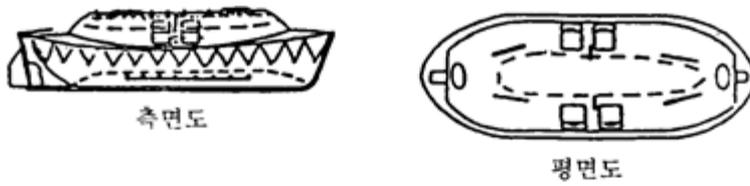


그림 2

다. 고정덮개가 없는 구명정(그림 3 참조)

- (1) 역반사재를 천막 정부의 수평부분(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분) 주위에 80센티미터의 중심간격으로 부착할 것
- (2) 역반사재를 가능한 한 현단에 가까운 선측 및 현단의 거널상면에 80센티미터의 중심간격으로 부착할 것. 이 경우 천막을 쳤을 때 선측에 부착된 역반사재가 가려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역반사재를 선저에 80센티미터의 중심간격으로 부착할 것(그림 1의 선저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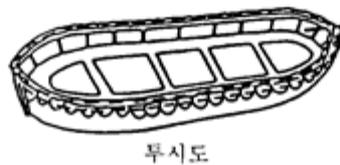


그림 3

2. 구명뗏목

가. 원형의 구명뗏목(그림 4 참조)

- (1) 너비 5센티미터의 역반사재를 천막의 정부 및 바닥의 이면에 십자(+)형으로 부착할 것. 이 경우 십자의 크기는 지름의 1/2로 한다.
- (2) 너비 5센티미터 이상, 면적 1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역반사재를 기실과 천막 정부와의 중간높이에 80센티미터의 중심간격으로 부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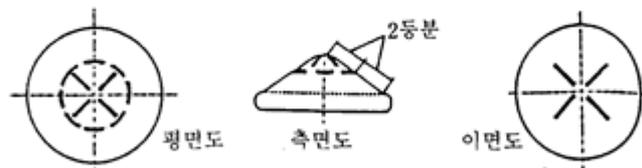


그림 4

나. 타원형의 구명뗏목(그림 5 참조)

- (1) 너비 5센티미터 이상의 역반사재를 천막의 정부 및 바닥의 이면에 십자(+)형으로 부착할 것. 이 경우 십자의 크기는 타원형의 긴 지름 및 짧은

지름의 각 1/2로 한다.

- (2) 너비 5센티미터 이상, 면적 1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역반사재를 기실과 천막 정부와의 중간높이에 80센티미터의 중심간격으로 부착할 것



그림 5

다. 사각형의 구멍뿔목(그림 6 참조)

- (1) 너비 5센티미터 이상의 역반사재를 천막의 정부 및 바닥의 이면에 십자 (+)형으로 부착할 것. 이 경우 십자의 크기는 긴 변의 길이의 1/2로 한다.
- (2) 너비 5센티미터 이상, 면적 1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역반사재를 기실과 천막 정부와의 중간높이에 80센티미터의 중심간격으로 부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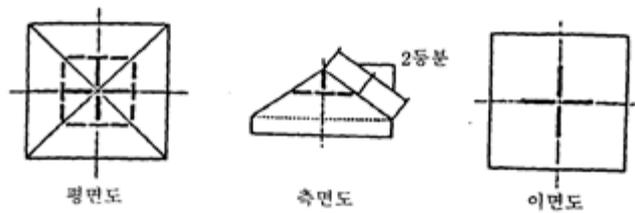


그림 6

3. 구멍부기(그림 7 참조)

- 너비 5센티미터 이상, 면적 1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역반사재를 구멍부기의 상면·하면 및 측면의 상하에 80센티미터의 중심간격으로 부착할 것



그림 7

4. 구조정(구멍정을 구조정으로 비치하는 경우에는 구멍정에 준하여 부착할 것)

가. 평창식구조정(그림 8 참조)

- (1) 역반사재(너비 5센티미터 이상, 면적 1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외측의 홀수선상부의 적절한 위치 및 각 기실 정부에 80센티미터의 중심간격으로 부착할 것
- (2) 역반사재를 선수덩개에 십자(+)형으로 부착할 것
- (3) 자동으로 복원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역반사재를 선저에 80센티미터의 중심간격으로 부착할 것(그림 1의 선저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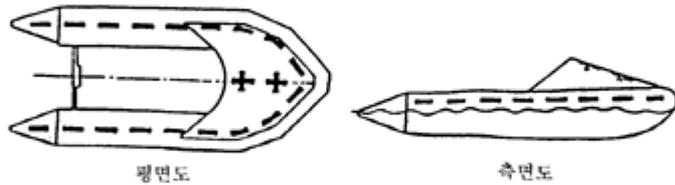


그림 8

나. 고체식구조정(그림 9 참조)

- (1) 역반사재를 가능한 한 현단에 가까운 선측과 현단의 거널상면에 80센티미터의 중심간격으로 부착할 것
- (2) 역반사재를 선수덩개에 십자(+)형으로 부착할 것
- (3) 자동으로 복원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역반사재를 선저에 80센티미터의 중심간격으로 부착할 것(그림 1의 선저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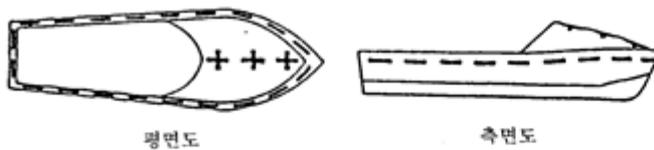


그림 9

다. 복합식구조정

평창식 또는 고체식구조정의 부착방법을 준용한다.

5. 구멍부환(그림 10 참조)

너비 5센티미터의 역반사재를 구멍부환의 4개소에 같은 간격으로 주위에 감아 붙이거나 또는 양면에 부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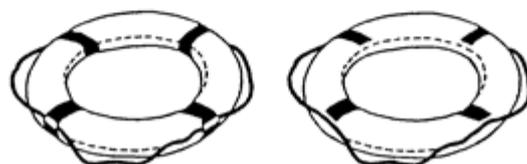


그림 10

6. 구명조끼(그림 11 참조)<개정 2014.12.24>

적절한 크기의 역반사재를 가능한 한 구명조끼의 상부에 분배하여 부착할 것. 이 경우 각 역반사재의 합계면적은 4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24>



그림 11

7. 방수복(그림 12 참조)

너비 5센티미터 이상의 역반사재를 머리부분·가슴부분·어깨부분·팔꿈치 부분 및 무릎부분에 부착할 것. 이 경우 각 역반사재의 합계면적은 4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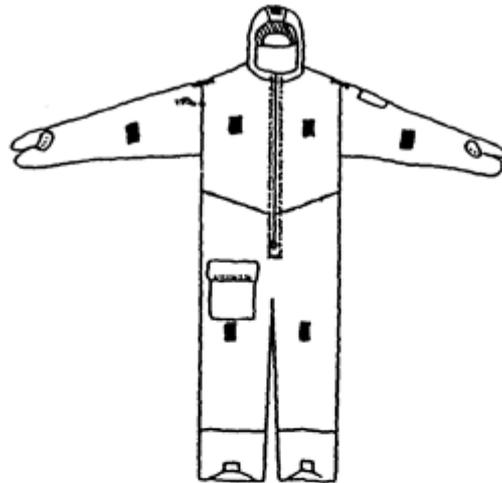


그림 12

8. 구명뗏목지원정(그림 13 참조)

가. 150밀리미터×50밀리미터의 역반사재를 외측의 흘수선상의 적절한 위치에 500밀리미터의 간격으로 부착할 것

나. 600밀리미터×50밀리미터의 역반사재와 150밀리미터×50밀리미터의 역반사재를 화살촉형으로 하여 선수에 부착할 것

다. 150밀리미터×100밀리미터의 역반사재를 흘수선상의 선미판에 수직으로

부착할 것

- 라. 150밀리미터×50밀리미터의 역반사재를 각 플로트를 가로질러서 500밀리미터의 간격으로 부착하고, 300밀리미터×50밀리미터의 역반사재를 각 플로트의 후부에 1매씩 부착할 것
- 마. 300밀리미터×50밀리미터의 역반사재를 선수의 덮개의 양현에 십자(+)형으로 부착할 것
- 바. 300밀리미터×50밀리미터의 역반사재를 보트바닥의 용골의 각 현측에 500밀리미터의 간격으로 부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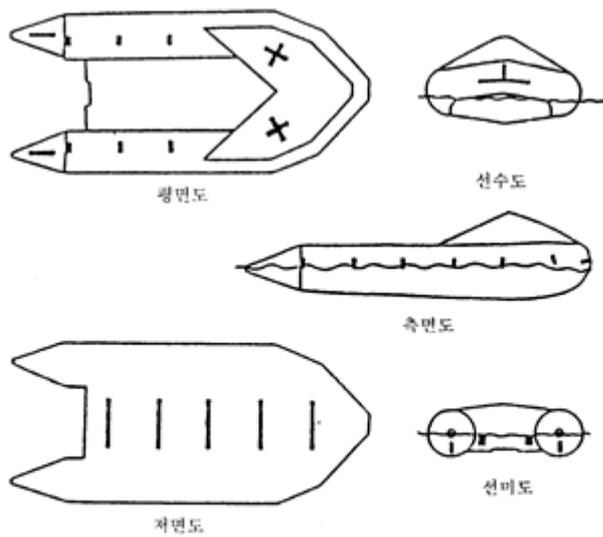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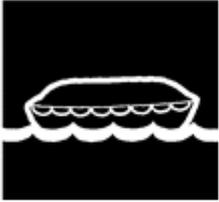
[별표 12] 구명기구 및 신호장치의 표시사항(제126조제2항 관련) <개정 2019. 05. 31>

구명설비의종류	표시사항
구명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원 2. 선명 및 선적항
평창식구명뗏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자명 또는 상표 2. 제조번호 3. 제조연월 4. 승인기관명 5. 최종정비업체명 및 장소(최초의 것을 제외한다) 6. 정원
평창식구명뗏목의 컨테이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자명 또는 상표 2. 제조번호 3. 승인기관명 및 정원 4. SOLAS ; (국제항해선박에 비치하는 것에 한한다) 5. 의장품포장형식(국제항해선박에 비치하는 것에 한한다) 6. 최종정비일자 7. 페인터의 길이 8. 185kg을 초과하는 경우, 컨테이너 및 의장품을 포함한 구명뗏목의 무게<신설 2009.4.10> 9. 투하시험의 높이<개정 2009.4.10> 10. 진수방법<개정 2009.4.10> 11. 선명<개정 2005.1.13. ><개정 2009.4.10>
고체식구명뗏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명 및 선적항 2. 제조자명 또는 상표 3. 제조번호 4. 승인기관명 5. 정원 6. SOLAS ; (국제항해선박에 비치하는 것에 한한다) 7. 의장품포장형식(국제항해선박에 비치하는 것에 한한다) 8. 페인터의 길이 9. 투하시험의 높이 10. 진수방법
구명부기 법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원 2. 선명 및 선적항 3. 중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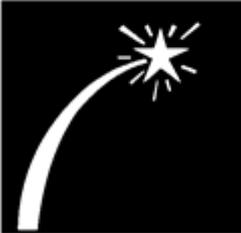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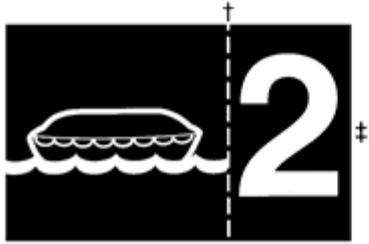
구명설비의 종류	표시 사항
	4. 투하시험의 높이 5. 제조년월 6. 제조번호 7. 제조자명
구 조 정	1. 정원 2. 선명 및 선적항 3. 제조번호(고체식일반구조정을 제외한다) 4. 제조자명 또는 상호(고체식일반구조정을 제외한다) 5. 제조연월(고체식일반구조정을 제외한다)
구 명 부 환	1. 선명 및 선적항 2. 투하시험의 높이
구 명 조 끼	1. 선명 및 선적항 2. 착용하는 어린이 또는 유아의 신장 및 체중의 범위(어린이용 또는 유아용 구명조끼에 한한다)<개정 2014.12.24.> <개정 2019. 05. 31>
구 명 뗏 목 지 원 정	1. 주요치수 2. 정원 3. 선명 및 선적항 4. 제조연월 5. 제조번호 6. 제조자명
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	1. 투하시험의 높이 2. 제조연월 3. 제조자명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및 발연부신호	1. 제조연월 2. 제조자명
강하식탑승장치	1. 제조자명 또는 상표 2. 제조번호 3. 제조연월 4. 승인기관명 5. 최종정비업체명, 장소 및 일자(최초의 것을 제외한다) 6. 장치의 수용능력
강하식탑승장치의 컨테이너 법제처	1. 제조자명 또는 상표 2. 제조번호 3. 승인기관명 및 장치의 수용능력 4. SOLAS : (국제항해선박에 비치하는 것에 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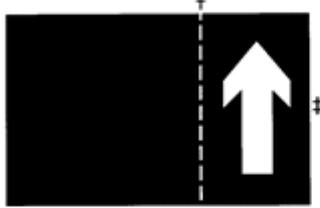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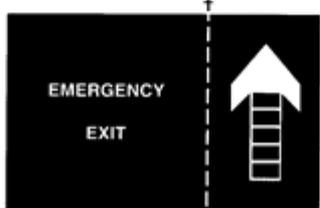
구명설비의 종류	표시 사항
	5. 제조연월 6. 최종정비일 및 장소 7. 탑재해야 할 위치의 수면상의 높이 8. 탑재해야 할 장소
<p>비고 :</p> <p>1. 구명뗏목지원정의 주요치수의 정의는 다음 각 목에 의한다.</p> <p>가. 금속제의 정체를 가지는 것</p> <p>(1) 길이 : 선수재의 외판의 내면에서 선미재의 외판의 내면(방향선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선미횡판의 내면)까지의 수평거리(미터)</p> <p>(2) 너비 : 정체의 가장 넓은 곳에서 외판의 내면에서 내면까지의 수평거리(미터)</p> <p>(3) 깊이 : 구명정의 길이의 중앙에서 용골상면에서 현단까지의 수직거리(미터)</p> <p>나. 가목이외의 것</p> <p>(1) 길이 : 선수재의 외판의 외면에서 선미재의 외판의 외면(방향선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선미횡판의 외면)까지의 수평거리(미터)</p> <p>(2) 너비 : 정체의 가장 넓은 곳에서 외판의 외면에서 외면까지의 수평거리(미터)</p> <p>(3) 깊이 : 가목 (3)에 의한 깊이</p> <p>2. 구명뗏목의 진수방법에 대하여는 “진수장치용” 또는 “투하식”의 구분으로 기재한다.</p>	

[별표 13] 구명설비의 보관장소를 나타내는 표시(제127조제3항 관련) <개정 2016. 3. 9>

항 목	표 시	비 고
1. 구 명 정		1. 크기는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로 할 것 2.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시할 것
2. 구 조 정		제1호의 비고 1. 및 2. 참조
3. 구명뗏목		제1호의 비고 1. 및 2. 참조
4. 대빛진수장 치용구명뗏목		제1호의 비고 1. 및 2. 참조
5. 탑승용사다리		제1호의 비고 1. 및 2. 참조
6. 강하식탑승장 치		제1호의 비고 1. 및 2. 참조
7. 구명부환		제1호의 비고 1. 및 2. 참조

항 목	표 시	비 고
8. 구명줄불이 구명부환		제1호의 비교 1. 및 2. 참조
9. 자기점화등 불이구명부환		제1호의 비교 1. 및 2. 참조
10. 자기점 화등 및 자 기발연신호불 이구명부환		제1호의 비교 1. 및 2. 참조
11. 구명조끼 <개정 2014.12.24>		제1호의 비교 1. 및 2. 참조
12. 어린이 용구명조끼 < 개 정 2014.12.24>		제1호의 비교 1. 및 2. 참조
13. 방 수 복		제1호의 비교 1. 및 2. 참조
14. 생존경용 휴대식무선장 치		제1호의 비교 1. 및 2. 참조

항 목	표 시	비 고
15. 위성비상 위치지시용무 선표지설비		제1호의 비고 1. 및 2. 참조
16. 레이더트 랜스폰더		제1호의 비고 1. 및 2. 참조
17. 생존정 용신호홍염		제1호의 비고 1. 및 2. 참조
18. 로켓낙 하산신호		제1호의 비고 1. 및 2. 참조
19. 구명줄발사 기		제1호의 비고 1. 및 2. 참조
20. 소집장소		1. 크기는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로 할 것 2.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시할 것 3. 소집장소의 글자는 표시의 오른 쪽에 표기할 것
21. 승정장소		1. 제20호의 비고 1. 및 2. 참조 2. 생존정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표시를 할 것 3. 승정장소의 번호는 표시의 오른 쪽에 표기할 것

항 목	표 시	비 고
22. 방향표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0호의 비교 1. 및 2. 참조 2. 화살표의 왼쪽에 해당 표시와 함께 사용할 것 3. 화살표는 해당설비의 보관장소, 소집장소 또는 승정장소의 방향을 가리킬 것
23. 비상구표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0호의 비교 1. 및 2. 참조 2. 화살표는 해당설비의 보관장소, 소집장소 또는 승정장소의 방향을 가리킬 것
24. 출입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크기는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로 할 것 2.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시할 것 3. 화살표는 해당설비의 보관장소, 소집장소 또는 승정장소의 방향을 가리킬 것
25. 비상출입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0호의 비교 1. 및 2. 참조 2. 화살표는 해당설비의 보관장소, 소집장소 또는 승정장소의 방향을 가리킬 것

[별표 14] 평창식구명뗏목등의 정비기준(제129조제3항 관련)<개정 2011. 12. 15> <개정 2014. 05. 28> <개정 2016. 3. 9>

I. 평창식구명뗏목 및 평창식구명부기

1. 외관점검

가. 컨테이너에 격납되어 있는 상태로 외부를 점검한 후 격납대에 들어있는 상태로 평창식구명뗏목 및 평창식구명부기(이하 “뗏목등”이라 한다)를 들어내어 컨테이너내부의 습기의 흔적 및 격납대의 외부를 점검하고 표시사항, 격납대의 이상유무 및 격납상태의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나. 뗏목등의 본체를 펼쳐 수분 및 기름기가 적은 압축공기(이하 “압축공기”라 한다)를 주입하여 주기실의 내부압력을 제조사양서의 사용압력으로 조정(제조사양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평창용 가스용기에 충전된 양만큼의 압축가스를 주입한다. 이하 같다)하고 다음 표에 의하여 각부 재질의 열화(劣化), 오염, 파손, 접촉부의 떨어짐, 금속부의 부식상태와 표시사항의 선명도등에 대하여 점검한다.

점 검 개 소	점 검 내 용
1. 주기실	변질, 갈라짐, 잘라짐, 닳아짐, 벗겨져 떨어짐
2. 바닥기실	변질, 갈라짐, 잘라짐, 닳아짐, 벗겨져 떨어짐
3. 탑승대	변질, 잘라짐, 더러워짐
4. 사다리	변질, 잘라짐, 닳아짐
5. 물주머니	변질, 갈라짐, 잘라짐, 닳아짐
6. 가스충기장치	녹슬음, 나사의 조임, 용기표시의 선명도
7. 가스용기커버	변질, 잘라짐
8. 가스용기받침	변질, 갈라짐, 잘라짐, 닳아짐, 벗겨져 떨어짐
9. 안·팍 돌레의 구멍줄	변질, 잘라짐, 닳아짐
10. 띠줄(Belt Line)	변질, 잘라짐, 닳아짐
11. 페인터	변질, 잘라짐, 더러워짐, 길이
12. 작동줄	변질, 갈라짐, 더러워짐, 녹슬음
13. 자동줄	변질, 잘라짐, 더러워짐, 길이
14. 폴(진수장치용에 한함)	변질, 잘라짐, 더러워짐
15. 각종 패치류	변질, 잘라짐, 닳아짐, 벗겨져 떨어짐
16. 천막(빗물채취장치포함)	변질, 잘라짐, 닳아짐
17. 역반사재	변질, 잘라짐, 닳아짐, 벗겨져 떨어짐

점 검 개 소	점 검 내 용
18. 감시창	변질, 갈라짐, 잘라짐
19. 전지, 전구, 전선등	파손, 변질, 절연불량, 점등상태, 전지유효기간
20. 충기펌프 또는 풀무	변질, 갈라짐, 닳아짐, 작동상태
21.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 신장치수납대 <개정 2009.4.10><개정 2016. 3. 9>	변질, 갈라짐, 닳아짐, 떨어짐
22. 의장품수납대	변질, 갈라짐, 잘라짐, 닳아짐
23. 뗏목격납대	변질, 갈라짐, 잘라짐, 닳아짐, 더러워짐
24. 컨테이너	파손, 변질, 갈라짐, 빗물 빠지는 상태

2. 사용압력시험

가. 사용압력시험은 옥내의 평평한 바닥위에서 행하고 가능한 한 온도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나. 제조후 9년까지의 점검·정비시(다만, 5년째는 제외한다)에는 뗏목등에 압축공기를 주입하여 각 기실의 시험압력을 제조사양서의 사용압력으로 조정한 다음 1시간이 경과한 후 다음에 의한 기온 및 기압의 변화에 대한 보정을 행하여 각 기실의 내부압력이 시험압력의 95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9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여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 처분한다.

(1) 기온 섭씨1도 상승 : 측정치에서 3mmHg(41mmAq)를 뺀다.

(2) 기온 섭씨1도 하강 : 측정치에서 3mmHg(41mmAq)를 더한다.

(3) 기압 1mmHg(13.6mmAq) 상승 : 측정치에서 1mmHg (13.6mmAq)를 더한다.

(4) 기압 1mmHg(13.6mmAq) 하강 : 측정치에서 1mmHg (13.6mmAq)를 뺀다.

다. 누설시험에 사용하는 마노미터는 수은주마노미터, 물마노미터 또는 지시형

혈압계로 하고 계량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고 검정에 합격한 것일 것

3. 가스팽창시험

가. 제조후 매 5년마다의 점검·정비시에는 뗏목등의 팽창용작동줄을 당겨 가스팽창을 시킨 다음 뗏목등의 주기실(상기실 및 하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압력이 충분히 안정된 때(이산화탄소 입자가 소멸된 때를 말한다)까

지 놓아둔 후 주기실의 내부압력이 제조사양서의 설계압력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상태로 1시간이 경과한 후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온 및 기압의 변화에 대한 보정을 행하여 내부압력이 설계압력의 95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9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여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 처분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행한 후 가스용기에 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정한 기준(가스의 종류 및 중량)에 따라 가스를 충전하여야 한다.

4. 안전밸브 효력시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뗏목등에 대하여는 안전밸브의 효력시험을 한다. 이 경우 주기실에 압축공기를 주입하여 안전밸브가 열릴 때의 내부압력과 공기주입을 중단한 후 안전밸브가 닫힐 때의 내부압력을 측정하여 각각의 압력이 제조사양서의 설계압력범위(제조사양서가 없는 경우 안전밸브의 열림압력은 사용압력의 1.1배 내지 1.6배의 범위, 닫힘압력은 사용압력의 1.0배 내지 1.6배의 범위)내에 있음을 확인한다.

5. 가스충기장치의 점검 및 교환

가스충기장치를 뗏목등의 본체에서 떼어내고 커트밸브장치, 연결쇠붙이 및 가스용기등으로 각각 분해하여 다음 각 목의 점검을 행한다.

가. 커트밸브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하고 격침핀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할 것

나. 연결쇠붙이(역지밸브를 포함한다)에 대한 부식·열화(劣化)와 밸브본체의 변형등을 점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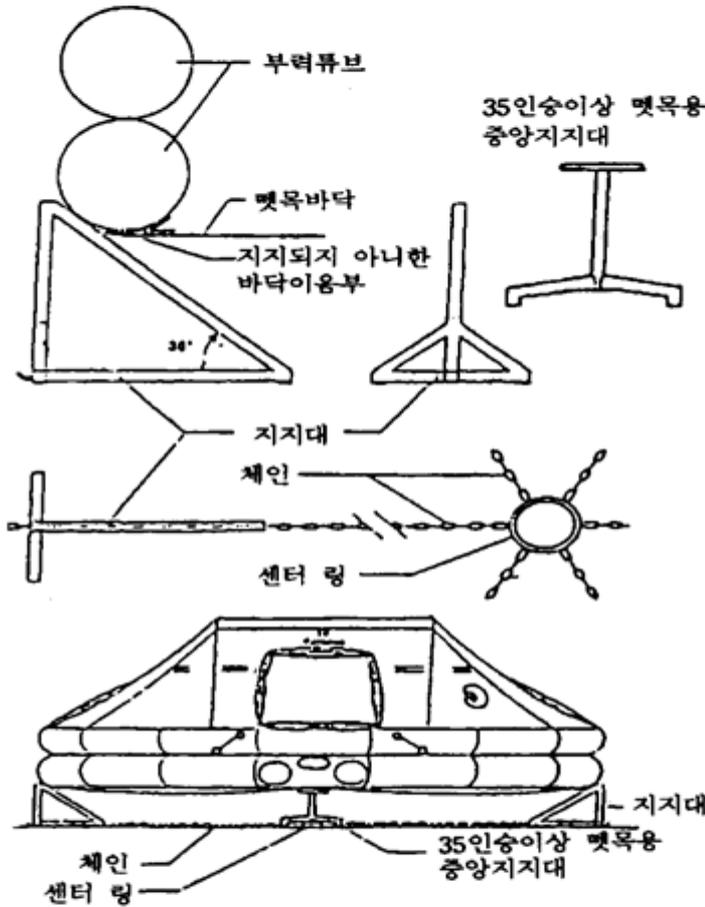
다. 가스용기의 질량을 측정하여 표시질량보다 감소되지 아니한 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사용되는 저울은 측정범위 20킬로그램정도의 것으로서 계량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고 검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기내 가스질량과 표시질량과의 차가 측정오차(저울의 오차와 사용공차의 합계의 값을 말한다)이내인 경우에는 가스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라. 가스용기의 표시상태가 불분명한 것, 손상이 있는 것 또는 심하게 녹슬은 것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할 것

6. 바닥이음부시험

가. 제조후 10년부터의 점검·정비시에는 뗏목 등에 압축공기를 주입하여 각 기실의 내부압력을 제조사양서의 사용압력으로 조정한 후 뗏목 등을 바닥

상부의 적절한 높이에 다음 그림에 따른 요령으로 지지한 후 체중 82.5킬로그램 이상인 사람이 직접 바닥기실의 전주위를 걸거나 기어다니면서 천막포, 상·하 주기실의 이음부, 주기실과 바닥기실의 이음부 및 그 주변을 점검하여 보강테이프의 구겨짐, 닳아짐, 떨어짐 등 열화(劣化)의 징후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다만, 이 방법과 다른 바닥이음부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자의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 차기검사일까지는 그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바닥이음부시험을 위한 뗏목지지요령

나. 진수장치용제1종평창식구명뗏목의 바닥이음부시험(제조후 매 2년마다의 점검·정비 시에 한한다. 이 경우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한다)은 구명뗏목의 각 기실에 안전밸브가 열릴 때까지 압축공기를 주입하여 안전밸브가 열리면 공기주입을 중단하고 각 기실의 안전밸브가 닫혀진 후 마개로 막은 다음 바닥기실 위에 정원 및 의장품(가스용기를 포함한다)의 합계중량의 1.1배에 상당하는 하중을 균등하게 탑재한 후 진수장치로 진수하여 하중이 걸린 상태와 하중을 제거한 상태에서 천막포, 상·하주기실의 이음부, 주기실과 바닥기실의 이음부 및 그 주변을 점검하여 보강테이프의 구겨짐, 닳아짐, 떨어짐 등 열화(劣化)의 징후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인한다.

7. 필수추가압력시험

가. 제조후 11년부터의 점검·정비시(다만, 외관검사결과 상태가 불량하여 조기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는 뗏목 등에 압축공기를 주입하여 각 기실의 내부압력을 제조사양서의 사용압력의 2배의 압력 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압력중 작은 압력으로 조정(바닥 기실의 경우에는 제조사양서의 사용압력으로 한다)하여 5분이 경과한 후 이음부의 떨어짐, 파열, 국부팽창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각 기실 내부압력은 95퍼센트이어야 하고, 9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여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 처분한다.

$$\text{압력(kg/cm}^2\text{)} = \frac{2 \times \text{인장강도 (kg/5cm)}}{25 \times \text{직경 (센티미터)}}$$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뗏목등에 대하여 각 기실의 시험압력을 제조사양서의 사용압력으로 재조정하여 각 기실이 충분히 팽창된 다음 1시간이 경과한 후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온 및 기압의 변화에 대한 보정을 행하여 각 기실의 내부압력이 시험압력의 95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9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여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 처분한다.

8. 탑승대의 기능시험

압축공기를 주입하여 탑승대의 기실의 내부압력을 제조사양서의 사용압력으로 조정하여 30분이 경과한 후 내부압력이 제조사양서의 설계압력 범위내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9. 투하팽창시험

여객선에 탑재되어 있는 뗏목 등을 점검·정비하는 경우에는 그 점검·정비에 앞서 적절한 1개(10개 이상의 뗏목을 탑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현 1개)에 대하여 투하팽창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위치, 기상, 해상상태 기타 작업조건 등의 사정상 투하팽창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7.18>

10. 자동이탈기

가. 자동이탈기의 외부를 점검하여 부식, 녹슬음 및 작동부의 고착 등의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개정 2014. 05. 28>

나. 자동이탈기의 혹에 하중(5킬로그램 및 200킬로그램)을 가한 상태로 수심에 상당하는 압력(2.0미터 내지 4.0미터의 수심에 상당하는 압력을 표준으로 한다)을 다이어프램에 가하여 설정수심의 압력에서 작동하는가를 확인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있는 일회용 자동이탈기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작동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05. 28>

다. 나목의 규정에 따라 첫 번째 시험에서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자동이탈기를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05. 28>

11. 수리의 방법

수리는 제조자의 정비기준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12. 내압을 받는 부분의 수리

주기실·바닥기실 및 천막지주기실등 기밀을 요하는 부분에 찢긴 홈, 관통구멍 및 떨어진 홈 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수리를 하여야 한다.

- (1) 패칭수리에 사용하는 패칭조각은 수리개소와 동등한 재료의 것일 것
- (2) 패칭조각은 손상부분의 주위보다 30밀리미터 이상 큰 것일 것
- (3) 큰 손상에 대하여는 이면땜 및 이중땜등 적절한 보강수단을 강구할 것
- (4) 다음의 경우에는 패널전체를 교환할 것
 - (가) 손상이 기실의 2패널에 걸쳐 있는 경우
 - (나) 손상이 주기실 패널과 바닥기실에 걸쳐 있는 경우
 - (다) 손상이 상·하주기실의 패널에 걸쳐 있는 경우
 - (라) 굽힌 홈으로서 1변의 길이가 20센티미터 이상인 패널의 경우
 - (마) 직선상의 찢어진 홈으로서 길이가 30센티미터 이상인 패널의 경우
 - (바)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패치가 3개 이상인 패널의 경우
 - (사) 전면적으로 누설이 생긴 패널의 경우
- (5) 수리 종료후 20시간이상 방치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압력시험을 행할 것

13. 격납대·천막 및 구명줄 등의 수리

가. 격납대 및 천막의 수리는 기실의 수리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행하여야 된다. 다만, 이면땜 및 이중땜 등의 보강수단은 강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나. 구명줄등 끈 종류로서 손상이 있는 것은 적절한 동일 종류의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한 것은 수리후 적절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육안으로 점검하여 떨어짐이나 빠짐등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된다.

14. 가스충기장치 기타 금속부품의 수리

- 가. 가스충기장치의 부품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나. 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중량을 계측한 결과 가스량이 표시중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스를 재충전하거나 용기를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기가 심하게 부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압시험(200Kg/cm²이상의 압력으로 행할 것)을 하여 부적합한 것은 새로운 용기로 교환하여야 된다.
- 다.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섭씨45±2도의 온수속에 40분간 담근 후 가스누설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 라. 뗏목등에 부착된 금속부품류로서 부식되거나 녹슬은 것은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방청페인트칠을 하거나 또는 떼어내어 산세척을 한 다음 도금을 하여야 되며, 부식정도가 심한 것은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여야 된다.
- 마. 자동이탈기가 제10호나목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식 및 녹슬음 등이 심한 것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된다. <개정 2014. 05. 28>

15. 줄 및 쇠붙이장치류 등 부착부의 수리

줄 및 쇠붙이장치류 등의 본체 부착부분의 손상은 접착이 되도록 이를 수리하고 파손된 것은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여 적절한 시간이 경과한 후 점검을 하여야 된다.

16. 의장품의 수리등

수납대로부터 의장품을 들어내어 품질·성능이 열화(劣化)된 것, 차기 정비일 자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 모자라는 품목 등은 이를 정비, 보충 및 교환하고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의한 의장품이 품목대로 비치되었음을 확인한 후 의장품목록과 함께(또는 수납대에 표시) 이를 수납대에 수납한다.<개정 2016. 3. 9>

17. 최종점검 및 탑재점검

- 가. 정비를 완료한 뗏목등에 대하여는 가스용기의 무게, 가스충기장치의 부착 상태, 보충밸브의 폐쇄, 의장품의 수납 및 각부의 표시사항 등을 확인한 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컨테이너에 격납하고 봉인을 하여야 하며, 수송중 손상방지를 위하여 나무상자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 나. 정비를 완료한 후 구명뗏목의 총질량이 185킬로그램(진수장치용제1종평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이하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해당선박에 적합한 방법으로 탑재하고 작동줄·래싱밴드 및 자동이탈장치
의 부착상태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8. 정비기록의 작성 등

가. 정비자(수리 또는 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창식구명뗏목등정비기록 3부, 별지 제5호서식의 평창식구명뗏목의장품검사기록 3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기실시험성적서 2부를 작성하여 평창식구명뗏목등정비기록 1부 및 평창식구명뗏목의장품검사기록 1부는 선박소유자에게 교부하고, 평창식구명뗏목등정비기록·평창식구명뗏목의장품검사기록 및 기실시험성적서 각 1부는 해양수산부장관(대형검사기관에서 선박검사를 받는 선박은 대형검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각 1부는 정비자가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8> <개정 2014. 05. 28> <개정 2014. 12. 24>

나. 정비자는 정비과정에서 기실 충전 후 평창된 전체 모습(선명 포함), 제6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진수장치로 진수한 상태, CO2 실린더의 중량 측정, 주요부품의 부적합한 상태 등 주요공정과 제17호다목에 따른 선박 탑재상태(자동이탈기 포함)를 사진으로 찍어 5년간 보관하고, 선박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05. 28>

II. 강하식탑승장치

1. 선상점검

가. 강하식탑승장치의 본체가 격납장치에 양호한 상태로 격납되어 있는가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격납장치 각부의 부식, 녹슬음, 이물의 부착, 볼트·너트·핀 등의 느슨해짐 및 탈락 등의 유무를 점검한다.

나. 투하평창시험

탑승장치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 수동조작 또는 원격조작(본선에 비치된 것을 사용)에 의하여 최소한 6년에 1회 투하(탑승장치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매 6년마다 순환하여 투하)하고 3분 이내에 정상적인 상태로 평창하는가를 확인하고, 내압이 제조사양서의 설계압력 내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다만, 선박의 위치, 기상, 해상상태 기타 작업조건 등의 사정상 투하평창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3, 2005.7.21, 2008.7.18>

다. 격납장치의 작동시험

투하평창시험을 하지 아니한 탑승장치에 대하여 격납장치로부터 탑승장치 본체를 들어내든가 또는 투하평창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격납장치의 작동시험을 행하여 각부가 원활하게 작동되는가를 확인한다(원격조작방식에 의하는 것은 수동조작에 대하여도 작동시험을 행한다). 이 경우 하중을 걸지 아니하면 작동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탑승장치의 질량이하로 부하를 걸어 시험할 수 있으며, 선상에서 작동시험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가대 및 격납장치를 선상에서 떼어내어 육상정비장소에서 시험할 수 있다.

2. 정비장소에서의 점검

가. 탑승장치본체의 내압시험 및 점검

격납장치에서 꺼낸 탑승장치본체에 대하여 빗물의 영향, 내용물의 닳아짐 여부 및 접합·부착부 등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외관점검을 한 후 탑승장치를 제조사양서의 최고사용압력으로 평창시켜 내압시험(10분간 방치후 내부압력이 2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등의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후 다음 표에 의하여 각부 재질의 열화(劣化), 오염, 파손, 접합부의 벗겨짐, 솔기의 풀림, 금속부의 부식 및 표시사항의 선명도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리한다.

점 검 개 소	점 검 내 용
1. 기실(강하로 및 플랫폼)	변질, 갈라짐, 잘라짐, 닳아짐, 벗겨져 떨어짐
2. 미끄럼 직물 가. 고무직물의 경우 나. 직물의 경우	변질, 갈라짐, 잘라짐, 닳아짐, 벗겨져 떨어짐 변질, 갈라짐, 잘라짐, 보푸라기 일어남, 헤짐
3. 바닥·천막·격납대 등	변질, 갈라짐, 잘라짐, 닳아짐, 더러워짐
4. 가스충기장치	녹슬음, 나사의 조임, 용기표시의 선명도
5. 가스용기커버	변질, 갈라짐
6. 가스용기받침	변질, 갈라짐, 잘라짐, 닳아짐, 벗겨져 떨어짐
7. 가죽손잡이 기타색구	변질, 잘라짐, 닳아짐
8. 계류장치줄	변질, 잘라짐, 닳아짐
9. 각종패치류	변질, 갈라짐, 잘라짐, 닳아짐, 벗겨져 떨어짐
10. 와이어·로프 등	변질, 닳아짐, 더러워짐, 녹슬음
11. 전지, 전구, 전선 등	변질, 파손, 절연불량, 점등상태, 전지유효기간

나. 가스충기장치의 점검

가스충기장치를 탑승장치본체에서 떼어내고 밸브장치·도관·연결쇠불이 및 _____
 법제처 98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스용기의 각각에 대하여 다음에 의한 점검을 행한다.

(가) 밸브장치의 작동상태

(나) 도관 및 접속부의 부식, 열화(劣化), 변형 및 나사부의 손상 등

(다) 연결쇠붙이(역지밸브 포함)의 부식, 열화(劣化), 밸브본체의 변형 및 나사부의 손상 등

(라) 가스용기의 질량측정

표시질량보다 감소되지 아니한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저울은 가스실린더 무게에 상당하는 정도의 것으로서 계량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고 검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용기내 가스질량과 표시질량과의 차가 측정오차(저울의 오차와 사용공차의 합계의 값을 말한다)이내인 경우에는 가스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마) 가스용기의 표시상태가 불분명한 것, 손상이 있는 것 또는 심하게 녹슬은 것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된다.

다. 기실누설시험

투하평창시험을 한 탑승장치, 제조후 10년이상 경과한 탑승장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 결과 내부압력이 2퍼센트 이상 감소한 탑승장치, 외관 점검 및 내압시험 결과 기실을 수리한 탑승장치 기타 기실누설의 의심이 있는 탑승장치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최고사용내압을 가하고 10분간 방치하여 내압이 2퍼센트이상 감소하는 등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을 다시 행하고 기실누설시험(기실내압을 표준사용내압보다 약간 높게 하여 30분간 방치하고 표준사용내압으로 재조정후 30분간 방치하여 이 기준 I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온 및 기압의 변화에 대한 보정을 행하여 누설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을 행한다. 이 경우 내압시험에서 내압이 5퍼센트이상 감소한 것에 대하여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라. 수납점검

정비자가 탑승장치를 수납하는 때에는 다음 항목을 점검한다.

(가) 가스용기가 당해 탑승장치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방청도장이 실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나) 가스충기장치의 취부상태

(다) 보조공기변의 폐쇄상태

(라) 줄의 취부상태

3. 격납·운반 및 적재상태확인

정비자는 수납점검을 완료한 탑승장치의 수납상태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또한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취급에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수송중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나무상자등에 포장하여 수송하고 제조자의 정비요령서에 따라 소정의 위치에 당해 선박에 적합한 방법으로 탑재한 후 탑재상태를 확인한다.

4. 정비기록의 작성 등

정비자가 탑승장치의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강하식탑승장치정비기록 3부를 작성하여 선박소유자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1부씩 제출하고 1부는 정비자가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7.18>

[별표 15] 구명정, 구조정, 진수설비 및 이탈장치의 시험 및 점검항목과 방법
(제130조 제2항 관련)

1. 적용대상 설비

- 1.1. 구명정(자유강하식구명정 포함), 구조정, 고속구조정
- 1.2. 구명정, 구조정, 고속구조정 및 진수장치용 구명뗏목의 진수장치(자유강하식구명정의 진수장치와 보조진수장치 포함)와 이탈장치(부하 및 무부하 상태 이탈장치를 말한다)

2. 점검기록의 작성 등

- 2.1 1.에서 언급하고 있는 설비의 사용 기간 동안 정비, 상세검사, 작동시험, 분해검사 및 수리에 관한 기록들을 본선에 보관하고 최신화하여야 함
- 2.2 매 12월마다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시 상세검사, 작동시험, 분해검사, 수리가 완료되면, 해당 작업을 수행한 제조사 또는 정비업체는 설비의 사용 유효성을 보장하는 적합확인서 및 정비기록(별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 서식) 3부를 작성하여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의 확인을 거쳐 서명날인한 후 1부는 선박소유자에게, 1부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나머지 1부는 점검 및 정비자가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또한 적합확인서와 함께 정비를 시행한 업체 및 정비자에 대한 적절한 인증서류 복사본이 본선에 비치되어야 함

3. 점검 항목

3.1. 주간검사

- 3.1.1. 모든 생존정, 구조정 그리고 진수설비가 사용준비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육안검사 (혹과 구명정에 연결되는 부분, 부하상태이탈장치의 장착 상태 포함)
- 3.1.2. 구명정과 구조정의 모든 엔진의 3분 이상 작동 상태 (기어박스 및 기어장치 연동 확인) 단, 구조정에 붙어 있는 선외 발동기의 특성상 프로펠러가 물속에 잠긴 상태가 아니고서는 3분간의 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물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 1986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면제 가능 함
- 3.1.3 자유강하식구명정을 제외한 화물선의 구명정은 날씨와 해상상태가 허락된다면 승선인원 없이 적재 위치로부터 진수장치가 만족스럽게 작동한다

는 것을 시험할 수 있는 범위까지 움직여 보아야 함

3.2. 월간검사

3.2.1. 자유강하식구명정을 제외한 모든 구명정은 날씨와 해상상태가 허락된다면 승선인원 없이 적재 위치로부터 밖으로 향하도록 움직여 보아야 함

3.2.1. 구명정의 의장품을 포함한 구명설비의 검사가 제132조에서 규정하는 점검표를 사용하여 완전하고 작동 가능한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

3.3. 연차 상세점검 및 작동시험

3.3.1 3.에서 규정하는 주간/월간 검사 항목이 연차 점검의 일부로 시행되어야 함

3.3.2 본선 선원이 시행한 일상 점검 기록과 해당 설비의 증서가 검토되어야 함

3.3.3 자유강하식구명정을 포함한 구명정, 구조정, 고속구조정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점검 및 상태 확인을 할 것

가. 고정식 및 부속 장비들을 포함한 구명정/구조정 등의 선체구조 상태(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보이드 스페이스 외부 경계면에 대한 육안 검사를 포함)

나. 엔진 및 추진시스템

다. 스프링클러시스템 (해당되는 경우)

라. 공기공급시스템 (해당되는 경우)

마. 조타시스템

바. 전원공급시스템

사. 배수시스템

아. 펜더/스케이트 배치

자. 구조정 복원시스템 (해당되는 경우)

3.3.4. 자유강하식구명정을 포함한 구명정, 구조정, 고속구조정 및 구명뗏목의 이탈장치(Release gear)는 승선인원이 없는 보트 자체 총량 또는 이와 동등한 총량으로 원치브레이크에 대한 연차 작동시험을 시행한 후 다음 사항에 대한 상태를 면밀히 확인:

가. 이탈장치가 작동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나. 허용오차를 벗어난 과도한 움직임 확인

다. 수압연동장치(Hydrostatic interlock system) 작동상태 확인 (해당되는 경우)

라. 조정 및 이탈에 사용되는 케이블 점검
법제처

마. 혹 고정장치 점검

3.3.5 진수장치용 구명정과 구조정의 부하이탈장치 작동시험(On-load release function)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어야 함;

- 가. 보트 무게가 풀과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의 수압연동장치(설치된 경우에 한함)에 의하여 지지될 수 있도록 보트의 일부를 수중에 잠기도록 한다.
- 나. 부하상태 이탈장치(On-load release gear)를 작동시킨다.
- 다. 부하상태 이탈장치를 원위치 시킨다.
- 라. 이탈장치 및 혹 고정상태 시험시 혹이 완전하게 고정되고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3.6 진수장치용 구명정과 구조정의 무부하이탈장치 작동시험(Off-load release function)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어야 함:

- 가. 보트를 완전히 진수시킬 것
- 나. 무부하상태 이탈장치(Off-load release gear)를 작동시킨다.
- 다. 무부하상태 이탈장치를 원위치 시킨다.
- 라. 보트를 탑재위치로 원위치시키고 즉시 작동준비상태가 되도록 할 것

※ 이탈장치의 점검시 유의사항

- 혹에 하중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탈장치를 정비하거나 조정하지 말 것.
- 행잉오프펜넌트(Hanging-off pennant)는 이탈장치 정비를 위하여 사용 하여도 무방하나, 구명정이 탑재된 상태 및 훈련 중에 계속 연결되어 있지 않도록 할 것

3.3.7 자유강하식구명정의 작동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어야 함:

- 가. 기준 제11조제2항제5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조사 작동 지침에 따라 구명정을 진수하지 않고 시험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비를 준비;
- 나. 작동시험을 위해 구명정으로 작업 인원의 승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되는 위치에 앉고 몸을 고정시켜야 함;
- 다. 이탈장치 작동;
- 라. 구명정을 탑재위치로 리셋;
- 마. 백업 이탈장치가 설치된 경우 상기 나.항부터 라.항까지 반복;
- 바. 구명정을 진수하지 않고 시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장치를 제거;
- 사. 구명정이 즉시 사용 가능한 탑재위치에 적절히 위치하였는지 확인.

3.3.8 진수장치용 구명뗏목의 자동이탈장치에 대한 작동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어야 함:

- 가. 혹에 150kg 하중을 걸고 수동 이탈;
- 나. 혹에 200kg 더미하중(dummy weight)을 걸고 지상으로 하강 시켰을 때 자동이탈 되는지 확인;
- 다. 이탈 혹과 혹 잠금상태를 점검하고 혹이 완전하게 리셋 되었는지, 손상은 발생 하지 않았는지 확인.

3.3.9 자유강하식구명정을 포함한 구명정, 구조정, 고속구조정, 구명뗏목의 진수장치는 다음 사항들이 점검되고 작동되어야 함:

- 가. 대빗 또는 기타 진수장치, 특히 부식, 얼라인먼트(Misalignments)의 적절성, 변형 및 과도한 간격 확인
- 나. 와이어 및 활차, 꼬임이나 부식 및 손상 여부 확인
- 다. 와이어, 활차 및 작동부분의 윤활상태 확인
- 라. 해당되는 경우

- (1) 리미트 스위치들의 기능 확인
- (2) 저장된 동력장치 확인
- (3) 수압장치(Hydraulic systems) 확인

마. 원치

- (1) 제동장치의 개방 및 검사(필요시 제동 패드의 교체)
- (2) 원격제어장치 점검 (해당되는 경우)
- (3) 동력공급장치 점검 (해당되는 경우)
- (4) 원치 파운데이션

3.3.10 매년 시행하는 자유강하식구명정을 포함한 구명정, 구조정, 고속구조정, 구명뗏목진수장치의 원치 작동시험은 승선인원이 없는 보트 자체 중량 또는 이와 동등한 중량을 하강 시키면서 시행함. 보트가 수면에 닿기 전 최대강하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브레이크를 작동하여야 함. 이러한 시험 후, 구조 부재에 대한 재확인이 이루어져야 함.

3.4. 5년차 정비 및 하중 작동시험

3.4.1 진수설비의 원치에 대한 5년차 작동 시험은 승정인원과 의장품을 만재한 생존정/구조정 중량의 1.1배 하중으로 시행되어야 함. 하중이 최대강하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브레이크를 작동하여야 함.

- 3.4.2 이러한 시험 후, 제동패드 및 구조 부재에 대한 재확인이 이루어져야 함.
- 3.4.3 자유강하식구명정을 포함한 구명정, 구조정, 고속구조정, 구명뗏목의 이탈 장치의 5년차 정비 및 작동시험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가. 훅 이탈장치(Hook release units)를 분해점검
 - 나. 허용오차 및 설계요건 등에 대하여 점검
 - 다. 조립후 이탈장치(Release gear system)를 조정
 - 라. 4.1.5항, 4.1.6항, 4.1.7항 또는 4.1.8항에 따라 해당되는 작동시험, 시험 시 중량은 승정인원과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의 생존정 또는 구조정 전체중량의 1.1배 하중으로 작동시험(다만, 자유강하식구명정의 이탈장치의 작동시험은 시험요원만 승선하여 자유낙하진수를 하거나 구명정의 진수 없이 4.1.7항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 마. 결함 및 크랙과 관련된 주요부분에 대하여 점검. 이 경우 비파괴검사방법은 액체침투탐상시험으로 할 수 있다.
- 3.4.4 시험을 위하여 구명정에 하중을 부가할 경우에는 자유표면효과 또는 무게 중심의 상승으로 구명정의 복원성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
4. 자유강하식구명정의 모의진수시험
- 자유강하식구명정의 경우, 퇴선 훈련 중 3개월마다 적어도 한번은 선원들이 구명정에 승정하여 각자 좌석에서 적절하게 고정하고 실제 구명정의 이탈 없이 진수절차를 개시해야 한다(즉, 이탈 훅이 이탈되어서는 아니 됨). 그 후 구명정에 요구되는 작동인원만을 태우고 자유낙하 진수하거나, 또는 작동인원을 태우거나 작동인원 없이 보조진수장치에 의해 수면 상으로 강하시켜야 한다. 상기의 두 경우 이후에 구명정은 수면 위에서 지정된 작동요원에 의해 조종되어야 한다. 6개월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지정된 작동요원만을 태우고 자유강하 진수하거나, 아래의 지침에 따라 모의진수가 시행되어야 한다.
- 4.1 구명정 및 진수장치의 구성품들이 정상 작동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 및 문서 확인
 - 4.2 훈련에 관련된 모든 인원이 작동 지침, 게시물 및 표식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
 - 4.3 모의진수를 위해 제조자가 공급한 구속장치(restraining device)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고, 자유강하 이탈장치(release mechanism)가 완전하고 정

확하게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

4.4 작동요원과 책임자의 원활한 통신상태 유지

4.5 모의진수에 필요한 장치를 제외하고는 구명정 고정을 위해 설치된 고박 장치 등을 해제

4.6 책임자의 감독 하에 작동요원은 구명정에 탑승하고 안전벨트 착용

4.7 작동요원은 구명정에서 하선

4.8 구명정을 원위치 시키고 모의진수를 위해 사용된 구속장치와 회수장치를 제거

[별표 15의2] 구명설비 정비업체 등에 대한 요건

I. 정비업체에 대한 요건

1. 별표 15에 따른 구명설비를 정비하려는 업체는 최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가. 국가기준 또는 산업계표준 또는 제조사의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된 인력의 고용 및 문서화. 어느 경우든 자격 인증 프로그램은 서비스를 제공할 설비 각각의 제조사 및 형식에 대해 II.항에 따른 개별 자격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나. 본선에서 작업을 위해 필요한 휴대용 장비를 포함한 제조사가 명시한 특수한 장비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다. 정비 및 수리를 위해 지정된 부품 및 액세서리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라. 부하이탈장치 및 대비트윈치의 분해 및 조정과 관련한 수리 작업을 위하여 제조사 지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마. 문서화 및 인증된 품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그 시스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1) 정비를 위한 직원들에 대한 업무 규칙;
 - (2) 측정 장비와 게이지의 교정과 정비;
 - (3) 직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 (4) 업무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감독과 검증;
 - (5) 정보의 기록 및 보고;
 - (6) 협력업체와 대리점에 대한 품질시스템;
 - (7) 업무준비사항;
 - (8) 업무절차, 불만사항, 시정조치 그리고 문서의 발행, 유지 및 통제에 관한 주기적인 검토.

II. 개별 인원에 대한 자격 요건

1. 별표 15의 제3.3항 및 제3.4항에 명시된 작업을 수행할 인력은 다음에 따라 작업할 장비의 각 제조사와 형식에 대해 제조업체 또는 승인된 정비업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아야 함.

2 교육과 훈련 법제처

가. 최초 증서는 교육, 훈련, 평가가 완료된 인원에게 부여함. 교육은 최소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1) 국제협약을 포함한 관련 규칙 및 규정;
- (2) 진수설비와 부하이탈장치를 포함한 구명정, 자유낙하구명정, 구조정, 고속구조정의 설계 및 구조;
- (3) 구명정과 구조정 사고 원인;
- (4) 별표 15 제3항의 점검항목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용적인 교육과 훈련;
- (5) 해당되는 설비(구명정, 자유낙하구명정, 구조정, 고속구조정, 진수설비, 부하이탈장치)에 대한 상세검사, 작동시험, 수리 및 분해에 관한 상세 절차;
- (6) 별표 15 제2항에서 언급하는 적합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 (7) 본선에서 정비를 시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작업안전, 보건관련 사항

나. 훈련은 해당되는 설비를 활용하여 상세점검, 작동시험, 정비, 수리 및 분해 기술들을 포함한 실용적인 훈련이 되어야 함. 기술적인 훈련은 분해, 재조립, 작동,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격이 있는 감독자의 감독 하에 현장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다. 증서를 발급하기 전, 정비를 시행할 설비를 이용하여 충분한 역량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3. 증서의 유효성과 갱신

가. 훈련과 함께 역량평가가 완료되면, 자격 레벨 및 작업 범위가 명시된 증서가 발급됨(즉, 장비의 제조사와 형식 그리고 연차 또는 5년차 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증서 상에 언급). 증서의 만료일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지정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식별된 경우 증서의 효력이 정지되며 추가 역량평가 후 증서의 효력이 다시 발생함.

나. 증서 갱신 시 역량평가가 수행되어야 함. 보수교육 필요성이 식별된 경우 교육 완료 후 추가 평가가 수행되어야 함.

III. 정비업체의 승인 등

1. 정비업체의 승인과 관련한 서류의 발행과 유지:

가. 정비업체에 대한 최초 점검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설비
법제처 108 국가법령정보센터

의 제조사와 형식 등과 같이 업무 범위가 포함된 승인 서류를 발급함. 만료일이 서류상 명확하게 명기되어야 함;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요건에 따라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승인업체의 적합성을 검증하며 업체가 요건을 준수하지 못함이 식별된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타 주관청 또는 검사대행기관에서 승인한 정비업체를 인정할 수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업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제조사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기술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설비에 대한 이전의 승인사항 및/또는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른 승인된 업체에 그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팽창식구조정 경비기록 Survey Record for Inflatable Rescue Boat

선명 Name of Ship		경비기록번호 Service Record No.		경비일 Service Date		경비소 Service Station		명칭 Name	
								주소 Addres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선박의종류 Type of Ship			항행구역 Nav. Area		
구조정 Rescue boat	형식 Type		제조번호 Mfg. No.			제조연월일 Mfg. Date			
	제조사 Manufacturer		본선탑재연월일 On Board Date						
선주 Ship Owner	명칭 Name		경비뢰뢰자 Orderer		명칭 Name				
	주소 Address				주소 Address				

경비·점검 기록 Test & Survey Record										
전회의 경비·점검연월일 Date of Last Survey					전회의 경비소 Last Survey St.					
항 상 항 항 항 항 항 항 항 항	외관점검 Remarks	이상 유무 Remarks			사용압력시험 Working Press. Test			mmHg		
	중량 Weight	kg			이상 유무 Remarks					
	안전밸브조작 시행결과 Relief valve Test Result	열린 압력 Openable Press. (mmHg)				닫힌 압력 Closed Press. (mmHg)				
		측면기실 (우현) Side Chamber (Starb'd)	측면기실 (좌현) Side Chamber (Port)	선수기실 Fore Chamber	바닥기실 Floor Chamber	측면기실 (우현) Side Chamber (Starb'd)	측면기실 (좌현) Side Chamber (Port)	선수기실 Fore Chamber	바닥기실 Floor Chamber	
		중앙 Middle	후미 After	중앙 Middle	후미 After	중앙 Middle	후미 After	중앙 Middle	후미 After	
	기실배기시험 결과 (사용압력1.1배) Working Pressure Test Result	측면기실 (우현) Side Chamber (Starb'd)		측면기실 (좌현) Side Chamber (Port)		선수기실		바닥기실 Floor Chamber		
		중앙 Middle :	후미 After :	중앙 Middle :	후미 After :					
	기실대압 시험 결과 (사용압력2배) Working Pressure Test Result	측면기실 (우현) Side Chamber (Starb'd)		측면기실 (좌현) Side Chamber (Port)		선수기실		바닥기실 Floor Chamber		
		중앙 Middle :	후미 After :	중앙 Middle :	후미 After :					
	기실누설 시험 결과 (사용압력) Working Pressure Test Result	측면기실 (우현) Side Chamber (Starb'd)		측면기실 (좌현) Side Chamber (Port)		선수기실		바닥기실 Floor Chamber		
	중앙 Middle :	후미 After :	중앙 Middle :	후미 After :						
기실과압 시험 결과 (사용압력) Working Pressure Test Result	측면기실 (우현) Side Chamber (Starb'd)		측면기실 (좌현) Side Chamber (Port)		선수기실		바닥기실 Floor Chamber			
	중앙 Middle :	후미 After :	중앙 Middle :	후미 After :						
바닥기실 시험 결과 (실제압력) Dined Pressure Test Result	측면기실 (우현) Side Chamber (Starb'd)		측면기실 (좌현) Side Chamber (Port)		선수기실		바닥기실 Floor Chamber			
	중앙 Middle :	후미 After :	중앙 Middle :	후미 After :						
수리사항 Repaired										
비고 Remarks										
경비뢰뢰자 Service Engineer		성명 Name			서명 Signature					
경비확인자(검사원) Surveyor Confirm		성명 Name			서명 Signature			결인 Endorse		
탑재확인자(검사원) On Board Setting		성명 Name			서명 Signature					

[별지 제2호서식]

팽창식구조정 의장품 검사기록
Equipment Survey Record for Inflatable Rescue Boat

선 명 Name of Ship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정비책임자 서명 Service Engineer Sign
정비업소 Service Station				
구조정 형식 Rescue Boat Type				
정비기록 번호 Record No.		검사일자 Date		

No.	품 명 Name	의장품수 Quantity of Equipment	비 고 Remarks
1	오르 또는 노 (Buoyant Oar or Paddle)	1	
2	숯편 또는 크러치 (Tholepin or Crutch)	1	
3	보트훅 (Boat Hook)	1	
4	베일러 (Buoyant Bailer)	1	
5	스폰지 (Sponge)	2	
6	나이프 또는 손도끼 (Knife or Hatchet)	1	
7	컴퍼스 (Compass in Binnacle)	1	
8	시앵커 (Sea Anchor)	1	
9	페인터 (Painters)	1	
10	토우라인 (Tow Line)	1(50m)	
11	수리용구 (Repair Appliance)	1	
12	충기펌프 또는 불무(Topping-up Pump or Bellows)	1	
13	응급의료구 (First Aid Outfit)	1	
14	보온구 (Thermal Protective Aids)	2 or 10% of the full of Personnel	
15	부륜 (Buoyant Rescue quoit)	2	
16	호각 또는 이와 동등한 음향신호 (Whistle or Equivalent Signal)	1	
17	수밀전기등 (Waterproof Electric Torch)	1	
18	레이더반사기 (Radar Reflector)	1	
19	탐조등 (Searchlight)	1	
20	휴대식소화기 (Portable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1	
비 고 Remarks	정비확인자(검사원)서명 및 견인 Surveyor Sign & Endorse		

[별지 제3호서식]

기 실 시 험 성 적 서

Result for Air Chamber Test

정비기록번호(Service Record No.) :

시 험 순 서 Test Order	시 간 Time	실 온 Room Temp.	대기압 Atm. Press. (mmHg, mbar)	표면 온도 Surface Temp. (°C)	기 실 내 압 Inner Press.(mmHg, mbar)													
					측면기실(우현) Side Chamber(Starb'd)						측면기실(좌현) Side Chamber(Port)						선수기실	내 과 기 관 클 러 미 터
					중앙(Middle)		후미(After)		중앙(Middle)		후미(Aft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기실예비시험 (사용압력1.1배) Working Pressure Test	개시 Star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종료 (1시간 후) Finish (1hr lat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 기실내압시험 (사용압력2배)저고도 8년이상부러 Working Pressure Test	개시 Star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차 시험종료 (5분후) 1st Test Finish (5min lat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차 시험종료 (10분후) 2nd Test Finish (10min lat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차 시험종료 (10분후) 3rd Test Finish (10min lat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 기실누설시험 (사용압력)Working Pressure Test	개시 Star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종료 (1시간 후) Finish (1hr lat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4 기실격막시험 (사용압력) Working Pressure Test	개시 Star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종료 (1시간 후) Finish (1hr lat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5 바닥기실시험 (실제압력)Desired Pressure Test	개시 Start		(1)	(2)	(3)	(4)	-	-	-	-	-	-	-	-	(0)			
	종료 (1시간 후) Finish (1hr later)		(1)	(2)	(3)	(4)	-	-	-	-	-	-	-	-	(0)			
*6 안전밸브포착시험 Relief valve Test	실제압력 (배) Desired Pressure (배) Working Pressure	-	-	-	-	-	열림 Open	닫힘 Closed	열림 Open	닫힘 Closed	열림 Open	닫힘 Closed	열림 Open	닫힘 Closed	열림 Open	닫힘 Closed		
	사용압력 (배) Working Pressure																	
					+1	+2	+3,+4	+1	+2	+3,+4	+1	+2	+3,+4	+1	+2	+3,+4	+5	
대기압차	Atm. Pressure Difference (1) - (2)																	
기압보정치	correct Value for Atm. Pressure (6)																	
온도차	Temperature Difference (3) - (4)																	
온도보정치	Correct Value for Temperature (6)																	
전보정치	Total Correct Value (6) + (6) (7)																	
보정후내압	Inner Pressure Corrected (7) + (8) (9)																	
누설도	Leakage {(1) - (9) / (10)} x 100%																	
정비책임자 서명 Service Engineer Sin								정비확인자(검사원) 서명 Surveyor Sin										
* +1, +2, +3, +4 : 동일번호 대조 기록, +5 : 해당되지 않는 항목 삭제																		

[별지 제4호서식]

팽창식구명뗏목등 정비기록
Survey Record for Inflatable life Raft(Life Buoy)

선명 Name of Ship		정비기록번호 Service Record No.	정비완료일 Service Date	정비업소 Service Station	명칭 Name
					주소 Address
등록항 Port of Registry		선박의 종류 Type of Ship		항행구역 May. Area	검사의 종류 Kind of Survey
뗏목 등 Raft, etc.	형식 Type	형식승인번호 Type Approval No.		제조번호 Mfg. No.	제조연월일 Mfg. Date
	제조사 Manufacturer			본선탑재연월일 On Board Date	본선탑재번호 Raft No. On Ship
선주 Ship Owner	명칭 Name	정비뢰뢰자 Orderer		명칭 Name	
	주소 Address			주소 Address	

정비·점검 기록 Test & Survey Report										
전회의 정비·점검연월일 Date of Last Survey			부속시험 (Launch Test)	외관검사 Exterior Condition	설계압력 Desined Pressure	상기실 Upper Chamber	하기실 Lower Chamber	바다기실 Floor Chamber		
전회의 정비업소 Last Survey Station			이상 Remarks	이상 Remarks	사용압력 Working Pressure	mmHg	mmHg	mmHg		
정	사용압력시험 Working Press. Test	사용압력 Working Pressure		상기실 Upper Chamber	하기실 Lower Chamber	바다기실 Floor Chamber				
		보정후내압결과 Inner Pressure Corrected Result		mmHg	mmHg	mmHg				
	가스경량시험 G.I. Test	설계압력 Desined Pressure		상기실 Upper Chamber	하기실 Lower Chamber	바다기실 Floor Chamber				
		보정후내압결과 Inner Pressure Corrected Result		mmHg	mmHg	mmHg				
비	열린압력 Openable Press.				닫힌압력 Closed Press.		가스통기량검사 결과 Inflation Gear Inspect Result			
	설계압력 Desined Pressure	상기실 Upper Chamber	하기실 Lower Chamber	상기실 Upper Chamber	하기실 Lower Chamber					
	사용압력 Working Pressure	%	%	%	%					
검	가스통기 Gas Cylinder	상기실 가스통기(Gas Cylinder for Upper Chamber)				하기실 가스통기(Gas Cylinder for Lower Chamber)				
		용기번호 Mark & No.	용기제조일 Mfg. Date	용기번호 Mark & No.	용기제조일 Mfg. Date					
	용량 Volume	가스중량 Gas Weight	CO ₂ H ₂	kg kg	용량 Volume	가스중량 Gas Weight	CO ₂ H ₂	kg kg		
	충전연월일 Gas Filled Date	합계 Total	kg		충전연월일 Gas Filled Date	합계 Total	kg			
량	바다이음부시험 Floor Seam Test	중량 Weight	kg	이상유무 Remarks	합승대시험결과 Boarding Ramp Test Result					
	필수유가압력시험 HAP Test	1차시험 1st Test				2차시험 2nd Test				
		사용압력 Working Pressure	상기실 Upper Chamber	하기실 Lower Chamber	바다기실 Floor Chamber	상기실 Upper Chamber	하기실 Lower Chamber	바다기실 Floor Chamber		
부	자동이탈장치 Auto Release	제조사 Manufacturer		형식 Type	제조번호 Mfg. No.	시험하중 Test Wt.	자동압력 Release Press.			
		kg		kg	kg	kg	kg/cm ² kg/cm ²			
Survey Item	제인러 Painter	본선탑재높이 On Board Height	실제길이 Actual Length		자동줄 Pullline		실제길이 Actual Length			
	m		m				m			
	위프링크 상태 Weak Link State	제인러 내부에 연결(내장형) Internal Type				제인러 외부에 연결(외장형) External Type				
의정품 Fittings Accessories	구분 Item		유효기간 Expire Date	기타 Remarks		수리사항 Repaired Part	검지회수 Number of Patches	정비 전 Before Service	정비 후 After Service	개소 per
	1. 구난식량 Food Ration						검사방법의 재검사와개소 Repeat Search Check	위치 Position	개소 per	
	2. 구난식수 Fresh Water									
	3. 로켓낙하산신호 Rocket Parachute Flare									
	4. 신호총명 Hand Flare									
	5. 발연부신호 Buoyant Smoke Signal									
	6. 응급의료기구 First Aid Outfit									
	7. 실내외등용전지 Battery for Lights									
비고(Remarks)										
정비책임자 Service Engineer			명칭 Name		서명 Signature			결인 Endorse		
정비확인자(검사원) Surveyor Confirm			명칭 Name		서명 Signature					
탑재확인자(검사원) On Board Setting			명칭 Name		서명 Signature					

64887-10421보
1997. 6. 통계

210mm×297mm
인쇄용지(특)70g/m²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3. 9>

팽창식구명뗏목 의장품 검사기록 Equipment Survey Record for Inflatable Liferaft												
선명 Name of Ship		선적항 Port of Registry			정비확인자 Service Engineer Signature							
항행구역 Navigation Area		심해 Ocean 항해 Coasting 근해 Great Coasting 평수 Smooth Water								정비업소 Service Station		
뗏목형식 Raft Type												
정비기록번호 Service Record No.		검사일자 Survey Date										
NO.	품명 Name	의장품의 수 Equipment of Accessories					비고 Remarks					
		제1종구명뗏목 Liferaft Class 1			제2종구명뗏목 Liferaft Class 2							
		SOLAS A PACK	SOLAS B PACK	어선	원해구역	평수구역		어선				
1	부표(Buoyant Rescue Quoit)	1	1	1	1	1	1					
2	나이프(Knife)	2	2	2	1	1	1					
3	부양배럴(Buoyant Baller)	2	2	2	1	1	1					
4	스폰지(Sponge)	2	2	2	1	1	1					
5	시앵커(Sea Anchor)	2	2	2	1	1	1					
6	노(Buoyant Paddle)	2	2	2	2	2	2					
7	수리용구(Repair Appliance)	1	1	1	1	1	1					
8	구급식량(Food Ration)	1만킬로칼/1인 10000k/Person	-	1만킬로칼/1인 10000k/Person	-	-	1만킬로칼/1인 10000k/Person					
9	구급식수(Fresh Water)	1.5/1인(1.5/F erson)	-	1.5/1인(1.5/F erson)	-	-	1.0/1인(1.0/F erson)					
10	컵(Drinking Vessel)	1	-	1	-	-	1					
11	응급의료구(First - Aid Outfit)	1	1	1	-	-	1					
12	해면이랑기약(Anti-Seaickness Medicine)	48시간/1인(48Hour/Person)			-	-	48시간/1인					
13	해면이랑구머니(Seaickness Bag)	1개/1인 (1/Person)			-	-	1개/1인					
14	보온구(Thermal Protective Aid)	2개 또는 정원의 10%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수량 중 큰 것 (Number of 10% of the Full of Person or 2pcs)			-	-	2개 또는 정원의 10%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수량 중 큰 것					
15	장동파개(Tin Opener)	8	-	8	-	-	-					
16	가위(Scissors)	1	-	1	-	-	-					
17	호각 또는 이와 동등한 음향신호(Whistle or Equivalent Signal)	1	-	1	-	-	1					
18	낚시도구(Fishing Tackle)	1	-	1	-	-	1					
19	행동지침서(Immediate Action Manual)	1	1	1	-	-	1					
20	생존지침서(Survival Manual)	1	1	1	-	-	1					
21	구명신호설명표(Life Signal Explanatory Table)	1	1	1	-	-	1					
22	로켓낙하산신호(Rocket Parachute Flare)	4	2	4	-	-	4					
23	신호총명(Hand Flare)	8	8	8	8	8	8					
24	부양부신호(Buoyant Smoke Signal)	2	1	2	1	1	2					
25	수밀전기등(Water proof Electric Torch)	1	1	1	-	-	1					
26	일광신호용 거울(Daylight Signalling Mirror)	1	1	1	-	-	1					
27	레이더반사기(Radar Reflector)	1	1	1	-	-	1					
28	공기펌프 또는 불부(Topping-up Pump or Bellows)	1	1	1	1	1	1					
정비확인자(필사필) 서명 및 결인 Surveyor Sign & Endorse												

54337-19421 보
1997. 5. 통제

210mm×297mm
인쇄용지(특)70g/m²

[별지 제6호서식]

기 실 시 험 성 적 서

Result for Air Chamber Test

정비기록번호(Service Record No.) :

시 험 순 서 Test Order	시 각 Time	실 온 Room Temp.	대 기 압 Atm. Press. (mmHg/mAq)	표면온도 Surface Temperature	기 실 내 압 Inner Press.(mmHg mAq)				
					상 기 실 Upper Chamber	하 기 실 Lower Chamber	바닥기실 Floor Chamber		
*1 사용압력시험 Working Pressure Test	개시 Start		(1)	(3)	(0)	(0)	(0)		
	종료(1시간후) Finish (1hr. later)		(2)	(4)	(8)	(8)	(8)		
*2 가스팽창시험 Gas Inflation Test	개시 Start		(1)	(3)	(0)	(0)	-		
	종료(1시간후) Finish (1hr. later)		(2)	(4)	(8)	(8)	-		
안전밸브 호력시험 Relief Valve Test	*4 설계압력(%) Desined Pressure 사용압력(배) Working Pressure	-	-	-	열림 Open	닫힘 Close	열림 Open	닫힘 Close	-
*3 필수추가 압력시험 Necessary Additional Press. Test	개시 Start		(1)	(3)	(0)	(0)	(0)		
	1차시험 종료(5분후) 1st Test Finish (5min. later)		(2)	(4)	(8)	(8)	(8)		
	2차시험 종료(1시간후) 2nd Test Finish (1hr. later)		(2)	(4)	(8)	(8)	(8)		
바닥이음부 시험 Floor Seam Test	사용압력 Working Pressure	-	-	-					
탑승대기능 시험 Boarding Ramp Test Result	개시 Start		-	-	-				
	종료(30분후) Finish (30min. later)								
					*1, *2	*3	*1, *2, *3	*3	*1, *3
대기압차	Atm. Pressure Difference (1) - (2)								
기압보정치	Correct Value for Atm. Pressure (6)								
온도차	Temperature Difference (4) - (4)								
온도보정치	Correct Value for Temperature (6)								
전보정치	Total Correct Value (6) + (6)								
보정후내압	Inner Pressure Corrected (7) + (6)								
누설도	Leakage {(0) - (4) / (0)} x 100%								
정비책임자	서명 Service Engineer Sin,			정비확인자(검사원) 서명 Surveyor Sin,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3. 9>

강하식 탑승장치 정비기록 Survey Record for Chute

선명 Name of Ship		정비기록번호 Service Record No.		정비완료일 Service Date		정비업소 Service Station		정비명 Name	
								주소 Addres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선박의 종류 Type of Ship			항행구역 Nav. Area		정비의 종류 Kind of Survey	
탑승장치 Chute	형식 Type		제조번호 Mfg. No.			제조연월일 Mfg. Date			
	제조사 Manufacturer		본선탑재연월일 On Board Date			본선탑재번호 Chute No. On Ship			
선주 Ship Owner	정비명 Name		정비뢰뢰자 Orderer			정비명 Name			
	주소 Address								주소 Address

정비·점검 기록 Test & Survey Report										
전회의 정비·점검연월일 Date of Last Survey						적남상태 점검 Stowage Condition Survey				
전회의 정비업소 Last Survey Station										
정비	외관점검 Exterior		이상 유무 Remarks			투하검정 Launch Test				
	가스통기장치 Inft. Gear		저크밸브장치 작동 이상유무 Out Valve Analysis Inspection			가스통기 표시상태 Gas Cylinder Marking				
	가스통기 Gas Cylinder		상기실 가스통기 Gas Cylinder For Upper Chamber			하기실 가스통기 Gas Cylinder For Lower Chamber				
			용기 번호 Mark & No.		용기 제조일 Mfg. Date		용기 번호 Mark & No.		용기 제조일 Mfg. Date	
			용량 Cylinder Volume		가스중량 CO ₂ Gas Weight		용량 Cylinder Volume		가스중량 CO ₂ Gas Weight	
충전연월일 Gas Filled Date			합계 Total		충전연월일 Gas Filled Date		합계 Total			
점검	내압시험 Inner Pressure Test		시험내용 Examination Content			활강기실 Sliding Chamber		플랫폼 Platform		
			좌측 Left		우측 Right		상기실 Upper Chamber		하기실 Lower Chamber	
			최고사용압력(mHg) Max Working Press							
항목 Survey Item	관정(10분당치후) Results (After 10min)									
	시험순서 Test Order		시각 Time	실온(°C) Rm. Temp.	대기압 (mHg)	기실표면온도(°C) Service Temp.	기실내압(mHg) Inner Press			
	내압시험개시 Inn. Press Test						활강기실 Sliding Chamber		플랫폼 Platform	
	내압시험종료(80분후) Finish (After 80min)						좌측 Left	우측 Right	상기실 Upper Chamber	하기실 Lower Chamber
	기실누설시험개시 Chamber Leak Test				(1)	(8)	(0)			
	기실누설시험종료 (80분후) Finish(After 80min)				(2)	(4)	(8)			
	대기압차 (1)-(2) Atm. Pressure Difference									
	기압보정치 Correct Value for Atm. Pr.		(5)							
온도차 (8)-(4) Temp. Difference										
온도보정치 Correct Value of Temp.		(8)								
누설도 (0)-(8)/(0)×100%										
누설보정치 Correct Value of Temp.		(8)								
시험연월일 Test Date										
적남장치 작동 Stowage Equip.						적정점검 Setting Check				
점검결과 Survey Results					이상유무 Remarks					
정비책임자 Service Engineer			성명 Name		서명 Signature			필인 Redone		
정비확인자(검사원) Surveyor Confirm			성명 Name		서명 Signature					
탑재확인자(검사원) On Board Setting			성명 Name		서명 Signature					

[별지 제8호서식 (1)]

적합확인서

선박소유자			선명	
선박번호			용도	
검사기관			선박번호(IMO No)	
정비회사명				
이탈장치	형식			
	제조연월			
	제조사			
데비트	형식			
	제조연월			
	제조사			
원 치	형식			
	제조연월			
	제조사			
정비일자			정비장소	
종류	<input type="checkbox"/> 수리	<input type="checkbox"/> 상세정비	<input type="checkbox"/> 연차정비	
세부 점검 및 정비결과		붙임 점검 및 정비기록부 참조		
비고란(Remarks) :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31조의3 및 SOLAS 협약 제3장 제20규칙 3.2 및 MSC.1/Circ.1206에 따라, 다음의 구명정장치에 대하여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합니다.<개정 2007.11.22>

년 월 일

확 인 자 :

(서명날인)

점검 및 정비자 :

(서명날인)

[별지 제8호의2 서식]

적합확인서

선박소유자		선명	
선박번호		용도	
검사기관		선박번호(IMO No)	
정비회사명			
구명정 (또는 구조정 들)	형식		
	제조연월		
	제조사		
이탈장치	형식		
	제조연월		
	제조사		
데비트	형식		
	제조연월		
	제조사		
원 치	형식		
	제조연월		
	제조사		
정비일자		정비장소	
종류	<input type="checkbox"/> 수리	<input type="checkbox"/> 상세정비	<input type="checkbox"/> 연차정비
세부 점검 및 정비결과		붙임 점검 및 정비기록부 참조	
비고란(Remarks) :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30조제1항 및 SOLAS 협약 제3장 제20규칙 3.2 및 Res.MSC.402(96)에 따라, 다음의 구명정장치에 대하여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_____ (서명날인)

점검 및 정비자 : _____ (서명날인)

[별지 제8호의3 서식]

정비점검 기록부

Survey Record

가. 구명정(Lifeboat)/ 구조정 (Rescueboat)/ 고속구조정(Fast Rescueboat)

형식 Type		제조사 Manufacturer				
제조번호 Mfg.Date		점검장소 Place	조선소 Ship Yard	선상 On Board	안벽 Wharf	공장 Factory
제조연월 Mfg.Date		정비개소 Position	1호(우현), No.1(Stbd),		2호(좌현) No.2(Port)	
점검사항 (Survey Report)						
번호 No.	점검. 정비항목 Survey Item	점검. 정비결과 Survey Result			비고 Remarks	
01	선체 외부 Outside hull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2	외부 캐노피 Outside canopy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3	부양성 구명줄 Buoyant lifeline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4	접힘식 캐노피* Foldable canopy*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5	보트 내부 Inside boat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6	드레인 밸브 Drain valve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7	이탈기 Release gear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8	페인터 이탈 장치 Painter release device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9	모든 헛치 All hatches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10	창문 Window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11	조타기 Steering gear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12	스턴튜브 Stern tube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13	프로펠러 및 가드 Propeller and guard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14 법제처	브리더 밸브 Breather valve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국가법령정보센터	

15	물분무 시스템 Water spray system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16	공기 공급 시스템 Air support system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17	장비 Equipment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u>엔진 Engine</u>					
18	엔진 Engine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19	윤활유 Lubrication oil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20	연료유 탱크 Fuel oil tank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21	연료유 배관 Fuel oil pipe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20	냉각기 Water cooler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21	냉각수 배관 Cooling water pipe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22	시동스위치 Starter switch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23	글로 램프 Glow lamp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24	태코미터 Tachometer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25	유압경고램프, 충전램프 Oil pressure warning lamp, Charge lamp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26	스톱 와이어 Stop wire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u>Electric parts</u>					
27	배터리 Battery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28	내부 램프 Inside lamp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29	캐노피 램프 Canopy lamp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30	탐조등 Search light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31	전력배선 Electric wiring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u>특기사항(Remarks)</u>					
법제처					

		Renewed		
16	기타(갑판과의 용접부) etc.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특기사항(Remarks)				
	직위 Rank	성명 Name	서명날인 Signature	
점검자 Surveyor				

다. 윈치(Winch)

윈치형식 Type		제조사 Manufacturer				
제조번호 Mfg. No.		점검장소 Place	<input type="checkbox"/> 조선소 Ship Yard	<input type="checkbox"/> 선상 on Board	<input type="checkbox"/> 안벽 Wharf	<input type="checkbox"/> 공장 Factory
제조연월 Mfg. Date		정비개소 Position	1호(우현), No.1(Stbd),		2호(좌현) No.2(Port)	
점검사항 Survey Report						
번호 No.	점검, 정비항목 Survey Item	점검, 정비결과 Survey Result			비고 Remarks	
01	기어박스 Gear Box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2	윤활유 Lubricating Oil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3	치차 Gear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4	베어링 Bearing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5	오일씰 Oil Seal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6	핸드브레이크장치 Hand Brake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7	가버너 브레이크장치 Governor Brake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8	캠 클러치 Clutch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9	수동핸들 Manual Handle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10	와이어드럼 Wire Drum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11	속도절환장치 Governor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12	전기모터 Electric Motor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13	전동기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input type="checkbox"/>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	

	Electromotor	Good	Renewed	Repaired
14	리미트 스위치 Limit Switch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15	푸쉬보턴박스, 플러그, 리셉타클 Push botton Box, Plug Receptacle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16	정적원치브레이크시험 Static test of Brake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17	동적원치브레이크시험 Dynamic test of Brake)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18	예비품 Spare part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특기사항(Remarks)				
	직위 Rank	성명 Name	서명날인 Signature	
	점검자 Surveyor			

라. 이탈장치(Release mechanism)

<u>원치형식</u> Type		<u>제조사</u> Manufacturer				
<u>제조번호</u> Mfg.No.		<u>점검장소</u> Place	<u>조선소</u> Ship Yard	<u>선상</u> on Board	<u>안벽</u> Wharf	<u>공장</u> factory
<u>제조연월</u> Mfg.Date		<u>정비개소</u> Position	1호(우현), No.1(Stbd),		2호(좌현) No.2(Port)	
<u>점검사항</u> Survey Report						
<u>번호</u> No.	<u>점검. 정비항목</u> Survey Item		<u>점검. 정비결과</u> Survey Result			<u>비고</u> Remarks
01	<u>장착상태</u> Condition of Reset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2	<u>릴리스핸들상태</u> Condition of Release Handle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3	<u>제어계통 전선</u> Release cable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4	<u>훅장치</u> Hook system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5	<u>인터록크장치</u> Interlock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6	<u>훅 고정부</u> Hook assembly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7	<u>이탈장치 작동시험</u> On Load Release Test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8	<u>이탈장치 작동시험</u> Release Test with no Load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09	<u>이탈장치 분해점검</u> Release gear overhaul		<input type="checkbox"/> 양호 Good	<input type="checkbox"/> 부품교환 Renewed	<input type="checkbox"/> 보수 Repaired	
<u>특기사항(Remarks)</u>						
		<u>직위</u> Rank	<u>성명</u> Name		<u>서명날인</u> Signature	
<u>점검자</u> Surveyor						